

#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모형 개발 연구

연구책임자	조 연 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문 은 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정 상 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위촉연구원)





## I . 서론 ● 0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1) 연구의 필요성 .....	3
2) 연구의 목적 .....	4
2. 연구범위와 방법 .....	6
1) 연구의 범위 .....	6
2) 연구의 방법과 절차 .....	6

## II. 정책평가의 이론적 기초 ● 11

1. 정책평가 개요 .....	13
1) 정책평가의 필요성 .....	13
2) 정책평가의 목적 .....	14
2. 정책평가의 유형과 주요 내용 .....	16
1) 정책평가의 유형 .....	16
2) 정책평가의 주요 내용 .....	18

3. 우리나라 정책평가 관련 제도 .....	19
1) 정부업무평가 개요 .....	20
2) 중앙행정기관 평가 .....	20
3) 지방자치단체 평가 .....	23
4) 공공기관 평가 .....	24

### III. 여성정책 평가의 전개과정과 사례 ● 25

1. 여성정책 평가의 전개 과정 .....	27
1) 여성정책 평가의 목적 .....	27
2) 여성정책 평가의 전개 .....	28
2. 여성정책평가 사례 .....	32
1) 중앙정부 차원의 여성정책평가 .....	33
2) 지방정부 차원의 여성정책 평가 .....	39
3) 여성단체 차원의 여성정책 평가 .....	43
3. 여성정책 평가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	44
1) 여성정책 평가 주체와 평가 범주 .....	44
2) 여성정책 평가 유형 및 평가지표 .....	45

### IV.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성과와 한계 ● 49

1.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개요 .....	51
1) 평가의 추진배경 .....	51
2)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체계 .....	52

2.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	53
1) 평가의 목적 .....	55
2) 평가의 주체와 참여자 .....	56
3) 평가의 내용과 대상 .....	57
4) 평가시기와 횟수 .....	57
5) 평가방법과 평가지표 .....	58
6) 평가결과의 활용 .....	59
3.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한계 .....	59
1) 평가목적의 달성에 대한 기준의 모호성 .....	59
2) 평가의 내용 및 대상 .....	60
3) 평가시기와 횟수 .....	60
4)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체계의 한계 .....	60
5) 평가결과의 활용 .....	61

## V.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모형 개발 ● 63

1.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전문가 및 담당자 심층조사 .....	65
1) 조사 설계의 개요 .....	65
2) 설문지 주요 내용 .....	67
2. 설문분석 결과 .....	68
1) 기존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문제점 .....	68
2) 평가의 방향 설정에 관한 설문분석 결과 .....	76
3)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모형의 구성요소 .....	78
4)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체계 .....	81

3.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모형 .....	100
1) 평가모형 개발의 방향 .....	100
2)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모형 .....	103
3) 평가지표 체계 .....	108

## VI. 요약 및 결론 ● 113

### 참고문헌

### 부 록 ● 119

〈부 록 I〉 평가모형개발을 위한 설문지 .....	121
〈부 록 II〉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매뉴얼 .....	155

## ● 표 목차

【 표 I-01 】	여성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 심층조사 개요	8
【 표 II-01 】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들	15
【 표 II-02 】	책무성의 범주	16
【 표 II-03 】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의 평가부문 및 항목	21
【 표 II-04 】	주요정책과제의 평가항목 및 지표	22
【 표 II-05 】	특정평가 내용 및 평가기관	23
【 표 II-06 】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종류 및 평가시행기관	24
【 표 III-01 】	여성정책평가 현황	32
【 표 III-02 】	2001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33
【 표 III-03 】	합동평가에서 여성정책관련 지표 연도별 변화추이	34
【 표 III-04 】	2005년도 평가지표(10개 분야 23개 항목)	36
【 표 III-05 】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내용	37
【 표 III-06 】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평가기준	38
【 표 III-07 】	평가항목 및 지표	39
【 표 III-08 】	평가항목 및 지표	41
【 표 III-09 】	강원도 여성정책 2005년 평가지표	42
【 표 III-10 】	평가 항목 및 지표(5개 항목)	43
【 표 III-11 】	평가주체와 평가항목	46
【 표 IV-01 】	서울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사업 요약(2004~2007)	54
【 표 IV-02 】	자치구 여성정책평가의 평가분석 틀	55
【 표 IV-03 】	연도별 평가방법과 지표유형	58
【 표 IV-04 】	연도별 평가지표의 유형	60
【 표 IV-05 】	역대 수상실적	61
【 표 V-01 】	설문지 주요 내용	67
【 표 V-02 】	자치구 여성정책 전담팀의 최근 수행 사업 구분	69
【 표 V-03 】	설문 대상자별 여성정책 평가 형식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77
【 표 V-04 】	‘성 주류화 확산’ 영역의 평가항목 설정	84

【표 V-05】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 영역 평가항목의 적합성 검토 결과	85
【표 V-06】	‘여성경제(활동) 능력 향상’ 영역 평가항목의 적합성 검토 결과	87
【표 V-07】	‘양성평등문화 확산’ 영역 평가항목의 적합성 검토 결과	88
【표 V-08】	‘여성인권 및 복지향상’ 영역 평가항목의 적합성 검토 결과	90
【표 V-09】	‘일·가정 양립 지원’ 영역 평가항목의 적합성 검토 결과	91
【표 V-10】	‘성 주류화의 확산’ 영역 평가지표의 적합성 검토 결과	93
【표 V-11】	‘성 주류화의 확산’ 영역의 평가지표 설정	94
【표 V-12】	‘여성정책추진 역량 강화’ 영역 평가지표의 적합성 검토 결과	95
【표 V-13】	‘여성정책추진 역량 강화’ 영역의 평가지표 설정	96
【표 V-14】	‘양성평등문화 확산’ 영역 평가지표의 적합성 검토 결과	96
【표 V-15】	‘양성평등문화 확산’ 영역의 평가지표 설정	97
【표 V-16】	‘여성경제(활동) 능력 향상’ 영역 평가지표의 적합성 검토 결과	97
【표 V-17】	‘여성경제(활동) 능력 향상’ 영역의 평가지표 설정	98
【표 V-18】	‘여성인권 및 복지향상’ 영역 평가지표의 적합성 검토 결과	98
【표 V-19】	‘여성인권 및 복지향상’ 영역의 평가지표 설정	99
【표 V-20】	‘일·가정 양립 지원’ 영역 평가지표의 적합성 검토 결과	100
【표 V-21】	‘일·가정 양립 지원’ 영역의 평가지표 설정	100
【표 V-22】	평가주체와 평가단계에 따른 참여자	105
【표 V-23】	자치구 여성정책 추진 관련 부서	106
【표 V-24】	평가유형에 따른 평가방법	106
【표 V-25】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체계 설정	110
【표 V-26】	평가영역별 배점에 대한 전문가 및 담당자 조사결과	111

## ● 그림 목차

〈그림 I-01〉 연구방법 및 절차 .....	9
〈그림 II-01〉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	21
〈그림 III-01〉 여성정책 평가의 전개과정 .....	31
〈그림 V-01〉 모형개발을 위한 개념도 .....	65
〈그림 V-02〉 여성정책 평가와 담당여성정책 업무의 범위 .....	70
〈그림 V-03〉 평가에 대해 제기한 의견의 반영정도 .....	71
〈그림 V-04〉 여성정책 목표달성도에 대한 기여도 .....	71
〈그림 V-05〉 여성정책 평가의 영역별 목표달성도에 대한 기여도 .....	72
〈그림 V-06〉 정성평가가 필요한 부문 .....	73
〈그림 V-07〉 적절한 평가지표의 수 .....	74
〈그림 V-08〉 평가대상 기간의 적절성 .....	74
〈그림 V-09〉 차년도 계획수립의 반영 정도 .....	75
〈그림 V-10〉 여성정책 평가의 중요성 .....	76
〈그림 V-11〉 여성정책 평가의 형식 .....	77
〈그림 V-12〉 여성정책 평가의 초점 .....	78
〈그림 V-13〉 평가설계 단계에서의 일반시민의 참여 .....	78
〈그림 V-14〉 평가설계 단계에서의 여성단체 및 NGO 활동가의 참여 .....	79
〈그림 V-15〉 여성정책 평가의 범위 .....	80
〈그림 V-16〉 자치구 담당자간 교차평가 방식의 적절성 .....	81
〈그림 V-17〉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영역의 타당성 여부 조사 분석 결과 .....	82
〈그림 V-18〉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 영역의 평가항목 설정 .....	86
〈그림 V-19〉 ‘여성경제(활동) 능력 향상’ 영역의 평가항목 설정 .....	88
〈그림 V-20〉 ‘양성평등문화 확산’ 영역의 평가항목 설정 .....	89
〈그림 V-21〉 ‘여성인권 및 복지향상’ 영역의 평가항목 설정 .....	91
〈그림 V-22〉 ‘일·가정 양립 지원’ 영역의 평가항목 설정 .....	92
〈그림 V-23〉 중앙 및 서울시 - 자치구 여성정책의 연계 .....	102

〈그림 V-24〉 평가시기 및 주기 .....	105
〈그림 V-25〉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모형도 .....	107

## ● 부 록

〈부록 I〉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지 .....	121
〈부록 I-1〉 1차 설문지(담당자용, 전문가용) .....	122
〈부록 I-2〉 2차 설문지(통합) .....	141
〈부록 II〉 여성정책 평가를 위한 보고서 작성 매뉴얼 .....	155
〈부록 II-1〉 성 주류화의 확산 .....	156
〈부록 II-2〉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 .....	164
〈부록 II-3〉 여성경제(활동) 능력 향상 .....	167
〈부록 II-4〉 양성평등문화 확산 .....	171
〈부록 II-5〉 여성인권 및 복지향상 .....	175
〈부록 II-6〉 일·가정 양립 지원 .....	183

## ▣ 연구 요약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0년대를 전후로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왔음. 이 시기 부터 중앙정부 차원의 여성정책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평가가 있음. 서울시는 2004년부터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를 매해 시행해오고 있음
  - － 본 연구는 그동안 여성정책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정리·분석하고, 평가의 성과를 살펴볼 뿐 아니라 평가요소 및 평가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여성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요소에 따라 적절하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도출 하는데 있음.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로 요약·정리할 수 있음
  - － 첫째, 그동안 여성정책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정리하고,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 둘째, 여성정책의 환경변화에 따른 여성정책 추진 방향을 확인하고 목표를 재점검하는데 있음
  - － 셋째, 여성정책의 추진성과에 대한 일관된 점검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있음. 특히 지방정부 차원의 여성정책 평가도구를 개발하는데 있음. 구체적으로 서울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를 개발하여 적용하는데 있음

## 2. 범위와 방법

- 여성정책 평가의 내용상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 － 그동안 여성정책 평가의 내용상 범위는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팀의 업무를 중심으로 이

루어져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 평등의 달성, 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전 부서의 업무 범위를 포함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함
  - 여성정책평가와 관련한 기존문헌의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여성정책 평가 세미나 개최,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의 심층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음

## II 정책평가 모형개발의 이론적 기초

### 1. 정책평가의 의의

- 정책평가란 ‘정책’과 ‘평가’의 합성어로 평가대상으로써 정책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음
  - 정책평가를 통해서 정책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정책담당자들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정책과 그것의 효과와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으로써 정책지식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 여성정책 평가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한 여성정책의 내용을 적절하게, 그리고 제대로 수행하였는가를 체계적인 평가 틀에 의하여 평가함으로써 여성정책의 개선이 어느정도 이루어졌으며, 궁극적으로 여성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음.

### 2. 여성정책 평가 사례

- 여성정책의 평가사례를 평가주체를 중심으로 분류해 볼 때 중앙정부차원, 지방정부차원, 시민단체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정책 평가는 행정안전부(이전 행정자치부)에 의한

합동평가와 여성부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점검 형태로 시행되었음.

- 지방정부 차원의 여성정책 평가는 2000년대 이후 특정시기 동안의 여성정책 평가와 여성발전계획 점검을 위해 지역별로 실시함.
- 서울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를 비롯해서, 경기도와 전라도의 민선2기 여성정책 평가, 강원도 관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여성정책 평가, 경기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의 여성발전계획에 대한 중간점검을 들 수 있음.
- 여성단체 차원의 여성정책 평가는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의한 16개 광역시도의 여성정책 평가 사례를 분석함.

### 3. 시사점

- 그동안 이루어진 여성정책 평가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여성정책 평가의 목표는 평가주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음. 여성정책이 성평등 확산과 성주류화를 지향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정책의 범주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괄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여성정책 평가는 평가목표의 제시와 평가 범주의 측면에서 여성정책의 효과적 실현을 위한 폭넓은 정책평가를 담아내는데 한계점이 있음. 합동평가와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종합평가는 여성공무원의 인사제도와 일부여성복지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어 여성정책의 전반적 상황을 평가하기에는 역부족임.
  - 여성정책기본계획 평가의 경우는 포괄적인 여성정책과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만, 아직까지는 체계적인 지표 없이 점검 수준으로 실시되고 있음.
  - 또한 기초자치단체 차원과 시민단체차원의 여성정책의 평가 역시 평가체계가 안정적이지 않아 상황별, 특정시기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전반적인 여성정책 평가목표에 도달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통하여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III

## 자치구 여성정책평가의 성과와 문제점

### 1.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개요 및 성과

-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는 정책의 최종 고객이자 수혜자로서 서울시민의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하고 여성의 지위 및 인권 향상을 위해서 25개 자치구 여성정책 수행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지역간 경쟁을 통한 발전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과 여성발전기본법 등임.
- 자치구 여성정책 담당자들의 심층조사 결과 및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한 결과
  - － 여성정책 추진역량강화와 관련하여 자치구 여성정책담당 인력 충족률, 여성정책 관련 예산 증감률, 조직의 독립성 확보, 불평등한 제도정비 등의 실적이 조금씩 높아지는 성과를 거두었음.
  - － 여성경제활동 활성화와 관련하여 자치구에서 실시한 취·창업 실적이 약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 자치구 정책부서와의 협력체계 구축, 성별영향평가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등 성주류화 측면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었음.
- 한편, 평가요소에 따라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를 메타평가한 결과,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경우 평가주체와 관련하여, 외부평가로 추진되어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음.
  - － 평가의 주체 측면에서 볼 때 자치구 여성정책평가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4년)에 의해 추진되었고, 이후 서울시여성가족재단(구 재단법인 서울여성)에 의해 추진되었음.
- 자치구의 특성과 역량에 따른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평가의 방법이 진화되었음.
  - － 평가영역을 공통영역과 선택영역(4개)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음.
- 평가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음.
  - － 실적자료에 대한 정량평가, 전문가의 사업내용에 대한 정성평가, 정책참여자의 시민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음.

## 2.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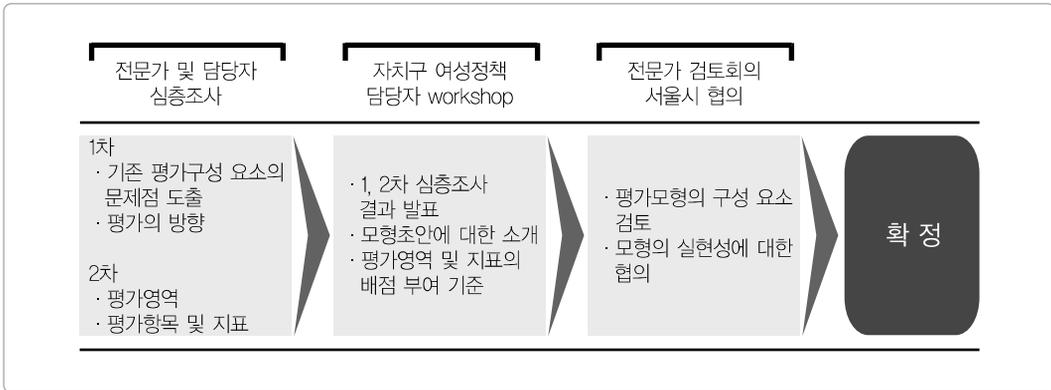
- 여성정책의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에 기준이 없어 전년도에 대한 상대적인 증감률을 토대로 평가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짐.
  - 결과지표보다는 산출지표가 여전히 많아 여성정책 추진의 성과평가보다는 실적평가의 주를 이루고 있음
  - 성과중심의 평가를 위해서는 산출지표보다는 결과지표의 비율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평가시기가 일관적이지 못하며, 평가대상 기간이 2년의 회계연도를 걸쳐 있는 등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아 한 해 동안의 성과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전문가 내용평가의 정성지표를 활용한 경우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평가지표 체계의 논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평가지표체계로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등 일련의 체계성을 갖춰야 함.
  - 평가지표가 여성정책의 성과를 나타내는데 적절한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 인센티브 지급방식에 대한 제고가 필요함.
  - 일부 자치구는 경쟁자체를 포기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치구가 참여하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IV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모형 개발

## 1.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전문가 및 담당자 심층조사

-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개념도는 세 단계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음.
  - 전문가 및 자치구 담당자에게 설문지를 이용한 심층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심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모형 초안에 대해 자치구 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였음.

- 전문가들과의 회의를 통해 여성정책 평가모형에 대해 검토한 후, 서울시 여성정책 담당자와 평가모형의 실현성에 대해 최종 협의하였음.



〈모형개발을 위한 개념도〉

- 설문조사 대상자는 여성정책 평가 전문가(34명)와 여성정책 평가 담당자(50명)로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설문시기는 2008년 7월 4일부터 8월 4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음(설문지 회수율: 90% 이상).
  - 설문지의 주요 내용은 ‘기존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들에 대한 검토’,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방향 설정’,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모형 설정’, ‘설문 대상자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됨.
- 설문분석은 1차 설문, 2차 설문 모두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SPSS window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음.
- 자치구 여성정책 담당자 워크숍에서는 전문가 및 자치구 담당자 심층조사 결과 설명, 평가체계(평가영역-평가항목-평가지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각 평가영역별 평가항목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들을 조사하였음.
- 전문가 검토회의에서는 평가모형(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수정·보완하였으며, 6개의 여성정책 평가영역별 혹은 평가지표별 배점 부여 기준에 대해 논의하였음.

## 2. 설문분석 결과

- 기존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문제점
  -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가 6개의 평가영역의 목표 모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

하였으며, 그 중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존 여성정책 평가의 구성요소에 대한 조사결과 전문가들은 평가방법에 대해 정성평가(약 36%)보다 정량평가(약 64%)의 비중을 더 강조하였음.
- 자치구 담당자들은 차년도 여성정책 계획수립에 평가결과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전문가들은 자치구 여성정책의 평가결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자치구의 대응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우수사례를 선정·홍보하여 확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담당자와의 쌍방향 의사소통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구나 회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 전문가들은 피평가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여성정책의 성과를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40-49개' 정도의 평가지표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음.
- 전문가들의 평가모형의 구성요소별 고려사항에 대한 응답 중 평가의 방향은 성 평등 지향성을 고려하면서 열악한 자치구를 지원해야하며, 평가주체는 민간여성단체, NGO 등 다양한 참여주체가 필요하며, 변화되고 있는 여성정책의 환경에 발맞춰 성 주류화 측면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고, 자치구의 추진 실적 뿐만 아니라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평가방법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혼용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방향 설정

- 여성정책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부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 여성정책 평가의 형식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담당자가 상반된 응답을 하였음.
  - 전문가들은 여성정책 평가를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으나(55.2%), 자치구 담당자들은 주로 자치구 평가에 통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68.0%). 또한 이러한 차이에 대한 교차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문가들은 여성정책 평가를 광범위한 포괄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모형의 구성요소

- 평가설계 단계에서의 일반시민의 참여에 대해 전문가와 자치구 담당자 모두 부분적으로 일반시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여성단체 및 NGO 활동가의 참여에 대해 전문가와 담당자 모두 부분적으로 일반시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전문가와 자치구 담당자 심층조사 결과 평가기간을 매년 1-12월의 사업으로 하고, 평가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년 초에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음.
- 평가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책 전반의 성 주류화 사업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음.
-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자치구 담당자간 교차평가 방식에 대해 전문가와 담당자간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음.
  - 전문가들은 적절하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약간 많은데 반해 자치구 담당자의 경우 적절하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약간 많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교차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나진 않았음(p=0.446).

○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체계

- 여성정책 평가영역을 설정하기 위해 여성정책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에 활용되고 있던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영역의 적정성에 대해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결과 기존 평가영역의 수(6개: (성 주류화의 확산, 여성정책추진 역량 강화, 양성 평등문화 확산, 여성경제(활동) 능력 향상, 여성인권 및 복지향상, 일·가정 양립 강화)와는 동일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일부분 수정되었음.
- 여성정책 평가영역별 평가항목을 설정하기 위해 1차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와 자치구 담당자로 나누어 6개 영역의 평가항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질문하였음.
  - 조사 결과 평가항목의 적합성 판단에 대해 두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두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진들의 검토회의를 통해 평가영역별 평가항목을 설정하였음.
- 여성정책 평가항목별 평가내용을 설정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토대로 각 영역의 평가지표를 구성하였고, 각 평가지표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전문가 및 자치구 담당자들에게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최종적으로 6개 평가영역, 19개 평가항목, 31개 평가지표로 지표체계가 구성되었음.

### 3.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모형의 설정

○ 평가모형 개발의 방향

- 중앙정부의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년) 및 서울시 시정운영 4개년 계획(2006~2010)의 정책목표와 부합해야 함.

- 변화하는 여성정책의 환경을 반영해야 함.
    - 여성정책 평가의 대상 범위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뿐 아니라 정책의 성 인지적 관점 반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추진실적을 포함시켜야 함.
  - 자치구별 여성정책의 특성화를 지향해야 함.
    - 중앙정부 및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되는 여성정책의 사업내용 외에도 각 자치구가 갖는 역량을 활용하여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강조해야 함.
  - 제한된 범위 내에서 평가지표 혹은 평가항목의 변경을 가능케 함으로써 융통성과 일관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체계 설정
- 본 연구에서 자치구 여성정책의 평가영역으로 6개를 도출하였음.
    - 성 주류화의 확산,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 여성경제활동 능력 향상,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인권 및 복지향상, 일·가정 양립지원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체계 설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 성 주류화의 확산	성별영향평가	· 내용평가 · 평가 결과의 환류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 (직급별) 교육 이수 비율
	정책 과정의 여성 대표성	·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
	성평등 정책 조정기구 운영	· 부서간 협의 노력도
	성별 분리 통계	· 보고 통계의 성별 분리 정도
	성인지 예산	· 성인지 예산 추진 노력도
2.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여부 · 사업계획의 적절성
	여성관련 예산 적절성	· 여성정책 전담팀의 예산 비율 · 여성발전기금 목표달성도
3. 여성경제 (활동) 능력 향상	교육·훈련	· 교육·훈련 실적
	여성경제 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노력도	· 내용 평가
	취·창업	· 취·창업 실적
4.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주관 사업 운영	· 내용평가
		· 만족도 평가

	시민 양성평등 증진 노력도	· 양성평등교육 실적 · 양성평등증진 사업 실적
5. 여성인권 및 복지향상	한부모·저소득 여성 복지 노력도	· 사업추진 실적 · 효과성 평가(목표 달성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및 예방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시설 점검·결과 개선 실적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및 방지 효과성 평가
	여성결혼 이민자 복지향상 노력도	· 사업추진 실적 · 효과성 평가
	장애여성 복지향상 노력도	· 사업추진 실적 · 효과성 평가(만족도)
6. 일·가정 양립 지원	보육서비스 향상 노력도	·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적 · 평가인증기관 확대 실적
		· 공공보육시설 확충 실적 · 24시간 운영 보육시설 증감율
	맞춤형 보육시설 마련	
6개 평가영역	19개 평가항목	31개 평가지표

## VI 요약과 결론

- 평가는 사후적 활동임과 동시에 미래지향적, 전향적 특징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 이와 같은 평가의 의미를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함
  - － 첫째, 평가체계의 일관성을 전제해야 함. 지표의 잦은 수정은 피평가자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오며 평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없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평가를 통한 사업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임.
  - － 둘째,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평가가 사후적 활동이므로 자칫 평가행위로 끝날 수 있음. 이는 많은 노력과 비용의 소모를 의미함. 따라서 평가결과가 행정의 관리개선이나 정책의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활용함으로써 평가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됨

- 본 연구에서는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가 매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예측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성하고, 평가의 구성요소에 따라 여성정책 평가 모형을 설정하였음
  - 평가체계는 평가영역, 항목, 지표, 세부 측정지표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에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체계는 크게 6개 평가영역, 19개 항목, 31개 지표로 구성함
  - 평가 구성요소에 따라 평가 목적, 주체 및 참여자,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대상, 평가결과의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였음
- 평가모형은 복잡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실제 이와 같은 평가모형은 특정 시·도 및 시·군·구 여성정책 평가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환경과 여건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또한 본 평가의 모형은 1년을 평가주기로 한 단기적 평가에 적합하며, 5년 혹은 10년의 장기 사업에 대한 평가는 새로운 평가 틀을 설정하여 장기적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해야 할 것임



# I

서론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연구의 필요성

1990년대 이후 여성정책은 상당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이 과거 특정 여성층에 대한 복지적 접근에서 모든 여성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여성정책의 발전은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경향까지 보인다(김정희, 2005: 256)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정비과정 속에서도 나타나는데, 1998년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하여 2001년에는 최초의 여성정책 전담부처로 여성부가 신설되었으며, 2005년에는 다시 여성가족부로 변화되었다(2008년 현재 다시 여성부로 축소됨). 또한 호주제가 폐지되고, 성매매 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는 등 여성정책의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정책의 성과가 눈에 띠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도 2000년대를 전후로 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각종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가 강조되고, 그에 따른 정책에 대한 평가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정책은 다소 늦은감이 있는데, 199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초기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는 민간단체나 연구자 등이 주체가 되어 여성정책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수준에서 이루어 졌다(손봉숙, 1993; 한국여성단체, 1997; 김정자, 1997; 김재인외, 1998; 김양희외, 2001 등). 이후 여성정책 내용의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한편, 여성정책 평가도 점차 평가의 주체와 평가내용 등이 다양해지며 발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여성정책 평가, 더 나아가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세분화되고 구체화 되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일부분),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종합평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여성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연숙외, 2006; 2007). 그러나 이와 같은 여성정책 평가는 실제 일관된 평가지표 없이 그때그때 상황과 여건에 맞게 평가하거나 객관성이 부족하여 여성정책의 개선이나 발전에 함의를 줄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김재인외, 2000; 김양희외, 2003;

문미경, 2004 등).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실시하게 돼있는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이 1998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현재 제3차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제 1, 2차 여성정책에 대해서 대략적인 성과를 파악해 보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정책의 비전과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향후 어떠한 정책과제에 보다 집중되어야 하는지 등 정책과제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에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더구나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평가는 평가주체나 평가대상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더욱 다양한 양상을 보이면서 평가가 이루어졌다. 기초자치단체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성과를 파악하기 쉬운 곳에 위치해 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종합평가 시행이나,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등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평가를 통해 실질적이 우수한 자치단체를 선별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평가를 통해서 실질적인 정책의 성과를 유도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해 주로 중앙정부의 여성정책으로 대표되어 논의되어 왔지, 지방정부 여성정책의 특성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비판(김경희, 2006: 43)이 있어 왔다. 김경희(2006)는 이에 대해 “앞으로 절실히 필요한 것은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지역여성들의 정책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정책환경 속에서 지방정부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정책 생산과 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은 중앙정부의 여성정책과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동시에 지방정부의 독자성과 특성에 기반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여성정책 평가를 현실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정책 목표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여성정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제까지 다양한 정부 수준에서 다양한 평가 틀과 체계를 활용하여 여성정책 평가를 해 온 것을 총체적으로 정리·분석하고, 특히 2004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해온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성과를 점검·분석하여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여성정책 평가를 재점검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여성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그동안 여성정책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정리하고, 향후 여성정책 평가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여성정책의 환경변화에 따른 여성정책의 방향을 확인하고 목표를 재점검하는데 있다. 과거의 여성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단체지원, 한부모 가정지원,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권의 증진 관련 사업,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주를 이루어왔다. 한편, 오늘날 여성정책은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목표로 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 뿐 아니라 모든 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이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의 지속적 확산, 2010년부터 추진되는 성인지예산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틀은 이와 같은 여성정책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발전을 위한 지향점 뿐 아니라 성 주류화에 대한 지향점을 담은 평가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셋째, 여성정책의 추진성과에 대한 일관된 점검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있다. 여성정책은 경제정책, 환경정책, 복지정책 등의 정책과는 다른 복잡·다양한 특징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국정목표와 통합의 어려움, 단면성으로 인한 계속성 부족, 재정배분의 취약성, 여성문제 가치 내재로 인한 계량적 평가 등의 어려움(김양희외, 2003: 23)이 있다. 따라서 여성정책의 특성을 반영한 일관된 평가체계를 개발하여 여성정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여성정책 성과에 대한 논의는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반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여성정책의 성과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이에 대해 김양희(2003: 25)는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시·군의 기초단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초단체의 인력문제 등 현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지방자치제가 발전함에 따라 자치구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를 통해서 여성정책의 발전과 지역적 균형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평가체계의 비일관성으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지역주민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 여성정책의 수립과 집행 및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개발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 2. 연구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범위

자치구 여성정책의 평가모형을 개발함에 있어서 여성정책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까지 여성정책 내용의 대상범위는 주로 자치구의 가정복지과 혹은 사회복지과 내 여성정책 관련 담당부서의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정책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따라서 여성정책 담당부서에서의 사업을 초월하여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여성정책 평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여성정책의 광범위성을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책내용과 대상에 대해 기준을 분명하게 구분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정책 평가의 범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는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정책으로써 전통적으로 여성정책 담당부서에서 추진한 실적을 포함한다. 둘째는 성 주류화를 위한 전략의 수행실적도 여성정책 평가의 대상범위에 포함한다. 예를 들면,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수행실적이나 정책의 성 인지적 관점의 반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그것의 성과, 성인지 예산 등의 추진실적을 여성정책 평가의 범위에 포함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방법과 절차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모형 개발을 위해 수행한 연구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정리하였다. 첫째는 여성정책 평가모형 개발의 이론적 배경과 관련한 문헌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여기에는 정책평가 관련한 연구로써 평가의 목적과 유형, 모형의 구성요소로서 정책의 평가요소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여성정책 평가모형을 위한 주요요소를 도출한다. 다른 한편의 문헌연구는 기존의 여성정책 평가연구와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결과보고서 등 여성정책 평가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존 평가연구의 문제와 한계점을 파악한다. 또한 개선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② 전문가 회의 및 여성정책 평가 관련 세미나 개최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모형 설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를 한정짓는다.

여성정책 평가 관련 세미나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를 통해서 자치구 여성정책의 발전정도를 점검하여 평가가 갖는 성과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기존의 평가가 갖는 한계가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피평가자로서 자치구 여성정책 담당자 및 서울시 여성평생교육 기관 관계자, 평가 및 여성정책 전문가를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여성정책 평가의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모형개발에 반영하였다.

## ③ 여성정책 담당자 및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에 대한 심층조사 실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모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여성정책 담당자 및 여성정책과 관련 영역의 전문가에 대한 심층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실무자와 전문가 조사로 나누어 1차와 2차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실무자 및 전문가 조사 모두 평가모형 구성을 위해 평가의 구성요소로서 평가주체, 평가방법, 평가시기, 평가내용, 평가지표, 평가결과의 활용 등 전반에 대한 평가를 기존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담았다. 여성정책 실무자 조사에서는 자치구 여성정책의 업무범위에 대한 조사, 평가내용으로서 기존 지표에 대한 적절성 여부, 추가되어야 할 평가내용 등을 설문한 반면, 여성정책 및 영역별 전문가 조사에서는 여성정책 평가의 방향, 현재 여성정책 평가내용 외에 수정 또는 보완되어야 할 내용, 평가방법으로써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비중, 여성정책 평가영역의 적절성 등 실무자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중심으로 심층조사 하였다.

2차 조사는 1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평가모형을 구성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평가영역의 구성 및 영역간 배점, 평가지표 간 배점 비중에 대한 질문, 평가 산식 작성시 고려사항 등으로 구체화 하였다. 구체적인 심층조사 개요에 관한 사항은 다음 <표 I-1>과 같다

## ④ 평가모형에 최종자문회의 개최

기존의 연구결과 및 자치구 여성정책 담당자, 여성정책 전문가 심층조사를 토대로 정리하여 평가모형에 대한 초안을 도출하고 이 모형이 실제 적용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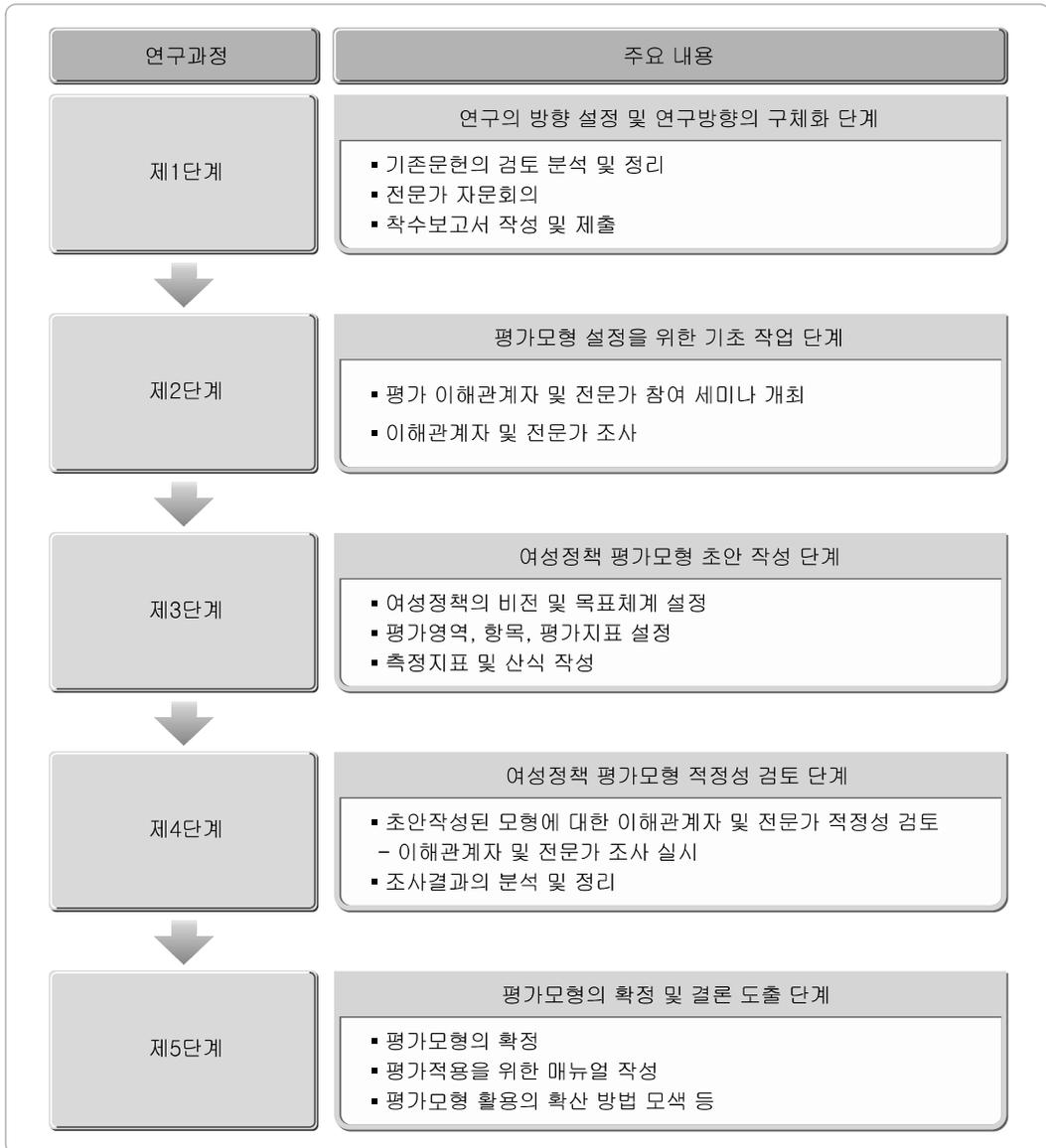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해 피평가자로서 자치구 여성정책 담당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최종자 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평가모형을 구성하는 구성요소의 타당성과 특히 평가체계로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산식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묻고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표 1-1 여성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 심층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정책의 목표 및 평가의 목적 확인</li> <li>- 평가모형 설정을 위한 평가영역, 항목, 지표체계 등에 관한 의견 수렴</li> <li>- 영역 및 항목의 배점기준에 대한 자료수집등</li> </ul>
조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조사 : 2008. 7. 4 ~ 7. 17</li> <li>- 2차 조사 : 2008. 7. 21 ~ 8. 4</li> </ul>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80명</li> <li>- 실무자 조사 : 자치구 여성정책 담당팀장, 담당자의 자치구당 2명</li> <li>- 전문가 조사 : 여성정책 전반, 영역별 전문가 30명</li> </ul>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심층설문조사</li> <li>- 우편, 이메일 발송 및 회수</li> </ul>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정책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성정책의 차별화 방안은 무엇인가? 이를 어떻게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에서 반영할 것인가?</li> <li>-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에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li> <li>- 여성정책 평가의 목적은 무엇인가?</li> <li>- 여성정책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의할 것인가?</li> <li>- 여성정책 평가에 각 자치구의 성 주류화 실적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li> </ul> </li> <li>○ 여성정책 평가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정책의 평가부문</li> <li>- 부문별 여성정책의 평가영역 및 항목 구분</li> <li>- 항목별 배점 부여 기준</li> </ul> </li> <li>○ 그 밖에 평가 관련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방법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비중,</li> <li>- 평가지표로서 투입지표와 산출지표의 비중</li> <li>- 공통부문과 선택부문을 구분하여 평가할 것인가? 통합하여 종합평가 할 것인가?</li> <li>-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결과의 활용방법으로써 인센티브 지급방식 혹은 우수구 선정방식에 대한 의견</li> <li>- 평가자료 분량의 감축방법 등</li> </ul> </li> </ul>

### ⑤ 평가모형의 확정 및 보고서 발간

평가모형의 적정성 검토에서 나타난 문제와 한계점을 수정·보완하여 평가모형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난 후 평가모형에 따른 평가시행절차와 평가매뉴얼을 작성하고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림 1-1〉 연구방법 및 절차



# II

## 정책평가의 이론적 기초



# II 정책평가의 이론적 기초

## 1. 정책평가 개요

### 1) 정책평가의 필요성

정책평가란, ‘정책’과 ‘평가’의 합성어로서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정책평가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정책을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겠다.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가치의 배분, 목적이나 가치지향, 공공문제해결 등) 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에 대해서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결정한 기본방침이다(정정길 외, 2004: 6). 한편, 평가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물건에 대한 화폐가치를 결정함’, ‘사람이나 사물의 가치를 판단함’이라고 정의한다.

이와 같은 정책과 평가를 종합하여 설명하면, 정책평가란 평가대상으로서 정책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정책은 사적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및 관련된 활동을 제외하며 공공부문에서 형성되고 추진하는 정책만을 관심의 대상으로 한다.

오늘날 정책평가가 점차 강조되며 중요한 학문분야의 하나로 성장해 온 이유는 첫째, 오늘날의 정책 환경 및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정치·행정 환경의 변화 속에서 설명할 수 있다.

정부정책의 양적·질적 팽창은 정부재정규모의 증대를 가져왔으며 실제 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했는지의 효과에 대한 의문은 정책평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sup>1)</sup> 둘째,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체계적인 정보생산의 필요성은 정부의 정책평가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 정책이 형성·집행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수가 증가됨으로써 정책과정의 환경이 매우 복잡하게 변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정책을 판단하고 참여자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지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책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필요로 하였으며 이러한 정보수요는 정책평가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는

1) 1960년대 미국 연방정부에서 추진한 국립무료유아원사업(Head Start Program)이 엄청난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의 지능개발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함으로써 처음에 의도한 정책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보고됨으로써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했다는 것이다(정정길 외, 2004: 3~5).

원인이 되고 있다(노화준, 1993: 23). 셋째, 정부의 재정배분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준 마련의 필요성은 정책평가를 강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감은 다양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나 재정적 한계로 인하여 정부재정 지출의 합리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이 외에도 정책평가를 통해서 정부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되며, 이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정책효능감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된다. 반면, 효과가 없는 정책에 대한 재정지출을 중단하게 함으로써 정부재정의 건전성에 기여하며, 정책방향을 개선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실패를 완화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은 오늘날 평가가 강조되는 이유들이라고 할 수 있다.

## 2) 정책평가의 목적

정책평가의 목적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집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정길(2004: 26~31)은 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정책과정상 책임성 확보, 이론구축에 의한 학문적 기여의 세 가지를 꼽고 있다. 정주택외(2007: 7~14)는 정책평가의 목적에 대해 책무성 확보, 정책과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지식의 증대의 세 가지 목적을 제시한다. 차의환(2001: 29~30)은 지식의 관점, 관리의 관점, 책임의 관점에서 정책평가의 목적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에버트 비등(1997: 101~113)은 책임성의 문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료의 욕구, 기초지식을 위한 평가, 그리고 전략적 목적의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략적 목적이란 정책 담당자들이 상급자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결점이나 실패를 감추기 위해 혹은 프로그램의 매력적인 측면을 과시하거나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의 외양을 실제보다 더욱 낮게 표현하기 위해 평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바람직한 목적은 아니지만 평가에 실제적으로 내재하는 측면이라는 점에서 평가의 목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여기에서는 이상과 같은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목적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는 정책과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둘째는 책무성의 확보, 셋째는 이론적 기여이다.

### ① 정책과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정책과정에 필요한 정보제공은 정책평가가 정책을 개선하여 향상시키는데 주된 목적을 두는 것으로 정책집행 시 혹은 집행후의 결과를 검토하여 확보한 정보를 피드백시킴으로써 정책의 운영과 방향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세 가지 목적 중 총괄평가

와 함께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크론바흐(Cronbach, 1980: 31)는 “정책평가의 책임성을 중시하는 경우, 상이나 벌을 주기위해 과거를 돌아보는 행위를 강조한다. 그렇지만 평가의 주 목적은 앞으로의 활동을 이끌어주기 위해 사건이나 과정을 이해하도록 해주는 데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책과정에 필요한 정보는 의사결정자들이 정책의 계속 시행 혹은 중단 결정, 해당 정책의 확대 혹은 축소 결정, 수정 혹은 개선 결정에 요구되는 정보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 ▮ 표 II-1 ▮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들

- 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아직도 사회적 요구가 있는가?
- 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의 목표가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 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이 어느 정도나 헌법의 제 규정과 일치하고 있는가?
- 문제되고 있는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
  - 의도했던 제1차적 목표를 달성했는가?
  - 의도했던(혹은 기대했던) 제2차적 목표는 달성되었으며,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는가?
- 성공적이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 문제되고 있는 정책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성공이 설명될 수 있지는 않은가?
  - 정책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정책의 각 구성요소들이 어느 정도나 기여했는가?
- 성공적이었다면 그 정책은 비용을 능가하는 편익을 가져왔는가?
-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된 다른 정책들에 비교해 볼 때 더 능률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
- 성공적이 못되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 정책의 집행과정상에 결함은 없었는가?
  - 정책 자체에 어떤 결함은 없었는가?

출처 : 정주택외(2007), 정책평가론, 파주 : 법문사, p.12.

## ② 책무성의 확보

정책평가에서 책무성<sup>2)</sup>의 확보란 정책실무자들이 본인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권한을 적절히 행사했는지를 판단하자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를 정치이념으로 한 국가는 주인인 국민에 대해 대리인인 정부가 책무를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책무성의 내용은 법, 회계, 서비스 전달, 대상집단에 대한 책무성, 영향에 대한 책무성, 효율성에 대한 책무성의 여섯 가

2) 책임성이라고도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책무성과 책임성의 개념을 구분한다. Michael Scriven(1981)은 행정에서의 책임성(responsibility)이란 개인이나 기관에 부여된 직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책무성(accountability)이란 직무수행의 내용-예산지출, 결정, 노력 등-을 정당화할 책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지를 포함한다.

Ⅱ 표 II-2 Ⅱ 책무성의 범주

구 분	점검내용
법적 책무성 (legal accountability)	프로그램이 직업상 안전과 건강, 의사결정 기구에서 대표성 확보, 서비스 배분에 있어서 형평성, 개인적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회계 책무성 (fiscal accountability)	자금의 사용, 지출에 대한 문서화 여부, 예산범위 내에서 자금 사용 등 재정 및 회계 규칙에 따라 자금이 사용되고 지출되었는지 여부
서비스 전달의 책무성 (service delivery accountability)	당초에 계획한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대상집단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파악함
서비스 대상범주에 대한 책무성 (coverage accountability)	마땅히 제공되어야 할 대상집단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혹은 대상집단이 아닌 경우에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함
영향에 대한 책무성 (impact accountability)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산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효율성에 대한 책무성 (efficiency accountability)	프로그램 비용과 관련하여 나타난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해 평가함

출처 : Evert Vedung(1997), Public Policy and Program Evaluation, Transaction Publishers, p.103.

### ③ 이론적 기여

정책평가의 세 번째 목적은 이론적 지식 형성, 지식의 증대 등 다른 용어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정책평가를 통해서 이미 형성된 이론을 확인하기도 하며 가설적 이론을 이론화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궁극적으로 정책평가는 기존이론의 향상이나 발전, 새로운 이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정책평가는 사회과학분야에서 새로운 이론의 개발이나 기존이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정책평가, 그 중에서 정책의 효과평가는 독립변수로서 정책과 종속변수로서 정책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의 규명을 그 중심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정주택외, 2007: 14)

## 2. 정책평가의 유형과 주요 내용

### 1) 정책평가의 유형

정책평가의 유형은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 기준에서 정책평가의 유형을 구분하고자 한다. 첫째는 언제 평가하는가에 따른 분류이다. 평

가시기에 따라 형성평가, 과정평가, 총괄평가로 구분된다. 둘째는 누가 평가하는가에 따른 분류이다. 평가주체에 따라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구분된다. 셋째는 무엇을 평가하는가에 따른 분류이다. 평가대상에 따라 노력평가와 성과평가로 나눌 수 있다.

### (1) 평가시기에 따른 분류

평가의 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 형성평가, 과정평가, 총괄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sup>3)</sup>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는 사업계획을 형성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평가이다. 주로 사업관리자나 사업담당자와 같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수행되며, 따라서 내부적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는 정책의 평가대상을 '과정'에 맞추어 평가하는 것으로 정책의 집행 및 활동을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집행전략을 수립하거나 정책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정평가는 집행과정을 검토하여 정책효과 발생의 과정을 밝히고 바람직한 집행전략으로 수정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 평가이다.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나 효과를 측정하는 활동이다. 이는 정책의 최종 산출물이나 결과를 직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정부 정책결정자나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는 평가이다.

### (2) 평가주체에 따른 분류

정책평가의 유형을 구분함에 있어서 '누가 평가를 실시하느냐'의 평가주체가 정책이 수립·시행되는 내부에서 시행되느냐 혹은 외부에 있느냐에 따라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나뉜다.

내부평가는 해당정책의 집행자는 아니지만 그것의 시행에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의 구성원이 수행하는 평가인 반면, 외부평가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이나 사업을 책임 맡고 있는 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실시되는 평가를 의미한다. 이상적으로 모든 기관이 자기가 수행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내부평가는 자기 기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외부평가는 평가대상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감안하여 누가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연구의 주요목적, 즉 누가 그 평가를 통해 도출된 정보를 일차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3) 정정길외(2004: 37)는 과정평가를 형성평가와 과정평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전자가 정책집행 도중에 집행전략이나 집행설계의 수정·보충을 위해 수행하는 평가를 의미한다면, 후자는 사후적으로 정책의 집행 및 활동분석을 통해 정책내용을 수정·변경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것이다.

### (3) 평가대상에 따른 분류

평가의 대상에 따른 분류는 평가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에 따라 평가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치만과 나크마이어스(Suchman & Nachmias)는 평가의 대상을 노력평가(evaluation of effort)와 성과평가(evaluation of performance)로 구분하고 있다. 노력평가는 특정한 활동의 수행을 통하여 보다 높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며, 정책수행활동의 노력정도가 정책의 성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즉 수행한 활동이 무엇이며, 그러한 활동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성과평가는 노력평가와 달리 노력 그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 무엇을 달성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정책 수행에서 정당성의 확보는 그것이 해결하고자 한 문제를 해소했는가에 따라 효과성 여부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책을 통해서 어떠한 효과를 거두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과평가는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 2) 정책평가의 주요 내용

정책평가의 내용은 어떠한 평가인가에 따라 내용을 달리한다. 정책평가는 총괄평가와 과정평가로 구분되는데 이에 따라 총괄평가 시 평가의 내용과 과정평가 시 평가의 내용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총괄평가의 평가내용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에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impact)을 추정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평가의 내용은 주로 정책의 결과나 영향에 초점을 두는 효과성 평가, 능률성 평가, 영향 평가를 그 내용으로 한다.

#### ① 효과성 평가

정책의 효과성은 정책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판단하는 평가이다. 효과성 평가는 단순하게 의도했던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결하고자 했던 정책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지, 정책으로 인해 문제가 완해 또는 악화되었는지 등의 파악과 분석을 포함한다(정정길외, 2004: 32). 효과성 평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의도했던 정책효과가 과연 그 정책 때문에 나왔는지 여부, 둘째, 발생

한 정책효과의 크기는 정책목표와 대비하여 어느 정도인지 여부, 셋째, 정책효과의 크기는 해결하고자 했던 원래의 정책문제의 해결에 충분할 정도인지의 판단 등이다. 이상과 같이 정책은 의도했던 효과만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효과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 ② 능률성 평가

일반적으로 능률성은 투입과 산출의 비율로써 설명되는 것으로 여기서 투입은 정책이나 사업의 비용이고, 산출은 그 결과물이다. 정책평가에서 능률성을 고려하는 것은 능률성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효과성 여부를 판단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책추진의 비용까지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③ 영향평가

영향평가(impact evaluation)는 정책추진 결과 뿐 아니라 그 결과로 인해 나타난 영향까지를 포함한 개념이다. 따라서 영향은 정책 종결 직후 영향이 나타나기 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늦게 파악할 수 있다.

## (2) 집행과정 평가의 내용

집행과정평가는 집행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정책의 집행이나 사업의 운영이 원래의 집행계획(plan)이나 집행설계(design)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이에 벗어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즉, 정책 집행활동을 그 계획에 비추어 점검함에 있어서 집행절차와 자원, 정책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전달, 정책의 대상영역 등을 계획에 대비하여 점검하는 것이다. 집행과정 평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정정길, 2004: 40). 원래의 집행계획서의 활동들이 이루어졌는가?(activity), 계획된 인적·물적 자원이 계획된 시간에 투입되었는가?(input), 원래 의도한 정책대상 집단에 제공되었는가?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에 순응하고 있는가? 등이다.

## 3. 우리나라 정책평가 관련 제도

우리나라의 정책평가는 평가의 주체에 따라 크게 행정부에서 수행하는 평가와 국회에서의 정책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부의 정책평가는 국무총리 소속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총괄하는 한편, 국회의 정책평가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는 행정부의 정부업무평가 개요, 중앙행정평가, 지방자치단체평가, 공공기관 평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sup>4)</sup>

## 1) 정부업무평가 개요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는 1961년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제도로부터 시작하였으나 현재와 같이 정부업무에 평가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에 기초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 외에도 특정과제에 대한 정책평가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후 그동안 제도운영의 문제점<sup>5)</sup>을 보완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법’으로 개정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 법의 운영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정부업무평가를 총괄하며 이 외에 실무위원회와 사무를 지원하는 심사평가조정관실을 두고 있다.

정부업무평가의 종류는 크게 중앙행정기관 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공공기관 평가로 나뉜다. 중앙행정기관 평가는 다시 자체평가와 특정평가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합동평가, 개별평가)와 지방자치단체 평가로 나뉜다. 그리고 공공기관 평가는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와 기본법에 따른 평가로 나뉜다.

## 2) 중앙행정기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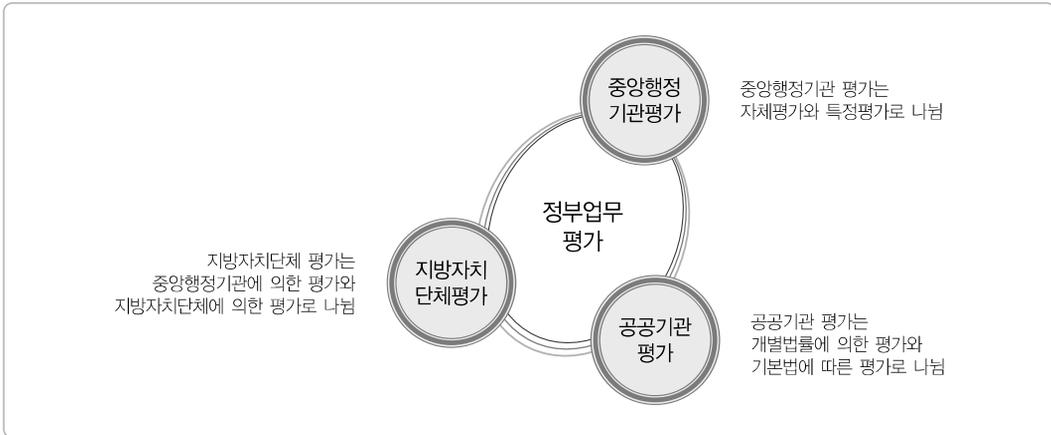
### (1)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근거하고 있다.

---

4) 이에 관해서는 정주택외(2007)의 ‘주요국의 정책평가제도’를 발췌하여 정리·요약하였다.

5) 기존의 평가가 남설되고 중복되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에 대응하여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법을 개정한 것이다(정주택외, 2007: 188).



〈그림 II-1〉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자체평가의 대상은 주요정책과제,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의 5대 부문에 대하여 실시된다. 평가항목은 주요정책과제의 경우 계획수립의 적절성, 성과계획의 적정성, 시행과정의 효율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목표달성도, 평가결과 활용도 등을 평가한다. 주요정책과제의 평가총괄기관은 국무조정실이다. 재정성과 부문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성과계획의 합리성, 집행의 효율성, 성과목표달성도를 평가하며 평가담당기관은 기획예산처이다. 인사부문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평가를 총괄하며, 평가항목으로 계획의 적절성, 집행의 효율성, 성과달성도, 평가결과 활용도, 성과관리체계 구축정도, 균형인사 달성 정도 등을 평가한다. 조직부문은 행정자치부가 평가를 총괄하며, 조직관리계획의 적절성, 조직개편, 기능·인력 재설계, 조직관리 평가결과 활용, 책임운영기관화 등을 평가한다. 정보화부문은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가 평가를 총괄하며, 평가항목으로 계획의 적절성,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 정보화 기반조성, 정보화 적용운영수준, 정보화 효과 등을 평가한다.

표 II-3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의 평가부문 및 항목

평가부문	평가항목	총괄기관
주요 정책과제	계획수립의 적절성, 성과계획의 적정성, 시행과정의 효율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목표달성도, 평가결과 활용도 등	국무조정실
재 정 성 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성과계획의 합리성, 집행의 효율성, 성과목표달성도 등	기획예산처
인 사	계획의 적절성, 집행의 효율성, 성과달성도, 평가결과 활용도, 성과관리체계 구축정도, 균형인사 달성 정도 등	중앙인사위원회
조 직	조직관리계획의 적절성, 조직개편, 기능·인력 재설계, 조직관리 평가결과 활용, 책임운영기관화 등	행정자치부

평가부문	평가항목	총괄기관
정 보 화	계획의 적절성,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 정보화 기반조성, 정보화 적용운영수준, 정보화 효과 등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자료 : <http://psec.go.kr/opc1/evaluation/center/self/html/ForwardAction.do>

이 가운데서 주요정책과제는 대과제(정책목표), 중과제(이행과제), 세부과제로 분류되는데 주요정책과제 평가는 중과제(이행과제)별로 평가한다. 주요정책과제 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예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Ⅱ 표 II-4 Ⅱ 주요정책과제의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 이행도	7
	1-2.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적절성 구비	4
성과계획의 적정성	2-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한 설정	6
	2-2. 성과지표 목표치 및 검증방법의 적정성	5
시행과정의 효율성	3-1. 집행의 적시성	7
	3-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 집행도	5
시행과정의 적절성	4-1.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정도	7
	4-2.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및 운영정도	4
목표의 달성도	5-1. 성과지표에 의한 목표의 달성정도	40
평가결과 활용도	6-1. 평가결과의 공개와 학습에 활용정도	5
	6-2. 개인성과 및 차기계획에 대한 평가결과의 반영도	10

## (2) 특정평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9조(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및 제20조(특정평가의 절차)에 의거하여 국무총리는 특정평가의 대상,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부업무평가시행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평가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특정평가의 기본방향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정주택외, 2007: 195). 첫째,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특정분야로 선정한다. 둘째, 평가대상기관의 업무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차별화된 평가를 실시한다. 셋째,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보완하여 평가의 통합성 및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한다.

특정평가의 분야는 혁신관리, 정책홍보관리, 대통령 지시사항, 규제개혁, 법적의무·권장사항 및 법제업무, 정보공개, 청렴도, 위기관리, 고객만족도, 특정시책 등을 포함한다. 혁신관리의 평가내용은 혁신리더십, 혁신역량, 혁신문화, 혁신성과이며, 정책홍보관리는 정책보도 수용 및 대응 적절성을, 대통령 지시사항은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규제개혁은 규제개혁 추진노력 및 실적을, 법적의무·권장사항 및 법제업무에는 법적의무·권장사항 이행도, 법제업무를, 정보공개에는 정보공개기반, 실적, 만족도 등을 평가한다. 청렴도 평가에는 체감청렴도, 잠재청렴도 등을, 위기관리는 위기관리 체계 및 위기관리 활동을 평가한다.

### 3) 지방자치단체 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평가로 구분된다.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하며, 단 업무의 특성, 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합동평가가 어려운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평가한다.

표 II-5 특정평가 내용 및 평가기관

평가분야	평가내용	평가(협조)기관	
관리 대상 업무	① 혁신관리	혁신리더십, 혁신역량, 혁신문화, 혁신성과	행정자치부가 위임받아 평가
	② 정책홍보관리	정책보도 수용 및 대응적절성	국무조정실이 국정홍보처와 협조하여 평가
	③ 대통령지시사항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실적	국무조정실 평가
	④ 규제개혁	규제개혁 추진노력 및 실적	국무조정실 평가
	⑤ 법적의무, 권 장사항 및 법 제업무	법적의무·권장사항 이행도, 법제업무	국무조정실이 법제처 등과 협조·평가
	⑥ 정보공개	정보공개기반, 실적, 만족도	국무조정실이 행정자치부와 협조·평가
	⑦ 청렴도	체감청렴도, 잠재청렴도 등	국무조정실이 청렴위 등과 협조·평가
	⑧ 위기관리	위기관리 체계 및 위기관리 활동 등	국무조정실이 NSC 등과 협조·평가
고객만족도	주요정책 만족도, 행정서비스 만족도	국무총리	
특정시책	각종 특정과제 추진성과	국무총리	

자료 : <http://psec.go.kr/opc1/evaluation/center/self/html/ForwardAction.do>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수립한 자체평가계획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한다. 자체평가계획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주요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한다.

표 II-6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종류 및 평가시행기관

구 분		평가시행기관	비 고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	합동평가	중앙행정기관 합동(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별평가	개별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

#### 4) 공공기관 평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로 구분된다.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는 공공기관 중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III

## 여성정책 평가의 전개과정과 사례



# III

## 여성정책 평가의 전개과정과 사례

### 1. 여성정책 평가의 전개 과정

#### 1) 여성정책 평가의 목적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여성관련 제반 법률<sup>6)</sup> 및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여성정책에 대한 개념정의에 대해,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정책을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기본시책에 포함되어 있는 여성정책의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sup>7)</sup>

한편, 샤프리츠(Shafritz, 1998: 962)는 정부의 전반적 활동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향유하도록 보장해주는 정책기구나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한승준·주재현(2003: 122)은 여성정책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켜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정부가 여성정책 기구를 통해 여성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범주를 김정희(2005: 262~263)는 여성정책의 목적과 효과를 기준으로 크게 네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소외계층 여성들의 복지를 위한 현실개선 정책, 둘째, 공공부문의 적극적 조치를 통한 차별해소 정책, 셋째, 사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온 가족 및 성폭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넷째, 여성정책이 아닌 다른 정책에 대한 성별화(gendering) 정책이다.

이렇게 여성정책은 정책의 전 영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여성정책이 지향하는 지점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성 평등의 달성과 여성의 지

6) 여기에는 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윤락행위방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등이 포함된다(한승준·주재현, 2003: 121).

7) 여기에는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 공직참여, 고용평등, 성희롱의 방지등, 모성보호의 강화, 가정·학교·평생교육, 여성인적자원의개발 등, 여성복지의 증진,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성폭력·가정폭력의 예방, 가사노동 가치의 평가, 여성국제협력,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여성자원봉사 활동의 개선(여성발전기본법, 2008. 6. 13일부개정 내용 포함)

위 및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정책 평가의 목적은 이와 같은 정책이 지향하는 바를 정책의 실행을 통해서 얼마나 적절하게 달성하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측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의 환류를 통한 개선에 있다.

## 2) 여성정책 평가의 전개

여성정책의 추진은 ‘여성발전기본법’과 그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하여 여성부를 중심으로 수립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방향에 기초하여 실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여성정책 평가와 관련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는 ‘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규정을 두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 2(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에는 ① 여성부 장관은 법 제8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둘 수 있다. ②여성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부 장관은 해당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8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에 근거하여 자치구 여성정책평가를 2004년 이후 매년 실시함으로써 정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법·제도에서 그 시행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여성정책 평가의 필요성에 따라 1990년대 후반부터 여성단체, 연구자 등이 주체가 되어 비정기적·부분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평가의 주체, 평가내용, 평가 틀 여부 등을 살펴봄으로써 여성정책 평가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1990년대 여성정책 평가

1990년대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주체는 한국여성단체 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단체 연합 등 주로 학회와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김재인외, 2000: 52). 이때의 평가란 일정한 평가기준이나 평가 틀 없이 국정목표의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법·제도의 정비실적을 기술적으로 나열하고 일정한 설명과 해석을 덧붙이고 있다. 관련한 평가연구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손봉숙(1993)은 1988년 정부장관2실의 발족으로 여성문제가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된 것을 계기로 제6공화국 기간동안 여성정책이 내 걸었던 모토로서 '남녀의 공동참여, 공동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대상 영역으로는 행정부와 정치과정을 포함하는 정책결정과정의 참여, 남녀평등으로 고용, 가정, 교육에서의 평등문제를 기술하고 있다. 또한 모자가정의 복지정책, 성폭력 및 매매음 관련법 문제를 그동안의 법·제도적 추진실적을 기술하고 연구자의 현상에 대한 해석과 설명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정자(1997)는 여성정책의 가치기반을 평등의 실현, 참여의 확대, 복지의 증진을 위한 개념으로 보고 평가대상 정책을 여성사회참여확대방안, 정부차원의 10대 과제, 제1차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을 평가대상으로 하여 정책목적, 추진실적, 추진상의 장애요인, 개선방안으로 구분하고 기술함으로써 평가하고 있다. 김재인의(1998)는 해당 정부의 여성정책의 추진실적을 기술하고 단기 여성정책의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김양희의(1998)은 여성의 인권보호와 남녀평등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중앙차원에서의 여성정책 기구인 여성특별위원회와 6개 부처 여성담당관실의 중점 시책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1990년대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요약하면, 우선 평가의 주체면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체가 시행한 평가보다는 민간 여성단체, 개인연구자, 연구소 등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정책에 대한 개념정의가 평가보고서에 따라 서로 상이함으로써 평가의 대상영역이 일관적이지 못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어떤 연구에서는 정책추진부서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책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으며(김양희의, 1998), 다른 연구에서는 여성정책의 범주를 남녀평등을 포함하는 정책으로 정책과정, 고용·가정·교육에서의 남녀평등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손봉숙, 1993), 이 외에 복지정책, 성폭력이나 매매음 관련법 제정 등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방법에 있어서 일정한 평가 틀이나 평가기준 없이 그동안 추진된 사항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술에 불과하고 연구자에 따라서 그것이 갖는 함의와 의의를 설명함으로써 정책의 의의로 평가를 대신하고 있다.

## (2) 2000년대 여성정책 평가

2000년대 들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성정책 전담기구 설치의 여성정책이 점차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동시에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도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김재인·김성경·권미수(2000)는 그동안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가 일정한 기준 없이 수행되어 온 것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안되고 있는 여성정책을 일정한 평가 틀에 따라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모형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실제 여성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위한 틀을 마련한 기초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를 계기로 하여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서 평가기준과 측정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미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여성정책 평가모형 설정에 있어 정책과정으로서 정책형성, 집행, 평가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 여성정책의 성과만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총괄평가가 아닌 과정평가와 형성평가를 포함하여 평가의 성격이 모호해진 한계가 있다. 김양희 외(2001)의 평가는 1998년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 제1차여성정책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획추진의 중간 단계에서 점검하는 성격을 갖는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의 대상영역으로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정, 본 계획의 성격과 내용, 주관기구, 추진체계, 추진실적 등으로 나누어 제1차 계획을 총괄평가하고 있다. 김재인·조연숙(2002)은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기간동안의 여성정책을 정책영역별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방법으로는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를 병행함으로써 평가를 객관화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평가지표 설정에 의한 평가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의 점검의 일환으로 조우철외(2004)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점검지표에 의하여 평가하고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점검의 틀로서 정책과정을 정책형성, 정책집행, 성과, 성인지관점으로 나누고 각각의 점검지표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평가하고 있다. 정책형성에는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시행계획의 적정성을, 정책집행에는 시행계획의 진전도와 추진실적의 구체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책의 성과는 달성도와 성인지적 관점의 반영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는 여성부가 의뢰한 평가로 국가 여성정책 수립 및 추진 주체로서 정책개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의경(2007)은 참여정부(2003~2007)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정치학적 관점에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내세운 새천년민주당의 여성관련 공약을 분석하고, 집권이후 그 이행 정도가 어떠한지를 평가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평가를 통해서 매니페스토, 여권투표(feminist vote)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민주시민교육, 제도적 보완을 위해 향후 다뤄져야 할 여성정책이 무엇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개인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대선공약과 실제 정책의 성과를 연계하여 그 실적을 평가하고 향후의 여성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평가지표나 평가틀에 의한 평가라기보다는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해 의미부여 하는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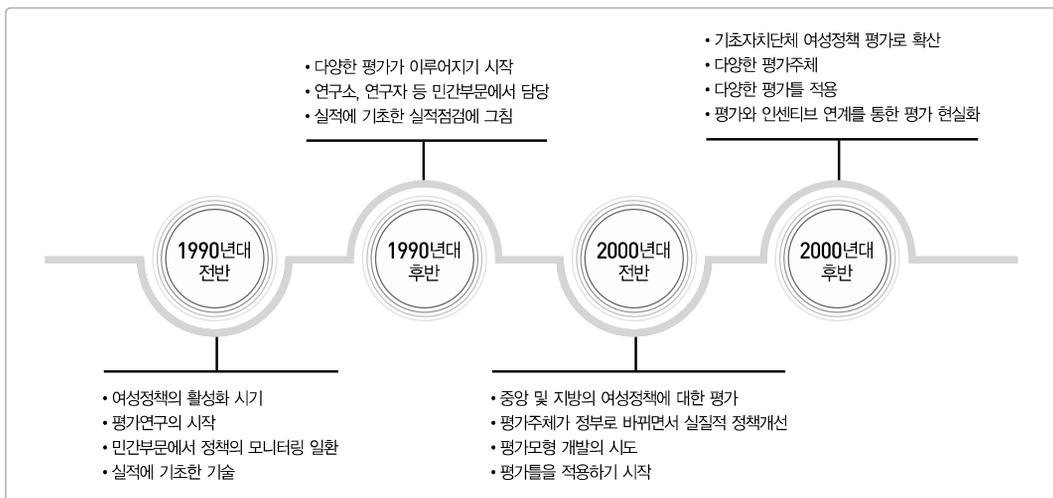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2002)은 16개 시·도의 여성정책을 평가함으로써 그동안 중앙정부의 여성정책에 한정하여 평가해 온 평가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평가대상 영역을 추진 기반으로 여성관련 예산과 여성발전기금운영,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위상과 역량, 정책과정에서의 여성참여 등으로 표준화함으로써 평가를 통한 실적비교를 가능케 하였다. 평가방법으로

양적평가와 질적 평가를 병행하였고, 평가기준으로서 사업내용의 적합성, 사업대상의 적합성, 사업방법 및 접근성 등을 정성지표에 의해 평가함으로써 평가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경기도(2002)는 1998~2002년 기간 동안 자체 수립한 경기도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이후의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평가대상영역으로 기관역량과 여성의 정책과정 참여, 인적자원개발 및 지원, 여성취업증대 및 고용, 여성사회참여 확대, 여성인권, 여성보건 및 복지증진, 농어촌여성의 지위 및 삶의 질 향상, 성차별 의식개선 및 평등문화 정착 등 영역별 평가를 실적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해 평가함으로써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고 있다.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해 중앙정부와의 정책연계성,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절성, 연속성, 효과성 등 평가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체계를 갖추고자 하였다. 이후 전라북도(2003)도 자체수립한 도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앞의 경기도 평가 틀을 수정·보완하여 평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2007년부터 31개 시·군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적용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 지표의 보완 및 점검작업을 지속하고 있다(이은아 외, 2007; 2008).

강원도(2003)는 2003년부터 18개 시군의 여성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여 2005년까지 시행하였다. 평가대상 기간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1년 기간동안의 여성정책 추진 실적이며 평가분야는 4대 분야—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여성복지증진, 남녀평등촉진, 여성정책주류화—의 9개 시책이다. 평가지표는 정량평가와 전문가 정성평가를 병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25개 자치구에 대해 여성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5회째 지속해 오고 있다. 평가대상 영역은 서울시정 4개년 계획 및 각 자치



〈그림 III-1〉 여성정책 평가의 전개과정

구 여성정책 대상범위를 포괄한다. 평가는 실적자료에 대한 정량평가와 사업내용에 대한 전문가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활용함으로써 정량평가로 오는 평가의 한계를 보완코자 하였다.

## 2. 여성정책평가 사례

1990년대 이후 여성정책이 확대되면서 여성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여 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정책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왔다. 실제로 2000년대에 들어서 여성정책의 성과가 부분적으로 가시화되면서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도 다양한 주체에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2000년대를 전후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여성정책의 평가는 평가주체를 중심으로 분류해 볼 때, 중앙정부차원, 지방정부차원, 시민단체 차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정책 평가는 행정안전부(이전 행정자치부)에 의한 합동평가와 여성부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점검으로 분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의한 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한 법적근거에 기반하며, ‘보건복지·여성’ 부분에 대한 평가지표가 여타 국가주요시책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여성정책기본계획 점검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지방정부 차원의 여성정책 평가는 2000년대 이후 특정시기 동안의 여성정책 평가와 여성발전계획 점검을 위해 지역별로 실시되었다. 서울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를 비롯해서, 경기

표 III-1 여성정책평가 현황

구 분	평가 및 점검 주체	대상정책	평가년도
중 앙 정 부 차 원	행 정 자 치 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여성복지 부문, 여성부문)	2001합동평가 이후 매년
	행정자치부/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종합평가	1999 격년제로
	여 성 부	제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 점검	2002
		제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점검	2004
지 방 정 부 차 원	서 울 시	자치구여성정책평가(25개구)	2004년 이후 매년
	경 기 도	1998~2001년(민선2기)여성정책 평가	2002
	전 라 북 도	1998~2001년(민선2기)여성정책 평가	2002
	강 원 도	2002년 강원도 여성정책 평가 도내 18개 시군	2001~2005
시 민 단 체 차 원	한 국 여 성 단 체 연 합	16개 광역시도 2001 여성정책 평가	2002

도와 전라도의 민선2기 여성정책 평가가 이루어졌고, 강원도는 관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여성정책 평가를 실시했다. 또한 경기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에서 여성발전 계획에 대한 중간점검이 이루어졌다. 또한 여성단체 차원의 여성정책 평가는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의한 16개 광역시도의 여성정책 평가 사례를 분석하였다.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중앙정부 차원의 여성정책평가

### (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평가는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 주요시책에 대하여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매년 실시하는 평가이다. 1999년 시범평가, 2000년에 종합평가를 거쳐, 2001년부터 매년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합동평가는 각 년도 별로 영역과 세부지표 구분에 있어 차이는 있으나, 대략 주요 정책과제 평가, 관리역량 평가, 고객만족도 평가 등으로 구분된다. 주요정책 분야에서 여성부문은 2001년의 경우, 보건복지·여성 부문에 포함되었다가, 2002년과 2003년은 여성부문으로 별도

표 III-2 | 2001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분야	부문	영역	비고
주요 정책 분야	행정혁신	편익행정, 규제개혁	
	보건복지·여성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복지, 가정복지, 건강증진, 식품안전 관리, 여성참여, 여성권익	2002~2003년은 여성부문, 2004년 이후 여성복지부문으로 구분함.
	산업경제	고용촉진, 지역산업진흥, 소비자보호·물가, 에너지 절약	
	환경관리	환경관리일반, 대기관리, 식음수관리, 수질관리, 폐기물관리, 자연환경보존	
	지역개발 확충	국토관리·교통, 도시계획·관리, 생활기반확충, 문화시설	
	안전관리	소방관리, 민방위, 재해관리, 재난관리	
추진 역량 분야	행정역량	조직·인사, 광역행정, 행정능률, 민간협력	
	재정관리	세입관리, 세출관리, 재정관리	
	정보화 촉진	정보화기반확충, 행정능률향상, 대민서비스 향상	

로 구분하여 평가했다. 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는 여성복지 부문으로 묶어 여성을 복지 부문과 통합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합동평가 여성복지 분야의 평가목적은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증진하고,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 자치단체가 추진한 다양한 지원 및 보호시책 등의 추진 성과를 확인하는데 있다.

합동평가에서 여성정책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평가 초반에는 평가시책내용이 ‘정부위원회 여성참여확대’ 등 여성공무원 인사정책과 여성폭력근절 등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2002년과 2003년에는 평가시책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 되어 자원봉사활성화, 남녀평등인사관리 및 여성공무원 능력개발, 모성보호제도 강화 등이 추가되었다. 2004년에는 ‘보육서비스 확대’와 ‘성인지 교육활성화’를 지표에 추가하였고, 2006년에는 ‘여성인력개발활성화’와 ‘공무원 성인지 교육훈련’, ‘취약계층 자립지원’이 2007년부터는 ‘성별영향평가 추진’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표 III-3 합동평가에서 여성정책관련 지표 연도별 변화추이

평가 연도	분 야	평가 시책	평가 지표
2001	보건복지 여성분야	정부위원회 여성참여확대	위원회 여성참여실적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성희롱예방교육성과, 여성폭력근절성과
2002	여 부 성 문	위원회 여성참여	여성참여율 확대성과
		여성자원봉사활성화	여성자원활동센터의 관리운영실적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시설 설치운영실적, 피해여성보호실적, 여성폭력 예방 및 교육홍보실적
		남녀평등인사관리	여성공무원 비율 여성공무원 우대실적(1)(2)(3)
		여성공무원 능력개발	능력개발기회제공실적(1)(2)(3)
		모성보호제도 강화	여성공무원 근무환경개선 실적
		성희롱예방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실적 성희롱예방지침 준수실적
2003	여 부 성 문	위원회 여성참여	여성참여실적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피해여성보호실적, 여성폭력예방 및 교육홍보실적,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실시 실적, 성희롱 예방지침 준수실적
		남녀평등인사관리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여성공무원 승진비율, 인사관련위원회 여성비율
		여성공무원 능력개발	장기교육 여성공무원 비율, 포상여성공무원 비율,
		모성보호제도강화	여성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실적

평가 년도	분 야	평가 시책	평가 지표
2004	여 복 분 성 지 야	남녀평등인사관리	관리직여성공무원 비율, 여성공무원승진비율, 인사관련위원회 여성 참여비율, 주요부서여성공무원비율, 장기교육여성공무원비율,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의 대체, 인력투입 및 직장보육시설설치
		위원회여성참여확대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비율
		보육서비스확대	보육업무 추진체계, 보육예산의 집행성과
		성인지적 교육활성화	양성평등교육과정이수율, 관리직공무원 및 남성공무원 이수율
		여성폭력근절 및 피해자보호	피해여성보호실적, 여성폭력예방 및 교육홍보 예산규모, 여성폭력에 방교육/홍보실적
2005	여 복 분 성 지 야	보육서비스 확대	보육예산의 집행성과
		남녀평등의 촉진	성별영향평가 실시율 및 여성발전 조례제정율
		공무원 성인지적 정책형성 교육훈련 활성화	양성평등 교육과정 이수율, 관리직 공무원 및 자체 프로그램 적정성
		여성폭력근절 및 피해자 보호	피해여성 보호실적, 여성폭력예방 및 교육홍보 예산규모+여성폭력에 방교육/홍보실적
2006	여 복 분 성 지 야	보육서비스 확대	보육업무추진체계확립, 보육예산의 집행성과, 보육시설 증대 및 평가 인증 참여율
		가정성폭력근절 및 피해자 보호	가정·성폭력 근절 장기계획 수립 및 지원예산 규모, 가정·성폭력 피해여성 지원실적, 가정·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실적, 가정·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운영 결과
		취약계층여성의 자립지원	취약계층여성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자체사업 및 예산
		양성평등정책 확산	양성평등사회 정착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여성직업훈련 이수율 및 취업률
		공무원 성인지적 정책형성 교육훈련	양성평등 교육과정 운영실적
2007	여 복 분 성 지 야	성별영향평가추진	성별영향평가실시비율, 성별영향평가 교육이수 비율,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여성인력개발활성화	시도지원직업훈련시설의 여성직업훈련 이수율, 시도지원 직업훈련시설의 여성직업훈련 취업율
		취약계층여성의 자립지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특수시책사업 예산
		가정 성폭력근절 및 피해자 보호	가정·성폭력 방지 특수시책예산증가율, 가정·성폭력피해상담실적,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실적,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지도감독 실적,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실적
		보육서비스 확대	보육예산의 집행성과, 보육업무 행정인력비율, 취약보육서비스 확대, 국공립 보육서비스 확충실적, 보육시설 평가인증 확대
		지방자치단체 성매매 방지 정책 추진실적평가	개별평가

출처 : 행정자치부(200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행정자치부 2003~2007 『국정시책 합동평가지표』 참고.

## (2)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종합평가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종합평가는 「여성이 행복한 고을 선정사업」을 통해 자치단체 간 건전한 선의의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여성정책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종합평가를 통해 여성정책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집행상황을 평가하여 우수 수범사례를 발굴 확산하여 향후 여성정책 방향설정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데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종합평가는 시·도 ‘자체평가’와 시·도 간 ‘교환평가’로 구분되는데, 시도 자체평가는 시도 여성정책·인사담당부서가 공동주관하고, 시·도 간 교환평가는 행자부(참여여성팀)가 주관한다. 평가시기는 ‘99년부터 격년제로 여성정책 종합평가 및 점검실시(평가 3회, 점검 3회)한다. 평가지표는 10개 분야와 23개 항목으로 여성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교육훈련, 포상, 복지시책,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여성사회참여 확대 추진, 기관장 관심도, 우수사례·특수시책, 차별 사례 등을 포함한다.

표 III-4 2005년도 평가지표(10개 분야 23개 항목)

평가분야	평가항목(지표)
1. 여성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① 승진, ② 보직, ③ 인사관련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④ 여성공무원 비율, ⑤ 중앙부처 및 시도전출 여성공무원 비율, ⑥ 읍면동에서 시군구 전입 여성공무원 비율
2. 공무원 교육훈련제도 운영	① 국내 장기교육과정 여성공무원 참여, ② 국외 장단기 훈련 여성공무원 참여
3. 공무원 포상	① 공무원 포상
4. 공무원 복지시책 추진	① 직장보육시설 설치, ② 육아 휴직 대체인력 활용, ③ 출산 휴가 대체인력 활용
5. 기관장 관심도	① 여성정책 담당 조직 조정, ② 부단체장, 본청 실국과장 및 소속기관장 여성임용, ③ 여성공무원 고충상담 창구 운영, ④ 여성정책 추진 의지
6. 여성공무원 능력발전 지원	① 여성공무원 자기능력개발 지원
7.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①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8. 여성보호 및 사회참여 확대 추진	① 여성사회교육, ② 보육정책 추진
9. 기타	① 여성관련 정보서비스, ② 양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③ 기타 수범사례
10. 구체적 차별 사례	①구체적 차별 사례

출처 : 행정자치부(2005),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종합평가를 통한 05여성이 행복한 고을 선정사업 세부시행계획』

## (3) 여성정책기본계획 점검

정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우리사회 전반의 여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방향과 그 내용

을 담은 종합적 국가 계획이다.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여성정책의 기본 방향뿐만 아니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정책목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범정부 차원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1차(1998~2002), 2차(2003~2007), 3차(2008~2012)에 걸쳐 수립되었으며, 정책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I-5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내용

구 분	구 성	정 책 과 제	세 부 과 제
제1차 (1998~ 2002)	6대 기본전략, 20대 정책과제 144개 세부과제	1.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사회전반의 성차별적 법·제도 및 의식의 개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2. 여성고용의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고용기회균등기반의 확립, 여성고용의 촉진, 직장-가정양립지원체제 확립, 여성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3. 여성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	남녀평등교육을 위한 여건조성, 여성전문인력의 적극적 양성, 여성의 평생교육지원
		4. 다양한 여성·가정복지 서비스의 확충	여성의 건강증진 및 성비율균형해소, 보육사업의 확충 및 내실화, 여성농어업인의 부담완화와 권익신장,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 고령화시대의 여성복지 증진,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
		5.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여성의 문화활동활성화, 여성자원봉사활동 등 시민운동지원, 여성단체활동지원
		6.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증대	여성의 국제협력강화, 통일에의 기여 및 내실화
제2차 (2003~ 2007)	10대 핵심 정책과제, 115개 세부 정책과제	1. 정책에 양성평등관점 통합	여성정책추진기구의 기능강화, 양성평등적 예산수립의 여건조성, 정책의 성별분석을 위한 기반조성
		2.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제고	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정부내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40% 달성, 기업의 여성관리직 진출을 위한 정책 등
		3.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여성과학기술인력육성,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 여성창업활성화 및 여성기업경쟁력제고, 여성정보화 촉진 등
		4.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 활동참여제고	고용상 기회균등과 남녀차별 개선, 모성보호 및 보육서비스 강화를 통한 직장가정생활의 양립지원 등
		5. 사회·문화분야 여성참여 확대	여성단체지원 및 협력강화,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여성의 문화예술활동참여확대 등
		6. 평화·통일·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확대	통일대비 여성역량강화 및 참여확대, 평화·환경분야에서의 여성역할강화, 여성국제교류 및 협력활성화 등
		7.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	여성건강증진대책 강화, 여성의 자활능력제고와 사회보장권 확대, 여성노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등
		8.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성매매 방지 대책의 실효성 제고, 가정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추진, 남녀차별 피해의 예방과 구제 강화 등

구 분	구 성	정책 과제	세부과제
제3차 (2008~ 2012)	5대 핵심 정책과제	1. 국가 및 사회운영에 주도적 참여	국가정책의 성주류화, 통합적 여성정책추진, 의사결정에 참여확대
		2. 여성의 복지 및 인권강화	여성의 건강 및 복지 강화, 성폭력·가정폭력방지 실효성 제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내실화
		3.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여성일자리 확대, 여성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여성근로자 차별해소 및 보호
		4. 돌봄의 사회적 분담	보육 및 교육서비스 강화,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일-가정 양립
		5. 사회통합과 평등문화 정착	평등문화 확산, 다양성 존중과 사회적 통합, 여성교류협력 강화

여성정책 기본계획 점검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현되고 있는 여성정책을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여성

표 III-6 제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평가기준

평가기준	기술평가지침
①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시책은 법·제도의 근거법령, 소요예산, 시책목표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시책의 실현가능성이 높으며 정책으로 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li> <li>- 법·제도 등의 근거법령, 예산이나 인력 등 재원의 활용계획, 시책과제의 목표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설정하고 있는가를 통해 과제설정의 실현가능성을 기술·평가</li> </ul>
②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세부시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사업수단을 활용하고 있는가</li> <li>- 해당 세부시책의 목표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수단인가, 간접적이거나 혹은 단지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수단인가</li> </ul>
③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책과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과 잘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가</li> <li>-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각 시책과제는 그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잘 추진되고 있는가</li> </ul>
④ 목표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시책사업들은 무엇을 얼마만큼 수행하였는가</li> <li>- 이를 위해서 각 시책과제의 추진실적을 기술</li> <li>- 평가를 위해서 계획에 대비하여 그 계획(목표)을 달성하고 있는가의 목표달성도 평가</li> <li>-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산출한 결과는 보조자료로 활용하고 있는가</li> </ul>
⑤ 진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시책은 전년도 시책사업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의 수행에 있어 발전을 보이고 있는가</li> <li>- 각 단위 시책이 해를 거듭할수록 질적·양적으로 향상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매해 반복적·일회성 사업으로 그치고 있는가</li> </ul>
⑥ 남녀평등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시책과제의 수행결과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평등성 증진에 기여하였는가</li> </ul>

출처 : 김재인·조연숙 (2002), 『여성정책 수행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현재까지 제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제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여성정책 기본계획 점검은 국무조정실(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부(여성가족부)가 주체가 되어 서면평가 및 현지평가를 병행하여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9개 도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김재인 외(2002)연구에서는 제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제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평가기준의 경우, 구체성, 적합성, 연계성, 목표달성도, 진전도, 남녀평등 기여도 등 6가지 기준을 통해 여성정책의 기반, 사업절차 및 실적 등을 평가한다.

## 2) 지방정부 차원의 여성정책 평가

### (1) 경기도 여성정책 평가

경기도는 민선2기(1998~2001)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는데, 평가방법은 여성정책 실적자료와 통계자료의 분석, 전문가 회의를 통한 평가지표 개발 및 확정, 공무원에 대한 조사, 주민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경기도 여성정책 평가영역은 기관 역량평가,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경기도민의 여성정책에 대한 수요자 평가 등으로 구성하였다.

기관역량평가의 경우 내적역량과 외적역량으로 세분화 하였는데, 내적역량에는 법·제도의 정비, 인력, 자원, 내부 의사전달체계가 포함되고, 외적역량에는 외부의사전달체계, 정보화역량, 국제적 협력관계가 해당된다. 정책영역 평가의 경우 정책과정 평가와 정책구조 및 실적

표 Ⅲ-7 평가항목 및 지표

구분	평가항목	지표	척도
기관 역량 평가	내적역량	법·제도의 정비	- 법·제도의 정비실적
		인력	- 인력규모 및 적절성, 인력의 전문성
		자원	- 예산규모 및 적절성, 대응성,영역별 예산비중 -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수, 사업실적, 사업내용
		내부 의사전달 체계	- 부서간 협조여부 및 협조정도
	외적역량	외부 의사전달 체계	- 상·하 조직간 협조 여부 및 협조 정도, 중앙정부 기관과의 연계
		정보화역량	- 여성관련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실적 - 정보의 연계망구축실적 - 여성인적자료의 정비
		국제적 협력관계	- 국제화 협력증진 실적 -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실적 - 교육강화실적

구 분	평가항목	지 표	척 도
정책 과정	정책형성	정책목표의 대응성	- 환경과의 대응성에 대한 인식 - 경기도 여성의 특성반영정도에 대한 인식
		정책목표의 연계성	- 중앙정부여성정책과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 - 경기도 중장기여성발전계획과의 연계성인식
	정책집행	여론수렴	- 계획수립시 여론수렴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
		예산집행의 효율성	- 자원의 효율적 집행에 대한 인식
		사업에 대한 홍보	- 여성정책의 홍보정도에 대한 인식
		정책수행여건	- 여성정책의 수행여건이 좋은 이유 - 여성정책의 수행여건이 좋지않은 이유
	평가 및 향후과제	평가: 남녀평등, 복지향상, 경제력 향상/내용별 평가/수혜자 범위	- 기여한 사업/세부내용에 대한 평가/수혜자범위 에 대한 인식
		향후과제 : 현재·향후 도의 역할/ 부수효과/부문별 과제	- 평가, 인식, 도와 시·군과의 관계/부수효과/향후 부문별 과제
	정책 구조 및 실적	사업추진 실적	해당여성정책 사업실적 기술·설명·연도별 실적비교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경기여성발전 중장기 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 같은 수준의 사업 혹은 프로그램 상호간의 연계성
수단의 적절성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한 시책 혹은 세부사업의 적절성·구체성	
사업의 연속성		여성정책관련 사업 혹은 프로그램이 지속적인가 프로그램 대상과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가 지속적이지 않고 종결된 경우 여성정책 목표달성 등 합리적 근거와 기준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정책의 효과성		당초 설정한 정책의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해당정책으로 인한 효과 혹은 영향은 무엇인지 예상되는 효과와 당해 정책의 한계는 무엇인지	

출처 : 김재인 외, 2002 『경기도여성정책평가 및 정책과제개발연구』, 경기도

평가로 평가 항목을 나누었는데, 정책과정평가는 전문가 및 여성정책 담당 공무원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였고, 정책구조 및 실적 평가는 사업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시했다.

## (2) 전라북도 여성정책 평가항목 및 지표

전라북도는 1997년 12월 「전북여성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고 2001년 2월 「전북여성정책 3개년 계획 2000-2002」로 변경하여 추진하였다. 전라북도의 여성정책은 민선2기 여성정책이 계획되고 이행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전라북도의 여성정책이 실제로 전라북도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했는지를 점검·평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전라북도 여성정책과 관련한 평가는 자체평가의 성격으로써 전라북도가 추진한 여성정책 업무를 스스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향후 발전방향으로 모색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실시되었다(김양희 외, 2003;21). 전라북도 여성정책 평가 대상 시기는 1998~2001(민선 2기)로서 기관역량평가, 정책영역별 평가, 만족도 평가로 구성한다. 기관역량평가의 평가항목은 ‘집행기관의 능력’으로, 이의 하위 지표로 조직과 인력의 적절성, 재정의 적절성, 법·제도의 정비 등을 포함한다. 정책영역별 평가는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등 3개의 정책과정 항목으로 구분하고, 중앙과의 연계성 및 지역적 특성반영, 목표의 구체성, 수단의 적절성, 목표달성도, 정책의 효과성(남녀평등기여도)을 세부지표로 구성한다.

표 Ⅲ-8 평가항목 및 지표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척 도
기관 역량 평가	집행기관의 능력	조직과 인력의 적절성	인력의 규모, 인력의 전문성, 평가구조 존재여부
		재정의 적절성	예산의 규모, 여성발전기금
		법·제도의 정비	법·제도의 정비실적
정책 영역별 평가	정책형성	중앙과의 연계성 및 지역적 특성반영	정책목표가 상위목표와 연계되고 있는가 정책목표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목표의 구체성	목표설정이 구체적인가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조례, 법, 예산 등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
	정책집행	수단의 적절성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예산·인력·프로그램·시설을 갖추었는가
	만족도 평가	정책성과	목표의 달성도 (진전도)
정책의 효과성 (남녀평등기여도)			정책수혜자의 만족도

출처 : 김재인 외, 2002, 『전라북도 여성정책 평가 및 발전방향탐색을 위한 연구』 전라북도 여성발전연구원

### (3) 강원도 시·군 여성정책 종합평가

강원도 시·군 여성정책평가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평등문화 조성 등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전 도역에 확산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즉 여성정책추진상황에 대한 종합평가를 정례화하여 우수시군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활성화가 필요한 시군은 참여촉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정책이 정착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평가의 주요 목적이 있다.

강원도 여성정책 평가는 ‘시·군 자체평가’와 ‘합동교환평가’로 구분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실시하였다. 평가절차는 3단계로 구성되는데, 1차평가는 시·군 자체평가로 시·군별 여성정책 평가 채점표에 의한 심사준비 및 자체심사로 이루어지며 2차평가는 도와 시·군의 합동교환평가, 3차 평가는 2차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 시·군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의 현지 방문평가로 이루어졌다.

강원도 여성정책 평가 분야는 인사와 시책, 전문가 평가로 구분되며, 주요 평가지표에는 여성공무원 인사제도운영, 공무원 복지시책 추진, 기관장의 관심도, 여성공무원 자기능력 개발,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여성보호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주류화 추진시책 등을 주요 항목으로 구성한다.

표 Ⅲ-9 강원도 여성정책 2005년 평가지표

분 야	부 분	평 가 항 목
인 사	여성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① 승진, ② 보직, ③ 인사관련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④ 여성공무원 승진우대 등 시책
	공무원 교육훈련 및 포상	① 장기교육과정 여성공무원 참여, ② 외국 장단기 훈련 여성공무원 참여, ③ 공무원 포상
	공무원 복지시책	①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② 출산휴가 대체인력 활용
	기관장의 관심도	① 여성정책담당기구, ② 본청 실과장 및 소속기관장 여성임용, ③ 여성공무원 고충상담 창구운영, ④ 여성정책 협조지원
	여성공무원 자기능력 개발	-
시 책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
	여성보호 및 사회참여 확대	① 여성사회교육, ② 여성보호 및 자립지원, ③ 보육사업 추진
	여성주류화 지원시책	① 여성정보서비스, ② 양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③ 성주류화 정착, ④ 강원여성의 열선양
전 문 가 평 가	전문가 평가	① 시책의 차별성, 기여도, 참여도, ② 기관장의 의지 및 관심도, ③ 기타지역·재정적 여건에 따른 노력, ④ 성취도 등

출처 : 강원도 내부자료, 「2005년 여성정책 평가표」

### 3) 여성단체 차원의 여성정책 평가

#### (1) 16개 광역시도 2001 여성정책 평가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1 여성정책 평가는 개별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적극적인 여성정책 개선을 독려하고 각 지자체의 여성정책 수립과 이행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평가의 주체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발전센터이고, 수행단체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인천여성민우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포항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천안여성의 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충북여성민우회, 제주여민회 등이 참여했다. 평가 시기는 2001년 7월부터 2002년 5월까지로서 여성정책전담기구, 여성관련예산 및 여성발전기금, 성주류화를 위한 주요정책, 주요사업에 대한 양적평가를 포함한다.

Ⅲ 표 Ⅲ-10 Ⅲ 평가 항목 및 지표(5개 항목)

항 목	세부평가지표
1. 여성관련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예산 중 여성관련 예산비율 (※여성관련예산=근로여성관련예산+ 농촌여성관련예산+ 여성정책전담기구예산+ 여성복지관련예산+ 보육관련예산 등+ 적극적 이행조치 예산)</li> <li>- 여성관련 예산 중 인건비,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li> <li>- 여성관련 예산 중 자체사업비/국고보조사업비율</li> </ul>
2. 여성발전기금 운영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발전기금의 조성목표액 및 실제 조성액</li> <li>- 기금의 사용목적 부합여부</li> <li>- 기금의 운영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문제점 등</li> </ul>
3. 여성정책전담기구 (각 지자체 여성관련 기구, 조직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구성 : 전체조직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역할</li> <li>- 인력규모 및 담당 공무원의 직급</li> <li>- 역할: 조정과 집행기능</li> <li>-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위상 조정여부 및 결과</li> <li>- 여성정책 전문가의 참여여부</li> </ul>
4.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 직급별 남녀공무원수, 여성공무원의 소속 부서</li> <li>-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율 목표와 2001년 달성 현황</li> <li>- 공무원 성인지 교육체계 : 공무원 교육원에 성인지 교육과정 마련 여부 및 교육실적</li> </ul>
5.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수요충족율, 여성관련조례, 취업알선 및 여성직업개발사업, 남녀평등 의식고양사업, 여성통계 자료집과 여성백서, 여성관련 연구조사 용역, 7월 여성주간행사의 주제와 예산, 아가씨 선발 대회의 종류와 지원예산, 2001년 종합시책 홍보물 및 시·도 종합 계획내 여성관련정책, 지방의제 21내 여성부문</li> </ul>

### 3. 여성정책 평가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 1) 여성정책 평가 주체와 평가 범주

여성정책의 평가주체를 살펴보면 중앙정부 차원, 지방정부 차원 또 민간시민단체 차원의 평가로 분류될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평가 중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합동평가의 경우, '여성정책' 평가는 국가 주요시책의 세부 영역 중에 일부분으로서 전체 평가지표상에서 매우 미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종합평가에서는 합동평가에 비해 다양한 지표를 포함하고 있지만, 내용상에서 여성공무원 인사제도, 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공무원 포상, 공무원 복지시책 등 대체로 공무원 역량강화와 인사제도에 제한된 측면이 있다.

이에 비해 여성정책기본계획 점검은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포함되지만, 현재까지는 점검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방정부차원의 평가는 서울시, 경기도, 전라북도, 강원도에서 여성정책기반마련을 위한 기관역량과 정책평가에 대한 일정한 지표를 통해 정책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 경기도, 충청도, 인천광역시에서 해당 지역 여성정책계획에 대해 중간점검을 실시했다. 시민단체차원 평가로는 한국여성단체 연합에서 16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정책평가를 들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평가인 합동평가에서 여성복지 분야의 평가 목적은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증진하고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 자치단체가 추진한 다양한 지원 및 보호시책 등의 추진 성과를 확인하는데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종합평가는 여성정책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정책 추진 실태 파악 및 정책집행 상황 평가를 통해 우수 수범 사례를 발굴 확산하고 향후 여성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여성정책기본계획 평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현되고 있는 여성정책을 평가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여성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점검의 목적이 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정책평가 목적은 중앙정부 차원의 여성정책 계획을 토대로 지역수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평가를 실시한다는 데 차별성이 있다. 강원도의 경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평등문화 조성 등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전 도역에 확산하는데 목표를 두었고, 경기도,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여성정책 실현과 확산을 목표로 특정시기인 민선 2기(1998~2001)에 중점을 두고 여성정책 평가를 실시한다.

요컨대,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가 다양한 주체와 다양한 내용으로 실시되어 왔지만, 평가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 지점은 효과적 여성정책 실천을 통한 성평등과 성주류화 실현 일 것이다. 그렇기에 여성정책 평가의 목표는 평가주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과정에 대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정책이 성평등 확산과 성주류화를 지향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정책의 범주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괄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현재의 여성정책 평가는 평가목표의 제시와 평가 범주의 측면에서 여성정책의 효과적 실현을 위한 폭넓은 정책평가를 담아내는데는 한계점이 있다. 합동평가와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종합평가는 여성정책에서도 여성공무원의 인사제도와 일부여성복지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어 여성정책의 전반적 상황을 평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여성정책기본계획 평가의 경우는 포괄적인 여성정책과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만, 아직까지는 체계적인 지표 없이 점검 수준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차원과 시민단체차원의 여성정책의 평가 역시 평가체계가 안정적이지 않아 상황별, 특정시기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전반적인 여성정책 평가목표에 도달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 2) 여성정책 평가 유형 및 평가지표

여성정책평가의 평가 형태는 크게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와 ‘여성정책계획에 대한 중간 점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는 기 수행된 정책의 추진과정과 사업실적 및 성과 등에 대해 일정한 지표를 통해 측정하는 한편, 여성정책계획 중간점검의 경우 평가시점상 계획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 실시되는 과정 평가의 성격을 띤다. 중간점검은 체계화된 정책평가의 틀을 적용하기 보다는, 내용상의 보완방향을 제시하는데 근거가 될 지표를 선택하여 점검한다. 따라서 여성정책평가에서는 계획에 대한 목표달성도, 사업추진 실적과 성과, 사업수혜자 만족도 등이 포함되는 비교적 광범위한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있으며, 중간점검은 사업별 이행여부, 향후계획 검토의견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한다.

기존의 여성정책 평가사례를 유형별로 구분해 볼 때,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지표를 통한 평가보다는 대체로 점검수준의 평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앙정부차원의 여성정책기본계획점검을 비롯해서, 지방정부 차원의 경우, 경기도의 여성발전 5개년 계획(2004~2008)에 대한 중간점검,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2000~2004) 평가, 인천여성정책 5개년 계획(2003~2007), 충청북도 여성발전 3개년 계획(2002~2004)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일정한 평가지표를 활용한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는 중앙정부차원의 평가인 행정안전부(이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종합평가가 실시

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서울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와 강원도, 경기도, 전라북도의 여성정책 평가를 들 수 있다. 앞에서 언급된 여성정책 평가사례에서 실제로 평가 항목의 순위는 다양하여 일관되게 평가항목 및 지표를 비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성 정책부문의 큰 틀에서 ‘여성정책의 기반조성’과 ‘정책평가’항목을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표 III-11 평가주체와 평가항목

영역	평가주체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합동평가 ('07)	종합평가 ('05)	경기도 ('02)	전라북도 ('02)	강원도 ('05)	여성단체 연합('02)
기반 조성	예산			○	○		○
	법·제도				○		
	기관장		○			○	
	조직/인력			○	○		○
	대표성		○			○	○
	성주류화	성별영향 평가					○
	기타			정보화, 국제적협력, 내외부 의사전달 체계		여성공무원 능력개발	공무원 성인지교육
정책 평가	인력개발	○					
	보육서비스	○	○				
	인권/복지	○					
	사회참여		○			○	
	지역특수성				○	○	
	기타			정책형성 정책집행 평가 및 향후 과제 정책구조 및 실적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여성정책 기반조성의 경우, 예산, 법·제도, 기관장, 조직/인력, 대표성, 성주류화, 그 외의 항목은 기타에 포함하였다. 중앙정부 여성정책 평가의 경우, 예산과 법·제도 영역에 해당되는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 반면, 지방정부의 경우, 경기도와 전라북도 여성정책 평가에 예산 부문이 포함되었고 전라북도는 법·제도도 해당된다. 여성단체연합의 여성정책 평가에서는 순수 여성관련 예산과 여성발전기금을 평가내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다.

‘여성의 정치과정’에서 ‘대표성’ 영역은 합동평가의 경우, 위원회 여성참여, 여성공무원 인사 관리 등 2004년까지 별도의 항목으로 비중 있게 다룬 반면, 2007년 지표에는 성주류화에 성별영향평가 실시와 함께 ‘정부위원회 여성참여확대’만 추가되었다. 한편, 종합평가, 강원도 여성정책, 여성단체연합 평가에서는 여전히 비중을 두고 있다. 종합평가에서 성별영향평가는 2007년부터 새로이 추가되어 중점 평가되고 있다. 또한 여성정책 기반조성에서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경기도의 경우, 정보화, 국제적 협력, 내·외부 의사전달체계 항목을 들 수 있다.

정책평가 영역은 각 평가주체별로 공통의 항목이 포함되는 인력개발, 보육서비스, 인권/복지, 사회참여, 지역특수성 반영, 기타로 구분하였다. 인권/복지 영역의 경우, 합동평가에서는 취약계층자립지원, 성폭력 근절, 성매매방지 등이 해당되며, 여타 평가의 경우 이 항목을 다루지 않았다. 또한 지역특수성 반영과 관련하여 전라북도는 ‘중앙과의 연계성’과 ‘지역적 특성’을, 강원도는 ‘강원여성의 열 선양’을 지표에 포함하였다.

우리사회에서의 지역 여성정책은 중앙의 여성정책 추진과 맥을 같이하면서도 지방자치의 틀 속에서 전개되어왔다. 신경아(2006)는 “한국사회에서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은 만큼 그 속도가 숨가쁜 것이었다면 지방자치단체 내 여성정책의 실행은 훨씬 더 많은 과제를 가진 힘든 작업이며, 여성정책 역시 지역사회 정치의 틀을 재조직해가는 과정에서 개념과 방법론 자체를 재구성해 가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은아(2007)는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여성정책 발전정도에 비추어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이며 특히 기관장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지역 여성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평가를 통해 지역내 관심을 환기시키고 여성정책의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평가를 위한 평가모형연구와 지표개발은 부족한 상황이다.

여성정책이 중앙정부차원에서 또 기초자치단체 차원으로 확산되면서, 정책에 대한 평가도 다양한 주체에 의해 다각도로 실시되고 있음에도 여성정책 평가는 <표 III-11> 평가주체와 평가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평가주체별로 명확한 차이점은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의 경우, 평가영역이 총체적이지 못하며, 기반조성과 정책평가 영역 중에서 부분적으로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있고 또한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의 내용도 희박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여성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책환경의 변화와 지역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 IV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성과와 한계



# IV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성과와 한계

## 1.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개요

### 1) 평가의 추진배경

서울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으로 실시하는 16개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서울시는 「세계 일류 도시, 서울」이라는 목표 하에 시와 자치구가 상호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시정의 주요사업, 자치구의 적극적, 능동적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04).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사업의 목적은 자치구의 양성평등 정책을 촉진하고, 자치구별 특성을 고려한 여성정책 추진으로 여성정책의 효과성을 증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평가를 통해 우수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치구 양성평등 정책을 촉진하여 생활현장에서 여성이 피부로 느끼는 여성정책 추진 및 지역간 균형 있는 여성정책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여성발전기본법,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04).

자치구 지방재정법 제20조 제2항(보조금의 교부)은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8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①항에서는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치구·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주요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고 정하여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제도적 근거가 되고 있다.

이상을 요약해보면,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는 정책의 최종 고객이자 수혜자로서 서울시민의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고 여성의 지위 및 인권 향상을 위해서 25개 자치구 여성정책 수행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지역간 경쟁을 통한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 2)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체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자치구여성정책 평가'의 체계 및 전개과정을 평가요소<sup>8)</sup>별로 평가주체, 평가내용 및 대상, 평가지표, 평가시기와 횟수, 평가결과의 활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평가주체와 관련하여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첫 해인 2004년도에는 서울시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평가자료를 수합하여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작성하여 평가운명을 이원화하였다. 2005년부터는 현재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구\_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여성)에 위탁하여 추진토록 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평가내용 및 대상과 관련하여 평가내용으로 여성정책의 분야는 여성정책추진기반 조성, 양성평등문화 조성, 여성경제활동지원, 여성사회참여 지원, 소외여성복지향상, 보육서비스의 증진, 여성건강증진, 가족복지, 수범사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4년과 2005년은 10개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한 반면, 2006년도에는 여성정책기반조성,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조성, 여성경제활동 지원, 여성사회참여지원, 여성복지향상, 수범사례의 6개 분야로 대폭 축소하고, 자치구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여성정책의 차별화를 위하여 공통영역과 선택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한편, 평가대상은 2004년을 제외하고 2005년부터 25개 전자치구가 참여하고 있어 참여율 100%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평가지표 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작성되었다. 평가체계는 평가부문, 평가분야(영역)→평가항목→평가지표→측정지표 등으로 구분하였다. 평가부문은 공통부문과 선택부문으로, 평가영역(분야)은 6개 내지 10개 영역으로 2004년과 2005년에는 여성정책 업무부서 사업이외의 여성건강증진, 가족복지, 신규사업, 특수사업 등으로 폭넓게 평가하였다. 이후 2006년부터는 평가영역을 정리하여 변별성이 낮거나 다른 평가와 중복되는 항목과 지표를

---

8) 정책평가모형의 구성요소에 대한 내용은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들 다양한 요소의 공통부문을 정리하여 라휘문(2008)은 평가목적, 평가주체, 평가내용, 평가대상, 평가지표, 평가시기와 횟수, 평가결과 활용, 유사제도와 연계 등을 주요요소로 보고 있다.

축소함으로써 5내지 6개영역으로 정리하였다. 평가항목 및 지표수와 관련하여 평가 첫해인 2004년 34개 항목 86개 지표였으나 2005년 평가에서는 여성정책의 특성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문가 내용평가의 평가지표가 여러 개 추가되어 평가항목은 27개로 줄었으나 평가지표는 102개로 전년도 평가지표 수의 약 15.7%가 증가하였다. 2006년에는 중앙부처 등 다른 정책평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일한 평가지표는 과감하게 삭제하고 공통영역이외의 선택영역을 정하게 함으로써 1개 자치구가 평가받는 평가지표의 수를 69개로 대폭 축소하여 평가업무 부담을 가능한 줄이고자 하였다.

넷째, 평가시기와 횟수로 평가는 연1회에 한하고 있다. 자치구 여성정책평가 대상기간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로 약 1년 동안 추진된 여성정책 실적자료를 수집하여 평가한다.

다섯째,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2004년도에는 86개 지표 모두 사업추진 실적을 계량화하여 점수화한 정량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그와 같은 정량적 평가방법이 과연 자치구 여성정책의 성과를 얼마나 의미있게 보여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각 평가분야별 전문가의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여 2005년도에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2006년도에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외에 사업의 최종 수혜자인 여성시민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정책(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의 성과가 무엇인가에 대해 만족도 점수를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여성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여섯째, 평가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인센티브의 규모는 시행 첫해와 이듬해인 2005년까지 10억이며 2004년 15개 자치구가, 2005년에는 11개 자치구가 인센티브를 수상하였다. 2006년에는 인센티브의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시상자치구는 10개구가 되었다. 2007년도 인센티브의 규모는 6억이었으며 시상자치구는 10개구이다. 이와 같은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사업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IV-1>와 같다.

## 2.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모형 설정을 위해서는 기존 평가체계가 갖는 한계와 문제점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이를 보완·개선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평가체계를 점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존 평가체계에 대한 평가를 ‘평가의 평가’ 혹은 ‘메타평

Ⅱ 표 IV-1 Ⅰ 서울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사업 요약(2004~2007)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평가주체(기관)	서울시·서울시정 개발연구원	재단법인 서울여성	재단법인 서울여성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평가대상 기간	2003. 11. 1 ~ 2004.10. 31	2004. 11. 1 ~ 2005. 10. 31	2005. 11. 1 ~ 2006. 10. 31	2006. 11. 1 ~ 2007. 7. 31
평 가 분 야	10개 분야 (전분야 공통)	10개 분야 (전분야 공통)	6개 분야 (공통과 선택구분)	5개분야 (공통과 선택구분)
	여성정책발전기반구축	여성정책추진기반조성	〈공통〉	〈공통〉
	양성평등시책추진	양성평등문화조성	여성정책기반조성	여성정책기반조성
	여성경제 활동지원	여성경제활동지원	수범사례	
	양성평등 인사관리	여성사회참여지원	〈선택〉	〈선택〉
	여성사회 참여지원	소외여성복지향상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조성	여성친화적문화 환경조성
	여성복지 향상	보육서비스 증진	여성경제활동지원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보육서비스	여성건강증진	여성사회참여지원	여성사회참여 확대
	아동안전복지	가족복지	여성가족복지향상	여성가족복지 향상
	가족복지	신규사업		
특수시책	특수사업			
평 가 항 목 및 지 표 수	34개 항목 86개 지표	27개 항목 102개 지표	34개 항목 69개 지표	48개 항목 68개 지표
평가자료 유형 및 평 가 방 법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인센티브 규모)	10억	10억	5억	6억
우 수 자 치 구	15개 자치구	11개 자치구	10개 자치구	10개 자치구

가'라고도 하며, 평가를 상위수준에서 재평가한다는 점에서 상위평가라고도 한다.

메타평가에 대한 이해는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그 내용범위를 달리하고 있으나 가장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메타평가의 개념은 '전체적인 평가체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존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의 구성요소에 따라 재평가하고자 한다. 평가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김재인·김성경(2000)은 여성정책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여성정책의 특수성과 평가목적의 명료화,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고려해야하고, 또 '무엇을 위한 평가'인지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평가의 요소로

여성정책의 방향, 집행과정, 성과와 영향력을 포함할 것을 주장한다. 이는 정책형성, 집행, 성과의 도출 등 정책과정에 따른 평가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양희외(2003)는 자치단체 평가내용으로 평가의 목적, 내용, 평가주체, 평가대상, 평가지표, 시기와 횟수, 결과의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라휘문(2004)은 여러 학자의 평가요소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고 공통적으로 6가지 요소를 도출하였다. 각 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Ⅱ 표 IV-2 Ⅱ 자치구 여성정책평가의 평가분석 틀

평가 내용	세부 항목
평가의 목적	- 궁극적으로 여성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고 있는가? - 얼마나 그와 같은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있는가?
평가의 주체	- 평가의 주체는 누구인가? - 평가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있는가?
평가의 내용과 대상	- 평가가 투입, 과정, 산출물 중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 평가대상이 누구인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한정하고 있는가? 성주류화, 모든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는가?
평가의 시기와 횟수	- 평가 시기는 언제인가? 시기가 일관성을 갖는가? - 평가결과가 다음 사업계획수립에 연계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평가방법과 평가지표	- 평가방법이 타당한가? - 평가지표가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평가결과의 활용	- 평가결과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위해 활용한 방법을 자치구 여성정책 담당자 심층설문을 통한 방법과 자치구 여성정책의 실적을 기술적(descriptive) 방법을 활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1) 평가의 목적

여성정책 평가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여성정책이 목표로 하는 바를 달성하였는가, 또 그와 같은 목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하였는가를 통해서 목표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시행해온 자치구여성정책 평가가 여성정책의 목표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여성정책의 6가지 영역에 대한 목표달성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대체로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여기에 대해서는 제5장

에서 기존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에 대한 검토 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함). 여성정책 담당자들이 평가한 여성정책의 목표달성에 대한 기여도는 5점 척도일 때, 3.87점으로 나타나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영역별로 추진역량강화 3.85점, 양성평등문화 확산 3.85점, 여성경제활동지원 3.39점, 여성사회참여지원 3.70점, 소외여성 및 일반여성 복지향상 3.67점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정책 추진역량강화와 관련하여 자치구 여성정책담당인력충족률, 여성정책 관련 예산 증감률, 조직의 독립성 확보, 불평등한 제도정비 등의 실적이 조금씩 높아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여성경제활동 활성화와 관련하여 관련 사업실적 및 취·창업 실적 증감, 여성의 지위향상과 관련하여 6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증대, 주요부서 여성배치 비율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증가, 양성평등의식 향상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이수자 비율의 증가, 일반시민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확산 등의 실적을 나타내었다. 또한 성주류화의 전략적 측면에서 자치구 정책부서와의 협력체계 구축, 성별영향평가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sup>9)</sup>

## 2) 평가의 주체와 참여자

첫째, 평가의 주체와 관련하여 2004년도 처음은 자치구 여성정책평가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해 추진되었고, 이후 2005년도와 2006년도 재단법인 서울여성에 의해 추진됨으로써 외부평가로 추진되었다. 외부평가로 추진될 경우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사업추진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평가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 및 자치구 여성정책 담당자와의 수차례에 걸친 면담과 논의과정을 거쳐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고, 평가가 매해 거듭됨에 따라 업무를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오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있다.

둘째, 평가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 시켰는가? 와 관련하여, 평가의 이해관계자는 서울시 뿐 아니라 각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담당자, 이 외에도 여성정책의 최종 고객으로 시민이나 단체 및 NGO, 정책 영역별 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계획의 수립부터, 평가지표의 설정, 평가실시의 일련의 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자가 참여하였는가를 살펴보면, 먼저 평가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서울시는 자치구 여성정책담당자로부터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필요성과 평가사업의 개선사항에 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친다. 다음 지표설정은 평가기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함으로써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자치구

9)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08)이 여성정책 기획세미나로 2008년 개최한 「평가를 통한 여성정책 업그레이드(Up-grade)」 중 '자치구 여성정책 및 기관의 평가사례를 통해 본 평가의 성과와 과제'를 참조

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평가실시 과정에서는 평가기관의 연구진이 주요 참여자가 되며, 이외에 여성정책 영역별로 전문가가 참여한다. 시민은 평가실시 단계에서 고객 만족도 평가를 위한 평가자로 참여한다. 이렇게 평가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고 있음에도 평가계획의 설계와 지표설정 과정에서 자치구 담당자의 직접적 참여 기회가 제한됨으로써 평가의 민주성과 대응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 3) 평가의 내용과 대상

먼저 평가의 내용이 무엇인가와 관련하여, 평가가 투입, 과정, 산출물 중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투입중심의 평가는 주로 경제성에 초점을 두는 반면 산출중심의 평가는 실적이나 목표달성도에 초점을 둔다. 자치구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는 경제성 보다는 실적이나 정책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목표달성도 평가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자치구 평가는 산출지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1차 산출물 중심으로 정책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다음은 평가대상이 누구인가와 관련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한정하고 있는가, 또 성주류화, 모든 정책의 성인지적 정책을 평가에 포함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현재 자치구 여성정책평가의 담당업무는 주로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평가대상 정책이 여성정책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치중되어 있는<sup>10)</sup> 반면,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범위가 아닌 일반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반영여부는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1995년 세계북경여성대회에서 제안된 성 주류화를 위한 전략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평가시기와 횟수

먼저 평가횟수는 매해 연 1회 실시함으로써 연간계획의 사후 평가이다. 다음, 평가의 시기와 관련하여 매해 일정치 않은 시기에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 당해연도 10월 31일을 평가대상 시기로 하여 평가는 당해 연도 말에

---

10) 2006년도 25개 자치구 여성정책 담당부서 시책을 요약한 결과, 여성정책 추진기반 조성 분야의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인사관리를 제외하고 양성평등문화확산, 여성경제활동지원, 여성사회참여 지원, 소외여성복지향상, 보육 등 전통적 여성 대상 정책의 범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조연숙 외, 2006 : 27-29).

이루어졌다. 한 해 사업을 거의 마무리 하는 시점에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후평가이나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2년간의 사업과 연계되어 있어 사업의 실적을 예산과 대비하여 평가하는데 큰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 시기는 평가결과가 다음 사업계획수립에 연계되고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평가결과를 차년도 여성정책 사업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와 잘 맞지 않음으로써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 5) 평가방법과 평가지표

먼저, 평가방법이 타당한가? 와 관련하여 자치구 여성정책평가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평가과정과 절차에 관한 것으로 2004년과 2005년도에는 여성정책의 전 영역에 걸쳐 평가하는 종합평가의 성격을 갖는다. 반면, 2006년도에는 평가영역을 공통영역과 선택영역으로 구분하고 공통영역은 모든 자치구에 적용하는 한편 선택영역은 4개의 영역-여성경제활동, 양성평등문화조성, 여성사회참여, 여성복지향상-가운데 한 개 영역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자치구의 특성과 역량에 따른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평가자료의 성격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실적자료에 대한 정량평가, 전문가의 사업내용에 대한 정성평가, 정책참여자의 시민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다.

둘째, 평가지표가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는가와 관련한 문제로 측정에 있어서 두 가지 갖추어야 할 요소는 타당성과 신뢰성이다. 자치구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우선, 정량적 지표일 때 평가는 어느 정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업건 수, 참여자 수, 각종 비율, 증감을 등은 셀 수 있는 단위를 가지며 이는 반복적으로 측정하여도 동일한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각 계량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아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의 비율이 약 70:30으로 정량지표의 비율이 약 2/3를 차지한다.

▣ 표 IV-3 ▣ 연도별 평가방법과 지표유형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평가방법		종합평가	종합평가	영역별 선택	영역별 선택
평가지표의 유형	정량지표	73.3%	77.5%	71.0%	62.3
	정성지표	26.7%	22.5%	29.0%	37.6

한편 정성지표는 다소 주관적인 측정방법이어서 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적 방법이기기는 하지만 신뢰성의 문제를 갖는다.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하여 객관성을 어느 정도 확보 할 수 있다.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신뢰성이 높다고 하여 타당성이 높은 것은 아니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측정지표가 타당성과 신뢰성을 모두 확보할 때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sup>11)</sup>

## 6)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가 활용되고 있는가? 와 관련하여, 평가활동 자체의 목적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수립의 방향을 수정하고 개선하는데 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자치구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가 사후평가로서 사업추진의 전 과정-사업목표의 설정, 추진과정, 사업의 성과 등 평가의 전 과정에서 일정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자치구 담당자들은 평가 결과에서 시사점을 발견하기보다 차년도 평가지표가 무엇이나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평가목표가 불분명하고 그에 따른 평가지표의 일관성 결여, 평가결과 환류시기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3.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한계

### 1) 평가목적의 달성에 대한 기준의 모호성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가 여성정책의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정책 평가의 성과에서 나타났듯이 지표의 절반 이상은 추진역량의 측면, 성 주류화의 전략적 측면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 여성정책 추진 결과 여성정책의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에 목표치가 없어 전년도에 대한 상대적인 증감율을 토대로 하고 있었다. 이는 평가의 방향성과 목적성이 불명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지표 또한 일관성을 결여함으로써 평가지표가 매년 바뀌어 피평가자들은 매년 평가지표의 변화에 따른 자료 작성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11)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지표의 적절성에 관해 자치구 담당자(25개 자치구 담당자 약 50명 대상으로 하여 약 30개의 설문지 회수됨)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결과 5점 척도일 때 각각 2.77과 3.76을 나타내었다.

## 2) 평가의 내용 및 대상

평가의 내용은 평가가 투입, 과정, 산출물 중에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주로 1차 산출지표가 많아 여성정책 추진의 성과 평가보다는 실적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과중심의 평가를 위해서는 1차 산출지표보다 더 나아가 2차 산출지표, 즉 결과지표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여성정책 추진의 궁극적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 되기도 할 것이다.

표 IV-4 연도별 평가지표의 유형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평가지표 수	86개(100.0%)	102개(100.0%)	69개(100.0)	68개(100.0%)
평가지표 유형				
○ 정량지표	63(73.3%)	79개(77.5%)	49(71.0%)	43(63.2%)
- 산출지표	25	58개	39개	24개
- 결과지표	38	21개	10개	19개
○ 정성지표	13(26.7%)	23개(22.5%)	20(29.0%)	25(36.8%)

## 3) 평가시기와 횟수

평가시기와 관련한 한계로는 평가시기가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평가대상 기간이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고 2년의 회계연도를 걸치고 있어 한 해 동안의 성과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현재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는 전년도 하반기부터 해당연도 중반기 이후까지로 인센티브 사업비를 연내에 지급한다는 일정 때문에 평가기간과 평가시기가 일정하지 못하다. 이는 피평가기관이 평가결과를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장애가 된다. 평가결과는 이미 차년도 사업계획을 마친 이후여서 평가결과를 적용하려면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평가시기가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4)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체계의 한계

현재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방법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객관적인 성과측정이 가능한 경우에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정책내용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전문가 내용평가로서 정성평가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최종 수혜자의 정책만족도를 위해서는 특정 여성정책 사업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 내용평가의 정성지표를 활용한 경우,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 평가지표 체계의 논리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평가지표체계로서 평가영역, 항목, 평가지표 등 일련의 체계성을 갖춰야 할 것이며, 특히 평가지표가 여성정책의 성과를 나타내는데 적정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타당성의 논리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 5)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환류를 촉진하기 위한 차년도 평가지표에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인센티브 지급방식에 대한 재고도 필요할 것이다.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행정적 목적 가운데 하나는 지역적 균형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미 몇몇 자치구는 경쟁자체를 포기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정 기간동안 평가결과의 축적을 토대로 하여 자치구의 여성정책 수준별 그룹화를 통해서 유사한 여건에 있는 자치구들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모든 자치구가 참여하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참고로, 한 해에 중복 수상 불가를 원칙으로 하여 총 4년에 걸쳐 4회 모두 수상한 자치구는 4개구, 3회는 9개 자치구, 2회는 13개구로 전체의 52%를 차지함). 한편, 1회로 수상한 자치구는 12개로 전체의 48%를 차지하였고, 12개 자치구는 수상기회가 희박한 것을 인식하여 처음부터 여성정책 사업을 소홀히 하는 등 자치구간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오는데 한계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표 IV-5 | 역대 수상실적

구 분	없음	1회	2회	3회	4회	총 계
자치구 수	5	7	4	5	4	25
비 율	20%	28%	16%	20%	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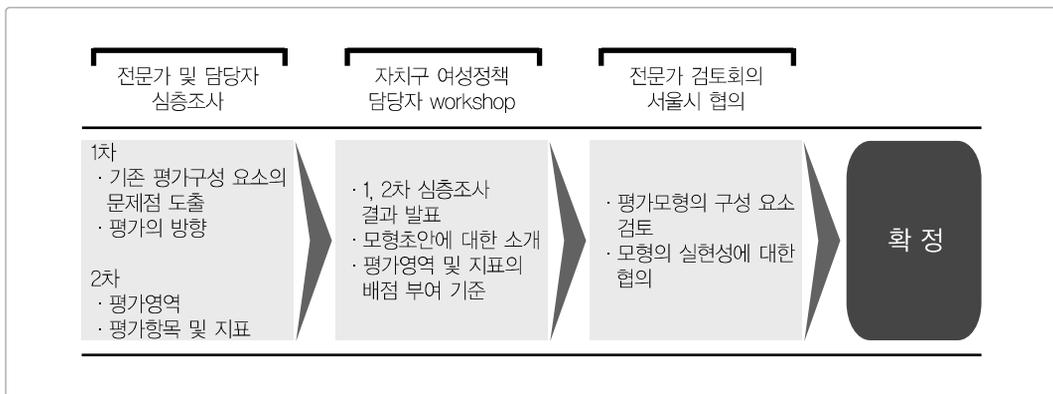
V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모형 개발



# V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모형 개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개념도는 <그림 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로 전문가 및 자치구 여성정책 담당자에게 설문지를 이용한 심층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전문가 및 자치구 담당자 심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모형 초안에 대해 자치구 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전문가들과의 회의를 통해 여성정책 평가모형에 대해 검토한 후, 서울시 여성정책 담당자와 평가모형의 실현성에 대해 최종 협의하여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모형을 확정하였다.



<그림 V-1> 모형개발을 위한 개념도

## 1.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전문가 및 담당자 심층조사

### 1) 조사 설계의 개요

설문은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모형'을 체계화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는 여성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현재 각 자치구에서 수행되고 있는 여성정책 업무범위를 일관되게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평가지표 체계 개발을 위한 사전조사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조사는 크게 여성정책 평가 전문가와 여성정책 평가 담당자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는 여성정책과 관련된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였으며,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 광역자치단체 여성정책 평가 연구자들을 포함시켰다.<sup>12)</sup> 한편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여성정책 평가 담당자는 여성정책 평가를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실무자들로 구성하였다.<sup>13)</sup> 설문조사 대상자 수는 전문가의 경우 34명, 자치구 담당자의 경우 각 자치구 마다 2명씩 선정하여 총 50명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08년 7월 4일부터 2008년 8월 4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1차 설문조사는 7월 4일부터 7월 17일까지의 기간 동안 기존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문제점과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방향설정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모형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단계로서 여성정책 평가의 영역과 항목 도출에 중점을 두어 설문하였다.

2차 설문조사는 7월 21일부터 8월 4일까지의 기간 동안 1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성정책 평가의 구성요소와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모형을 좀더 구체화하기 위한 평가지표 설정에 중점을 두어 설문하였다.

설문지 배포 및 수거는 설문지 회수율을 높이고자 두 차례 설문조사 모두 설문대상자와 사전에 전화통화 후, e-mail 설문조사와 우편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지 회수율은 1차 설문조사의 경우 전문가 91.2%(31명 / 34명), 자치구 담당자 92.0%(46명 / 50명)로 회수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1차 설문조사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시된 2차 설문조사의 경우도 전문가 93.8%(30명 / 32명), 자치구 담당자 100.0%(25명 / 25명)로 회수율이 1차 설문조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설문분석은 1차 설문, 2차 설문 모두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window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에 앞서 편집작업, 검증작업, 코딩작업을 거쳤다. 검증작업 및 편집작업에서는 설문문항 중 누락된 부분의 보완 또는 설문항목들 간의 일관성 검토 및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내용 등을 분류하였다. 코딩(coding)작업에서는 SPSS window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설문응답 내용을 부호화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 발생 가능한 모든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료 수정(data cleaning)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 수정된 최종데이터를 사용하여 문항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12)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부산 여성가족개발원,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등 여성정책 연구자가 포함되었음.

13) 1차 설문조사의 경우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여성정책 관련 전담팀(계)의 부서장(팀장 혹은 계장) 각 1명과 여성정책 평가 담당자 1명, 2차 설문조사의 경우 여성정책 관련 전담팀에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경험이 가장 많은 공무원 1명을 설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치구 여성정책 담당자 워크숍은 2008년 8월 7일에 실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서 여성정책 담당 팀장, 담당자, 관련 공무원 등 총 51명이 참석하였다. 전문가 및 자치구 담당자 심층조사 결과를 설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작성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모형 초안의 평가체계(평가영역-평가항목-평가지표)에 대해 자치구별로 적정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각 평가영역별 평가항목의 우선순위에 대해 자치구 담당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함께 조사하였다.

전문가 검토회의는 2008년 8월 21일 실시하였으며, 여성정책 평가 관련 전문가 5인과 연구진 3명이 참여하였다. 자치구 여성정책 담당자 워크숍에서의 평가모형 적정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정된 평가모형(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수정·보완하였으며, 6개의 여성정책 평가영역(성 주류화의 확산,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 여성경제(활동) 능력 향상,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인권 및 복지향상, 일·가정 양립 지원)별 혹은 평가지표별 배점 부여 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정성평가(내용평가)인 경우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평가지표의 산식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 2) 설문지 주요 내용

설문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기존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들에 대한 검토’,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방향 설정’,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모형 설정’, ‘설문 대상자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된다.

|| 표 V-1 || 설문지 주요 내용

분류	설문문항	설문 문항 수	설문대상자		비고
			전문가	담당자	
기존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들에 대한 검토	○ 기존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문제점 - 여성정책 평가의 범위 · 자치구 여성정책 전담팀의 업무 범위 (최근 자치구에서 수행한 사업) · 여성정책 평가와 자치구 담당 업무의 범위 - 평가에 대해 제기한 의견의 반영정도 - 여성정책의 목표달성도에 대한 기여도	개방형 (10문항), 폐쇄형 (14문항)		○	1차 설문
	- 기존 여성정책 평가의 구성요소 · 평가방법 · 평가결과의 활용 · 구성요소별 고려사항 · 적절한 평가지표 수		○		
	· 평가대상 기간의 적절성		○		

(계속)

분류	설문문항	설문 문항 수	설문대상자		비고
			전문가	담당자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방향 설정</li> <li>- 여성정책 평가의 중요성</li> <li>- 여성정책 평가의 초점</li> <li>- 여성정책 평가의 범위</li> <li>- 성 주류화 추진실적 반영 방법</li> <li>- 다양한 평가참여자의 역할</li> </ul>	개방형 (3문항),  폐쇄형 (3문항)	○		1차 설문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모형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정책 평가 체계</li> <li>- 평가의 형식</li> <li>- 평가설계 단계에서의 참여자 (일반시민, 여성단체 및 NGO)</li> <li>- 평가대상 기간, 평가시기, 평가결과</li> <li>- 평가방법</li> </ul>	개방형 (1문항),  폐쇄형 (4문항)	○	○	2차 설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정책 평가 영역별 평가 내용</li> <li>- 기존 6개 평가영역 구분의 적절성</li> <li>- 영역의 타당성 및 정책목표</li> <li>- 각 영역별 배점</li> <li>- '성 주류화의 확산' 영역</li> <li>-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 영역</li> <li>- '양성평등문화 확산' 영역</li> <li>-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영역</li> <li>- '여성인권 및 복지향상' 영역</li> <li>- '일·가정 양립 강화' 영역</li> </ul>	개방형 (15문항),  폐쇄형 (15문항)	○	○	1차 설문 + 2차 설문
설문 대상자에 관한 문항	- 주요관심 분야	폐쇄형(1)	○		1차 설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담당 기간</li> <li>-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경험 횟수</li> <li>- 직급</li> </ul>	개방형(1), 폐쇄형(2)		○	

## 2. 설문분석 결과

### 1) 기존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문제점

#### (1) 여성정책 평가의 범위

##### ① 자치구 여성정책 전담팀의 업무 범위 : 최근 자치구에서 수행한 사업

자치구 여성정책 전담팀에서 최근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를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여성정책 관련 사업을 최근에 수행하였던 자치구의 수에 따라 다음 <표 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sup>14)</sup> 특히 ‘여성주간 실시(95.7%)’,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82.6%)’, ‘편부모 가정 지원시책 마련(82.6%)’,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대(82.6%)’, ‘여성직업능력 개발(82.6%)’사업은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반해 ‘여성복지법인 운영(10.9%)’, ‘여성 1366 지원(21.7%)’, ‘여성인력발전 센터 지도·감독(28.3%)’ 사업은 몇 개의 자치구에서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은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 여성정책의 업무로 분류되지 않았거나 최근 2~3년간 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으로 해석된다.

■ 표 V-2 ■ 자치구 여성정책 전담팀의 최근 수행 사업 구분

분 류	사업명	사업수	
많은 자치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7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주간실시</li> <li>·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li> <li>· 여성직업능력개발</li> <li>· 직장내 평등한 근로환경조성</li> <li>· 여성자원봉사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부모가정 지원시책 마련</li> <li>· 영유아보육시설의 확대 등</li> <li>· 여성건강증진</li> <li>·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확산</li> </ul>	9개 사업
절반 이상 자치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50~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위원회 여성참여</li> <li>· 가정폭력문제 시책강구</li> <li>·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및 운영지도 감독</li> <li>· 여성정책관련조례규칙 정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공직참여확대</li> <li>· 여성모성보호 확대</li> <li>· 여성상담소설치, 운영</li> <li>· 여성취업정보센터 운영</li> </ul>	8개 사업
적은 자치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5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복지법인 운영</li> <li>· 여성인력발전센터지도감독</li> <li>· 남녀차별적 법령발굴개선</li> <li>· 여성기업물품 우선구매</li> <li>· 일분위안부 생활안정지원</li> <li>· 여성회관 등 설치,운영</li> <li>· 직장,가정양립지원체제 확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1366지원</li> <li>· 요보호여성을 위한 복지시설 설치 운영</li> <li>· 여성복지상담소 설치,운영</li> <li>· 여성보호시설 설치, 운영</li> <li>· 아동보호시설설치,운영지도</li> <li>· 보육정보센터 운영</li> </ul>	13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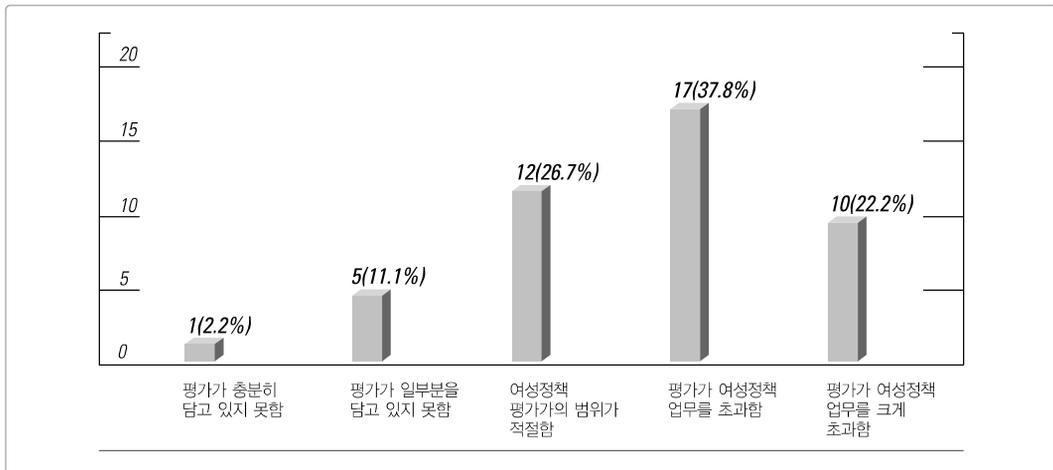
## ② 여성정책 평가와 자치구 담당 업무의 범위

‘현재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는 선생님께서 담당하시는 여성정책 업무를 담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자치구 담당자들은 다음 <그림 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총 30개 사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설문대상자 중 70% 이상이 최근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업을 ‘많은 자치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50-70% 사이를 ‘절반 이상 자치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0-50% 사이를 ‘적은 자치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분류하였다.

‘평가가 여성정책 업무를 초과함’(17명, 37.8%)에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여성정책 평가의 범위가 적절함’(12명, 26.7%), ‘평가가 여성정책 업무를 크게 초과함’(10명, 22.2%)순이었다. 즉 평가가 여성정책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수가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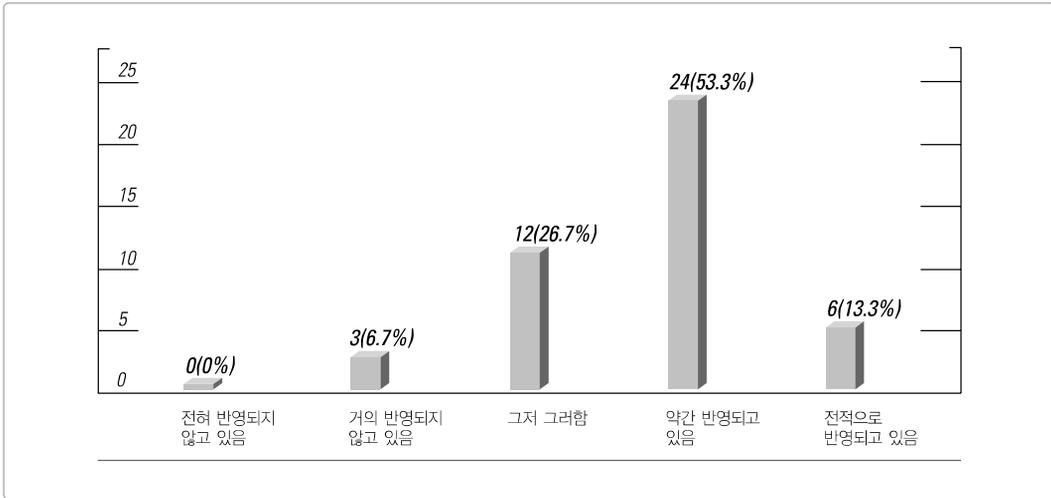
초과하고 있는 부문은 주로 자치구 전체의 조직과 관련이 있는 인사문제(여성 관리직의 비율 및 주요부서 배치) 등 타부서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여성정책 전담팀으로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평가항목이 너무 많고, 세분화되어 있어서 평가를 대비한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응답도 있었다. 반면 자치구의 여성정책을 담고 있지 못한 부문은 사업 건수에만 치중하여 실제로 깊이 있는 평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평가를 통해 발굴한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홍보하지 못하고 평가로만 끝난 점, 자치구 수준에서 추진하기 쉽지 않은 것(여성경제활동) 등을 지적하였다.



〈그림 V-2〉 여성정책 평가와 담당여성정책 업무의 범위

## (2) 평가에 대해 제기한 의견의 반영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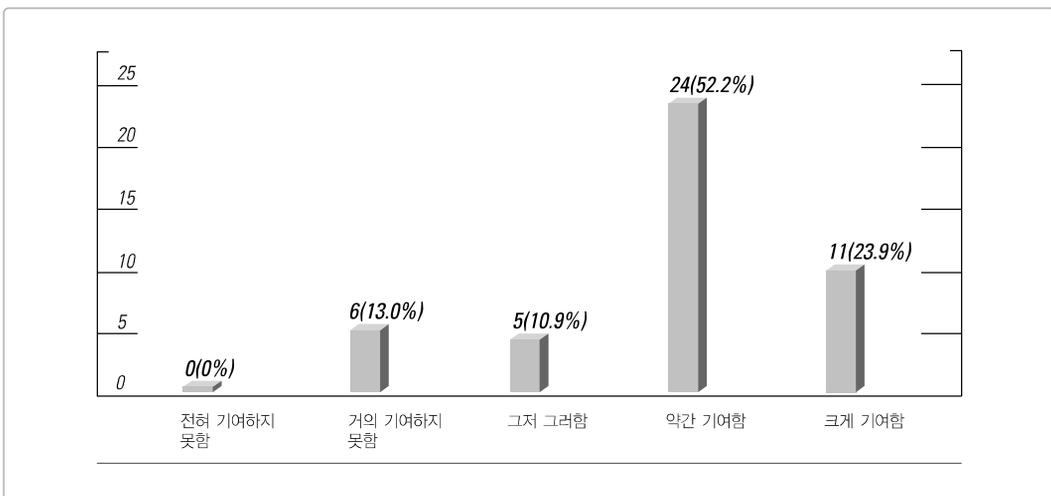
자치구 담당자들은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평가지표 개발,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평가전반에 대해 제기한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 〈그림 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30명, 88.2%). 제기한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는 내용으로는 평가결과 여성정책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자치구에 계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자치구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 매년 평가의 내용이 변화되는 것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림 V-3〉 평가에 대해 제기한 의견의 반영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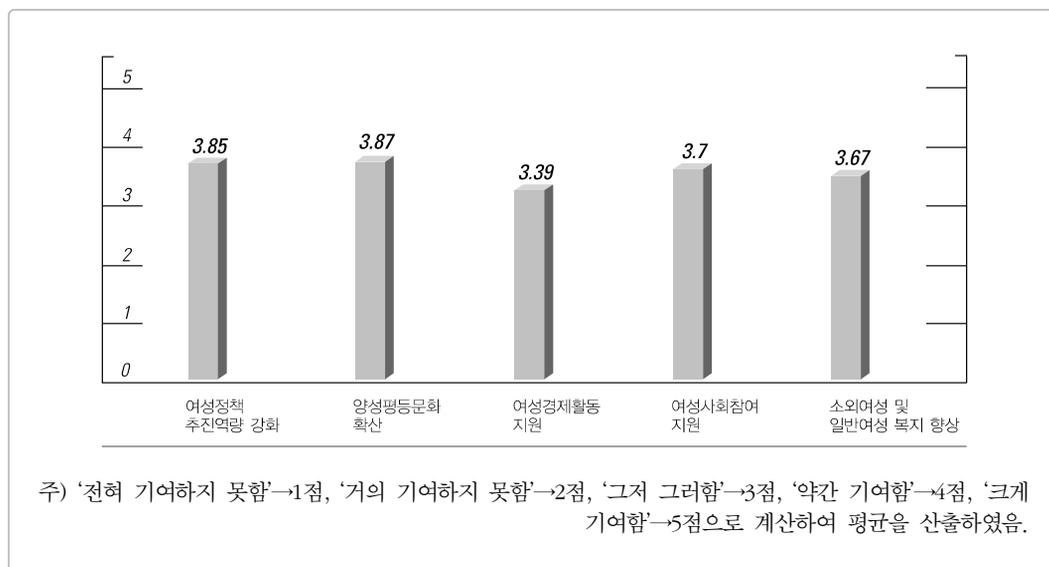
### (3) 여성정책의 목표달성도에 대한 기여도

자치구 담당자들은 ‘선생님께서도 200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가 실제 여성정책의 목표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 〈그림 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간 기여함(24명, 52.2%)’ 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크게 기여함(11명, 23.9%)’을 많이 응답하였다. 즉 대부분의 설문 응답자가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35명, 76.1%).



〈그림 V-4〉 여성정책 목표달성도에 대한 기여도

구체적으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가 6개의 평가영역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한 정도에 대해 다음 <그림 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영역별로 비교해 볼 때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V-5> 여성정책 평가의 영역별 목표달성도에 대한 기여도

#### (4) 여성정책 평가의 구성요소

##### ① 평가의 방향과 주체

첫째, 평가의 방향에 대해서는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를 통해 자치구마다 미흡한 영역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하여 열악한 자치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평가의 방향에 성 평등 지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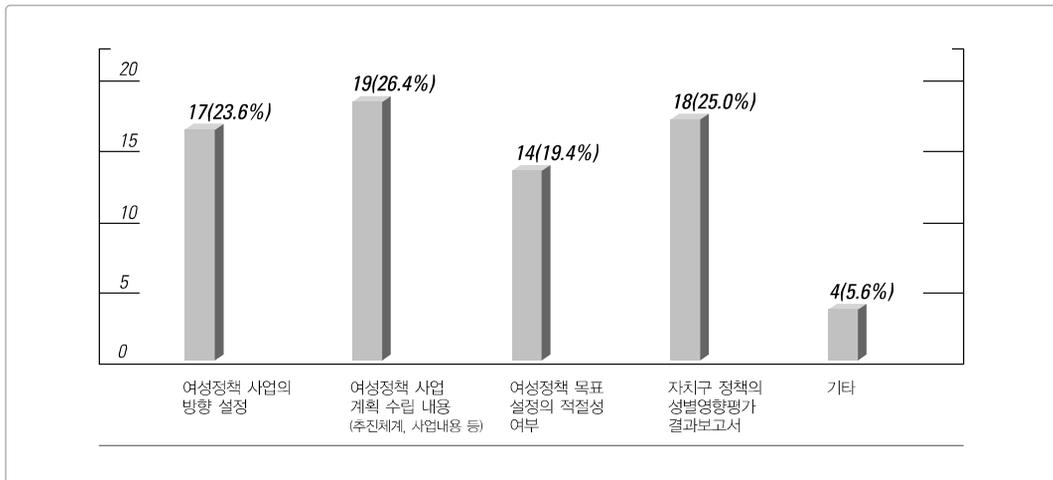
이는 평가의 내용에 최근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성 주류화(성인지 통계, 성인지 관점, 성 평등 등) 측면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추진 실적 뿐만 아니라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평가의 내용을 전문가 뿐만 아니라 피평가자들인 자치구 담당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평가내용을 제언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평가주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민간여성단체와 NGO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치구 담당자를 평가주체로 참여시켜 자치구간 상호평가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 ② 평가방법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병행하여 추진해 왔다. 여성정책 평가 전문가들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정성평가가 ‘평균 35.8%’, 정량평가가 ‘평균 64.2%’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정성평가로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 <그림 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정책 사업계획 수립 내용(19명, 26.4%)’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자치구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18명, 25.0%)’, ‘여성정책 사업의 방향 설정(17명, 23.6%)’, ‘여성정책 목표 설정의 적절성 여부(14명, 19.4%)’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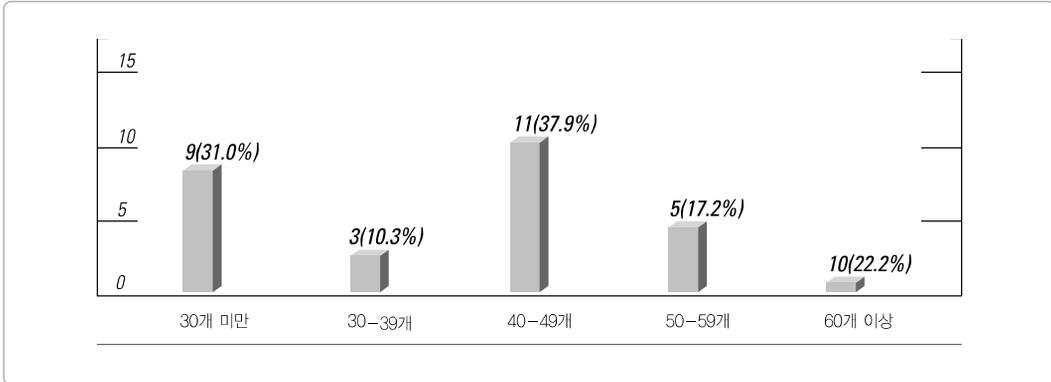
<그림 V-6> 정성평가가 필요한 부문

그 외 기타 의견(4명)으로는 실제 사업 수행 결과 보고서 평가, 특수시책이나 양성평등에 미친 정도, 정책 수혜자들에 대한 만족도,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outcomes) 부문에서 정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③ 적절한 평가지표 수

전문가들은 ‘피평가자 평가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자치구 여성정책의 성과를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평가지표 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 <그림 V-7>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49개’ 정도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수(11명, 37.9%)가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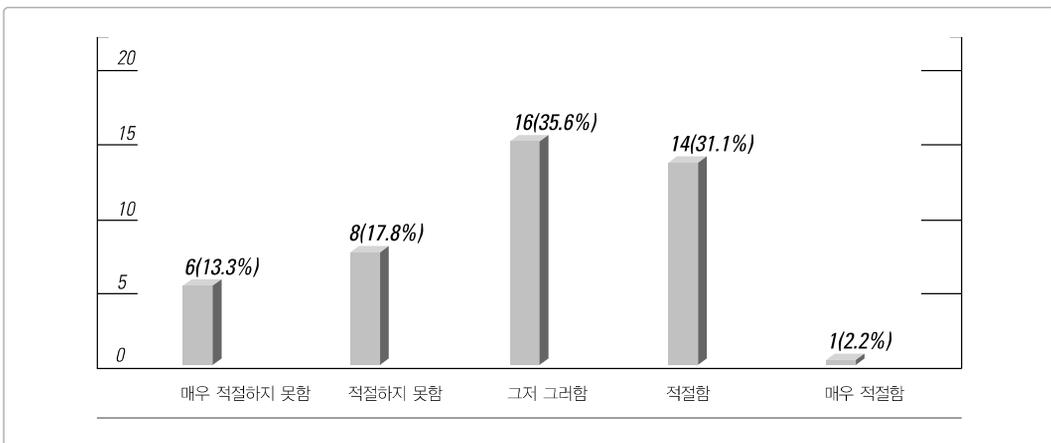
많았으며, 다음으로 ‘30개 미만(9명, 31.0%)’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V-7〉 적절한 평가지표의 수

#### ④ 평가대상 기간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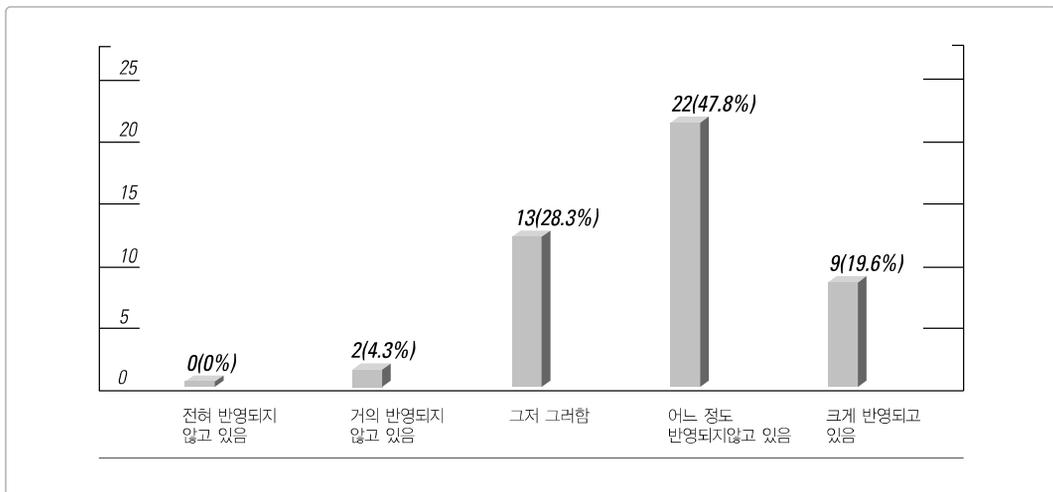
자치구 담당자들은 ‘평가대상 기간이 적절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 〈그림 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저 그러함(16명, 35.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적절하다라는 응답자 수(14명, 31.1%)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응답자 수(8명, 17.8%)가 비슷하였다. 적절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 자치구의 사업 계획 및 일정 등이 연차별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대상 기간을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V-8〉 평가대상 기간의 적절성

### ⑤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해 자치구 담당자에게는 실제 정책과정에서의 반영 정도에 대해 설문하였으며, 전문가에게는 평가결과의 활용 방안에 대해 설문하였다. 자치구 담당자의 경우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결과는 차년도 여성정책 계획수립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 <그림 V-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음'(22명, 47.8%)에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그저 그러함'(13명, 28.3%), '크게 반영되고 있음'(9명, 19.6%)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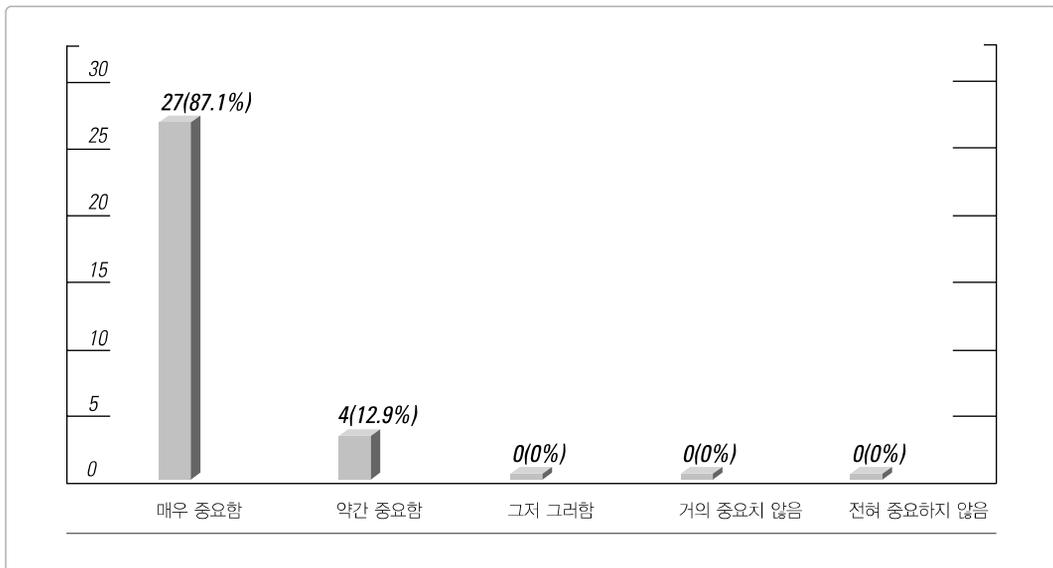
<그림 V-9> 차년도 계획수립의 반영 정도

다음으로 전문가의 경우 자치구 여성정책의 평가결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응답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자치구의 대응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년도 개선실적에 대한 평가, 자치구별 평가결과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 평가결과를 정책 담당자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자치구 여성정책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각 자치구에 홍보하여 확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 담당자와의 쌍방향 의사소통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구나 회의가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자치구 여성정책 전담부서에 대한 자치구 차원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 자치구 단체장인 구청장 및 고위 공무원들의 의지 또는 관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보고서 수준의 평가를 지양하고, 현장실사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2) 평가의 방향 설정에 관한 설문분석 결과

### (1) 여성정책 평가의 중요성

전문가들은 ‘여성정책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 <그림 V-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설문 응답자들은 ‘매우 중요함(27명, 87.1%)’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V-10> 여성정책 평가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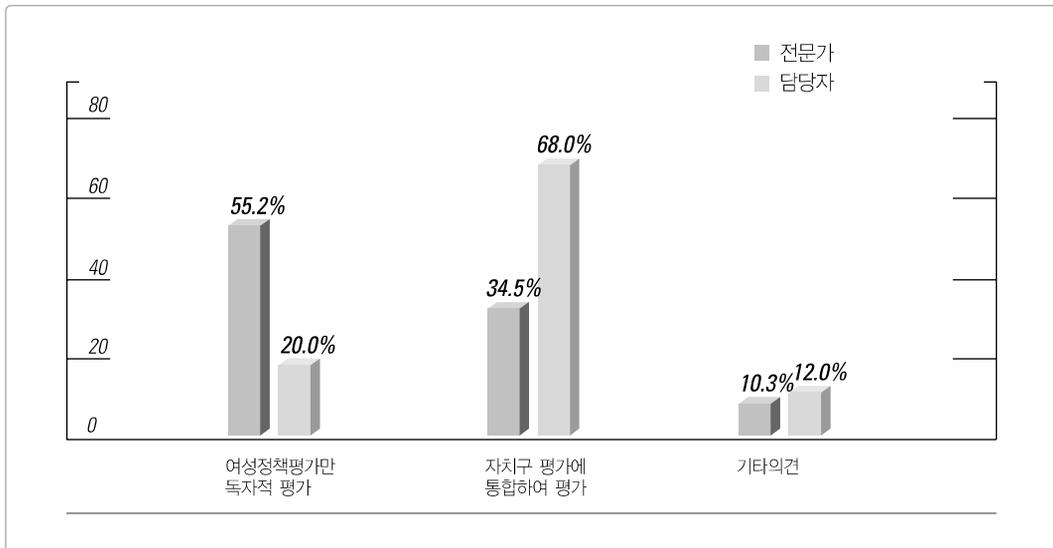
### (2) 여성정책 평가의 형식

전문가와 자치구 담당자들은 ‘평가의 형식을 고려할 때 다음 중 어떠한 형태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 <표 V-3>과 <그림 V-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이한 응답을 하였다. 전문가의 경우 ‘여성정책 평가만 독자적 평가(55.2%)’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한 반면 자치구 담당자는 ‘자치구 평가에 통합하여 평가(68.0%)’해야 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또한 이러한 차이에 대해 교차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 전문가와 담당실무자의 입장과 견해의 차이를 나타내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표 V-3 설문 대상자별 여성정책 평가 형식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구 분	Q: 자치구 여성정책평가의 형식			Total	비 고
	여성정책평가만 독자적 평가	자치구 평가에 통합하여 평가	기타 의견		
여성정책 전문가	16 (55.2%)	10 (34.5%)	3 (10.3%)	29 (100.0%)	$\chi^2=7.321$ df=2 p=0.026*
여성정책 담당자	5 (20.0%)	17 (68.0%)	3 (12.0%)	2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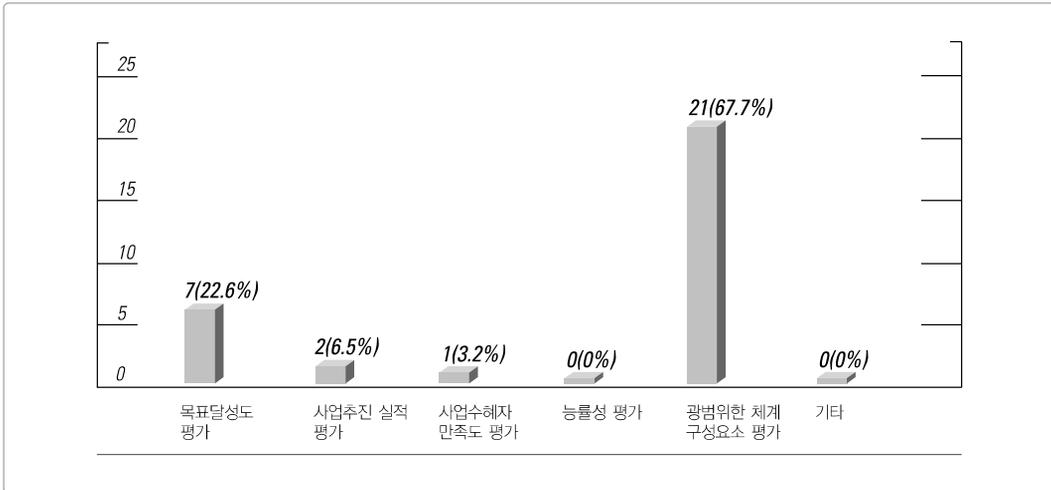
\* : p<0.05



〈그림 V-11〉 여성정책 평가의 형식

### (3) 여성정책 평가의 초점

전문가들은 ‘여성정책 평가의 초점을 다음 평가유형 중 무엇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 〈그림 V-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범위한 체계 구성요소 평가: 목표설정, 정책과정 등 포괄적 평가(21명, 67.7%)’라고 응답한 사람 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목표달성도 평가(7명, 22.6%)’라고 응답한 사람 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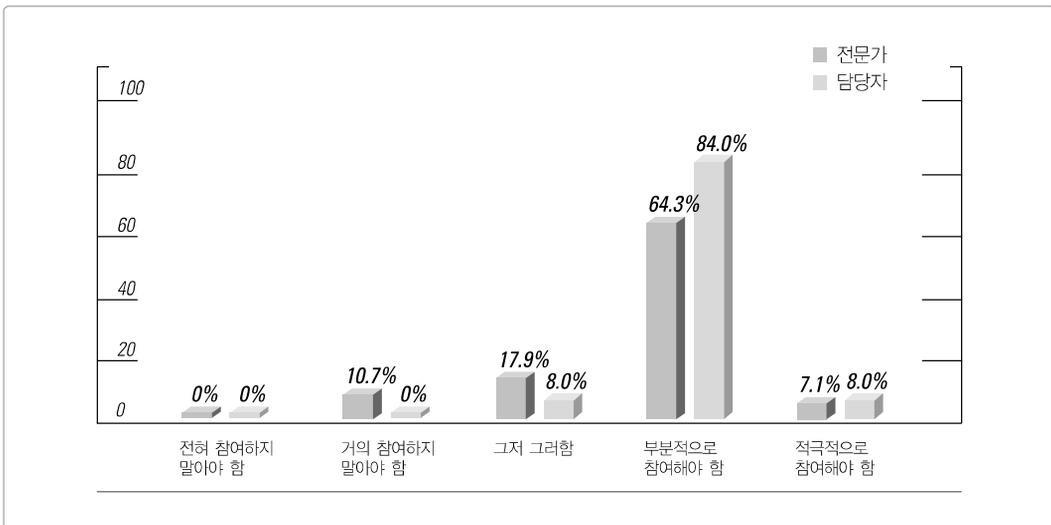
〈그림 V-12〉 여성정책 평가의 초점

### 3)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모형의 구성요소

#### (1) 평가의 참여자

##### ① 평가 설계 단계에서의 참여자(일반시민)

‘일반시민을 평가설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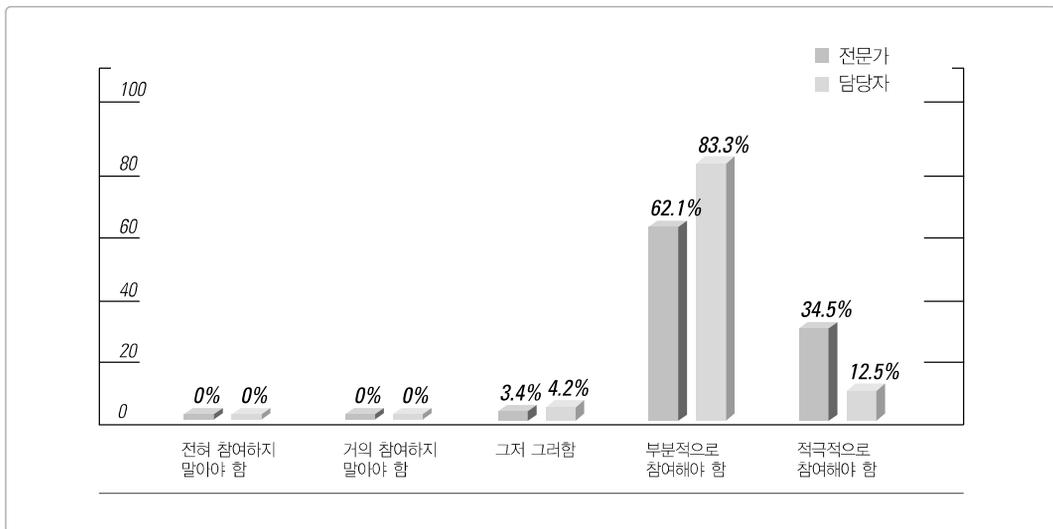


〈그림 V-13〉 평가설계 단계에서의 일반시민의 참여

해 다음 <그림 V-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가와 자치구 담당자 모두 ‘부분적으로 참여해야 함(전문가: 64.3%, 담당자: 84.0%)’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 ② 평가설계 단계에서의 참여자(여성단체 및 NGO)

‘여성단체 및 NGO 활동가를 평가설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 <그림 V-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가와 자치구 담당자 모두 ‘부분적으로 참여해야 함(전문가: 62.1%, 담당자: 83.3%)’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림 V-14> 평가설계 단계에서의 여성단체 및 NGO 활동가의 참여

## (2) 평가시기

전문가와 자치구 담당자들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개방형 질문)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적절한 평가 대상기간에 대해 여성정책에 관련된 1년 단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이 종료된 후에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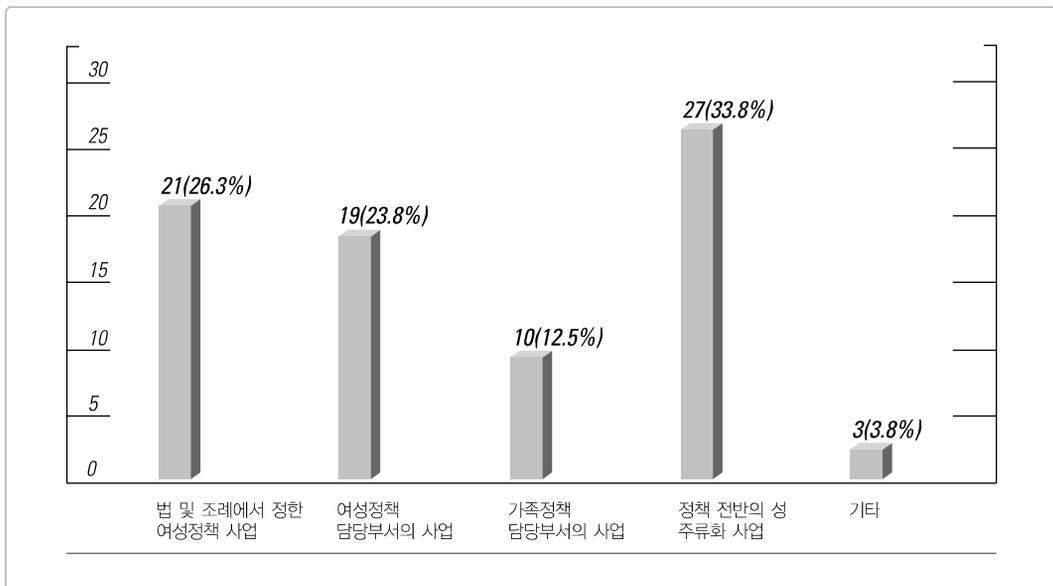
특히 자치구 담당자들은 현재의 평가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특정시기에 과중된다고 응답하였다. 자치구 여성정책 전담팀의 경우 7월은 여성주간 행사로 연중 가장 바쁜 시기이며, 8월은 담당자들의 하계 휴가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는 시기이고, 9월은 사업 집행에 대해 점검하고 마무리하기 위한 준비 등으로 많은 어려움

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피평가자(자치구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이 종료된 후 매년 초(1월-4월)에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 (3) 평가의 대상과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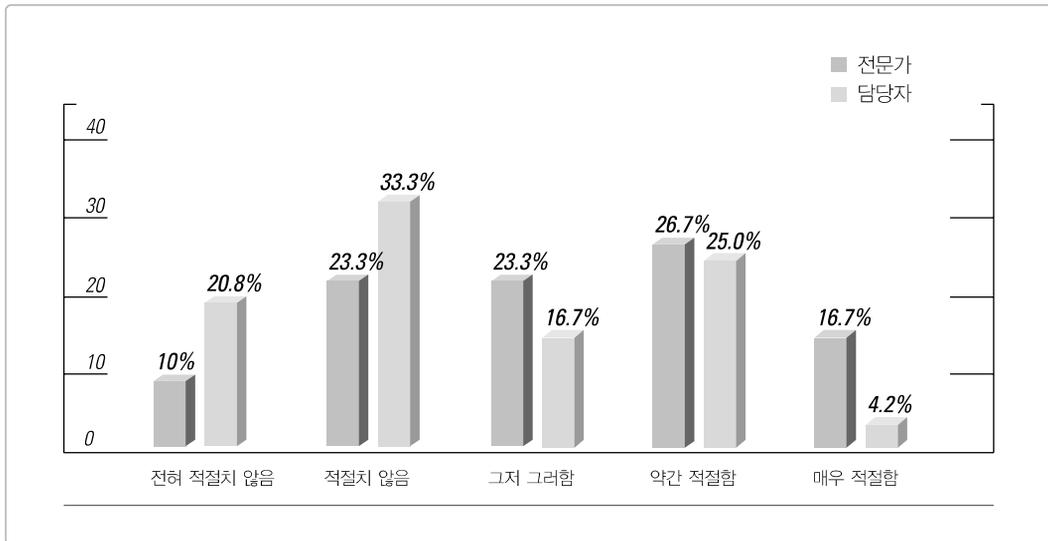
전문가들은 ‘여성정책 평가의 범위는 어디까지 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그림 V-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책 전반의 성 주류화 사업(27명, 33.8%)’이라고 응답한 사람 수가 가장 많았으며, ‘법 및 조례에서 정한 여성정책 사업(21명, 26.3%)’,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사업(19명, 23.8%)’, ‘가족정책 담당부서의 사업(10명, 12.5%)’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V-15> 여성정책 평가의 범위

### (4) 평가방법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서면평가시 자치구 담당자간 교차평가 방식의 적절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 <그림 V-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가와 담당자간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전문가의 경우 적절하더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약간 많은데 반해 자치구 담당자의 경우 적절하지 않더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약간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교차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나진 않았다( $p=0.446$ ).



〈그림 V-16〉 자치구 담당자간 교차평가 방식의 적절성

#### 4)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체계

##### (1) 여성정책 평가영역의 설정

여성정책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에 활용되고 있던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영역의 적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다음은 1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영역(6개)을 수정한 초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6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질문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여성정책의 평가영역에 대한 1차 조사결과 수정안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V-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평가영역의 수와는 동일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일부분 수정되었다.

수정된 평가영역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성 주류화의 확산’ 영역은 기존 평가영역 가운데 ‘여성정책 기반조성’의 하위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여성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독립된 영역으로 도출하였다. 전문가 및 자치구 담당자 심층조사 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의견들이 있었으며, 특히 전문가들의 경우 향후 여성정책의 방향을 고려해 볼 때 ‘성 주류화의 확산’이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필수영역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수정된 ‘성 주류화의 확산’영역은 기존의 ‘여성정책 기반조성’뿐만 아니라 ‘양성평등문화 확산’영역에서도 일부 항목을 포함하게 되었다.

둘째,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영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영역은 유지되지만, ‘성 주류화의 확

산'영역이 독립된 영역으로 도출됨에 따라 기존의 영역과 비교했을 때 많은 부분 축소되었다.

셋째, '양성평등문화 확산'영역도 기존과 동일하게 영역은 유지되지만, 영역 내 세부 평가항목은 일부 수정되었다.

넷째, 나머지 3개의 평가영역은 '여성경제활동 지원'영역에서 '여성경제(활동) 능력 향상'영역으로, '소외여성 및 일반여성 복지향상'영역에서 '여성인권 및 복지향상'영역으로, '보육 및 아동서비스 향상'영역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영역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세부 평가항목도 일부만 수정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있던 '여성사회참여 지원'영역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려해 볼 때 여성정책의 평가영역으로서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 전체를 삭제하였다. 특히 전문가 및 자치구 담당자 심층조사 결과 '여성사회참여 지원'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은 크게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지역의 여성단체 관리 등으로 구분되는데 여성의 역할(사회참여)을 자원봉사로 국한하는 것과 여성단체를 관 주도로 관리하려는 발상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다.

기 존 틀	수정(초안)	타당성(%)		비중(전체 100% 기준)			비 고
		O	X	전문가	담당자	통합	
1) 여성정책 추진 역량 강화	1) 성 주류화의 확산	94.4	5.6	18.9	18.9	18.9	유지
2) 양성평등문화 확산	2) 여성정책추진 역량 강화	97.4	2.6	15.6	19.1	17.3	유지
3) 여성경제활동 지원	3) 양성평등 문화 확산	97.3	2.7	14.8	17.5	16.1	수정
4) 여성사회참여 지원	4) 여성경제(활동) 능력 향상	97.2	2.8	18.2	13.8	16.1	수정
5) 소외여성 및 일반 여성 복지 향상	5) 여성인권 및 복지향상	100	0	17.3	14.6	16.0	수정
6) 보육 및 아동 서비스 향상	6) 일·가정 양립 강화	97.4	2.6	15.7	15.5	15.6	수정

〈그림 V-17〉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영역의 타당성 여부 조사 분석 결과

수정한 초안에 대한 의견은 응답자의 90% 이상이 6개 영역의 타당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며, 6개 영역의 각각의 비중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와 여성정책 담당자 간 약간의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성 주류화의 확산’ 영역의 비중에 대해서는 100점 중 약 19점으로 전문가와 담당자의 결과가 똑같이 도출되었다.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 영역에서는 전문가는 15.6%, 담당자는 19.1%로 응답하고 있어 응답자 특성별로 비중에 대한 견해가 차이가 나고 있다. 전문가의 측면에서는 여성정책기반조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본 반면, 담당자들은 여전히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에 대한 비중을 비교적 높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문화 확산’ 영역에 대해서 전문가는 약 15%의 비중을, 여성정책 담당자는 이 영역에 약 17.5%의 비중을 두고 있어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인다. 이유는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업무가 주로 성 평등을 위한 의식개선 사업이 업무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여성경제활동 활성화’와 관련하여 전문가는 약 18%의 비중으로 응답된 반면, 여성정책 담당자는 14%에 못 미치고 있어 응답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정책목표로서 여성경제활동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과는 달리 정책현장에서 여성정책 담당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비중이 크지 않은 것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여성인권 및 복지향상’ 영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경우 약 17.3%의 비중으로 응답된 반면, 담당자는 14.6%로 전문가가 생각하는 비중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가정 양립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전문가와 담당자 모두 약 15.5%의 비중으로 조사되었다(p.111 <표 V-27> 참조).

## (2) 여성정책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여성정책 평가영역별 평가항목을 설정하기 위해 1차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와 자치구 담당자로 나누어 적합성 여부를 6개 문항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적합성 여부를 질문하기 전에 연구진 회의를 통해 기존의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에서 다루었던 평가항목 전체를 (2004-2007년) 6개 평가영역으로 분류하여 제시해 주고, 이렇게 제시된 평가영역별 평가항목에 대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설문대상자에게 질문하였다.

전문가에 대한 1차 조사에서는 평가영역별 평가항목의 적합성 여부를 ‘상, 중, 하’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여 질문하였다. 설문 분석시 상(3점), 중(2점), 하(1점), 결측값(0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평균을 계산하였으며, 평균 2.5점 이상은 ‘상위’로, 2.0-2.5점 사이는 ‘중위’로 정리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자치구 담당자에 대한 1차 조사에서는 평가영역별 평가항목의 적합성 여부를 ‘O’ 또는 ‘X’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여 질문하였다. 설문 분석시 전체 설문 응답자 중 ‘O’라고 표기한 사람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며, 항목별 ‘O’라고 표기한 사람의 비율이 80% 이상은 ‘상위’로, 70-80% 사이는 ‘중위’로 정리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전문가와 자치구 담당자에 대한 1차 설문조사 결과 평가항목의 적합성 판단에 대해 두 집

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집단에서 적합성이 높다고 응답한 평가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으며, 1차, 2차 심층조사시 개방형 질문을 추가로 구성하여 설문응답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와 더불어 평가항목의 적합성에 대한 연구진들의 검토회의를 통해 평가영역별 평가항목을 설정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성 주류화의 확산

‘성 주류화의 확산’영역은 기존의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에 존재하던 영역이 아니고, 새롭게 독립된 평가영역으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개방형 질문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 평가영역의 평가항목 가운데 일부를 ‘성 주류화의 확산’영역으로 포함시켰으며, 특히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영역에서 대부분의 평가항목(성별영향평가,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정책 과정의 여성 대표성, 성평등 정책 조정기구 운영)을 가져와서 새롭게 구성하였다. 또한 설문지 구성시 기존의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에서 다루었던 평가항목들을 전부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평가항목도 많이 존재하여 유사한 평가항목 가운데 대표적인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취합하였다.

또한 전문가 심층조사 결과 강조된 ‘성인지 예산’과 이에 대한 근거 자료로서 ‘성별분리 통계’를 새로운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인지 예산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성별분리 통계도 중요한 항목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수 존재하여 이를 포함시켰다.

이러한 과정과 연구진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설정된 ‘성 주류화의 확산’영역은 다음 <표 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영향평가’,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성별분리 통계’, ‘성인지 예산’, ‘성평등 정책 조정기구 운영’, ‘정책과정의 여성 대표성’을 포함하여 총 6개의 평가항목으로 설정되었다.

▮ 표 V-4 ▮ ‘성 주류화 확산’ 영역의 평가항목 설정

평가영역	평가항목
성 주류화의 확산	1) 성별영향평가
	2)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3) 성별분리 통계
	4) 성인지 예산
	5) 성평등 정책 조정기구 운영
	6) 정책과정의 여성 대표성

## ②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영역은 기존의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에 존재하던 평가영역으로 전문가 및 자치구 담당자 심층조사를 통한 적합성 검토 결과를 다음 <표 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가와 자치구 담당자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표 V-5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 영역 평가항목의 적합성 검토 결과

설문대상 구분	전문가		자치구 담당자	
	내 용	근거	내 용	근거
상위	여성관련 예산 적절성	2.90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여부	100%
	공무원의 성인지성 향상	2.74	여성정책 추진 참여	97.7%
	성별영향평가의 활성화	2.71	여성관련 정보제공	93.2%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여부	2.65	정책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제고	88.6%
	기관장의 관심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여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	2.61	공무원의 성인지성 향상	86.4%
			여성위원회 운영	84.1%
			협력체계 구축	81.8%
			성별영향평가의 활성화	
			기관장의 관심도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창의시정 및 여성 정책참여		
중위	정책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제고	2.48	여성관리직 공무원 확대	79.5%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여부	2.39	인력의 전문성	
	여성관리직 공무원 확대	2.35	여성정책발전 연구	77.3%
	여성발전기금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	75.0%
	여성위원회 운영	2.32	여성발전기금	72.7%
	인력의 전문성		여성관련 예산 적절성	70.5%
	협력체계 구축	2.29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2.19		
	조직의 위상	2.16		
	여성관련 정보제공	2.00		

전문가 및 자치구 담당자들의 적합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다음 <그림 V-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은 등위 순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렇게 제시된 결과에 대해 연구진들의 회의를 거쳐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최종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기 위해 평가항목을 유지·통합·삭제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의 연구진 회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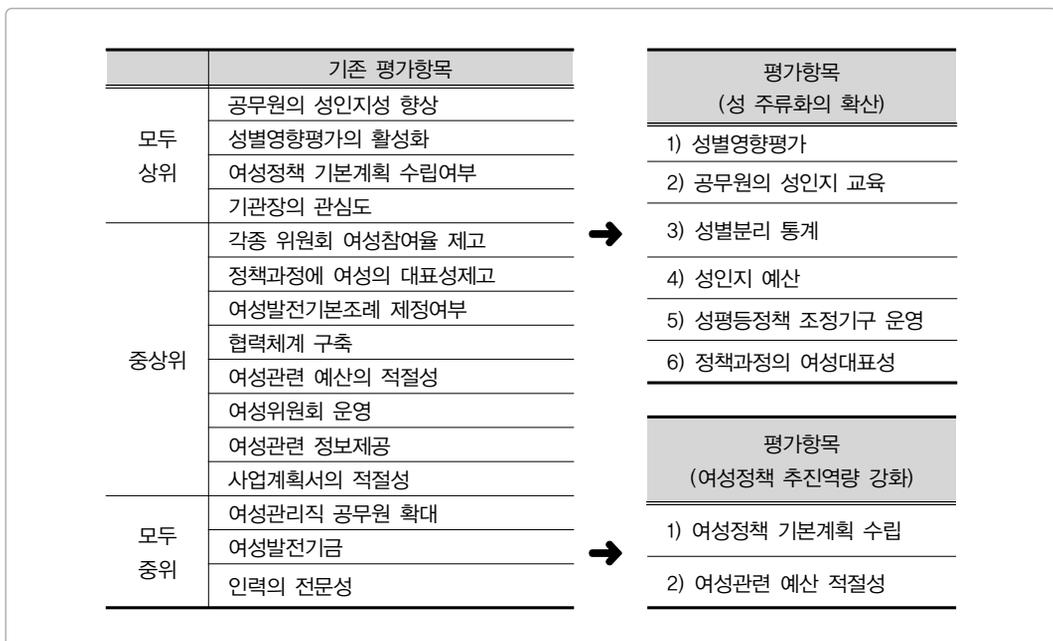
첫째, 기존의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항목 가운데 전문가 및 자치구 담당자 심층조사와

연구진의 검토회의 결과 적합성이 높다고 판단된 평가항목은 유지되었다. ‘성별영향평가’, ‘성평등 정책 조정기구 운영(협력체계 구축)’항목은 기존의 평가항목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새롭게 독립된 ‘성 주류화의 확산’영역에 포함되어 유지되었다.

둘째, 중복되는 평가항목들은 가장 적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1개의 평가항목으로 통합하였다. 우선 기존의 ‘공무원의 성인지성 향상’과 ‘인력의 전문성’항목은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으로 통합하여 ‘성 주류화의 확산’영역에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기존의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 ‘정책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제고’, ‘여성위원회 운영’, ‘여성관리직 공무원 확대’항목은 ‘정책과정의 여성대표성’으로 통합하여 ‘성 주류화의 확산’영역에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계획서의 적절성’항목은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으로 통합하였고, 기존의 ‘여성관련 예산의 적절성’과 ‘여성발전기금’항목은 ‘여성관련 예산 적절성’항목으로 통합하여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영역으로 유지되었다.

셋째, 기존의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항목 가운데 전문가 및 자치구 담당자 심층조사와 연구진의 검토회의 결과 적합성도 낮다고 판단된 평가항목은 삭제되었다.

‘기관장의 관심도’는 자치구 여성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요소이나 실제 평가를 위한 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행사참여여부나 회의에서 여성정책 언급횟수 등 수단적 요소를 평가의 잣대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거꾸로 여성정책 추진성과를



〈그림 V-18〉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 영역의 평가항목 설정

통해서 기관장 관심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성과중심의 평가를 지향하고 있다.

‘여성관련 정보제공’은 거의 모든 자치구에서 이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발전기본조례’도 이미 25개 자치구마다 모두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항목은 자치구의 여성정책을 평가하기에는 변별력이 낮기 때문에 삭제하였다.

최종적으로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 영역에는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여성관련 예산 적절성’을 포함하여 총 2개의 평가항목으로 설정되었다.

### ③ 여성경제(활동) 능력 향상

‘여성경제(활동) 능력 향상’영역은 기존의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에서는 ‘여성경제활동 지원’이라는 영역으로 존재하던 것으로 전문가 및 자치구 담당자 심층조사를 통한 적합성 검토 결과를 다음 <표 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가와 자치구 담당자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Ⅱ 표 V-6 Ⅱ ‘여성경제(활동) 능력 향상’ 영역 평가항목의 적합성 검토 결과

설문대상 구분	전문가		자치구 담당자	
	내 용	근거	내 용	근거
상위	여성 인적자원 개발 실적	2,74	교육·훈련 실적	95.5%
	취업지원 실적	2,68	여성 인적자원 개발 실적	84.1%
	교육·훈련 실적	2,65		
	창업지원 실적	2,55		
중위	여성기업 지원	2,45	취업지원 실적	75.0%

전문가 및 자치구 담당자들의 적합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다음 <그림 V-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은 등위 순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렇게 제시된 결과에 대해 연구진들의 회의를 거쳐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최종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기 위해 평가항목을 유지·통합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의 연구진 회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항목 가운데 전문가 및 자치구 담당자 심층조사와 연구진의 검토회의 결과 적합성이 높다고 판단된 평가항목은 유지되었다. 기존의 ‘여성기업 지원’은 ‘여성경제 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노력도’항목으로 이름이 수정되어 유지되었다.

둘째, 중복되는 평가항목들은 가장 적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1개의 평가항목으로 통합하였다. 기존의 ‘여성 인적자원 개발 실적’과 ‘교육·훈련 실적’항목은 ‘교육·훈련’으로 통합하였으며, 기존의 ‘취업지원 실적’과 ‘창업지원 실적’항목은 ‘취·창업 실적’으로 통합하였다.

최종적으로 ‘여성경제(활동) 능력 향상’ 영역에는 ‘교육훈련’, ‘여성경제 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노력도’, ‘취·창업’을 포함하여 총 3개의 평가항목으로 설정되었다.

	기존 평가항목		평가항목
모두 상위	여성 인적자원 개발 실적	➔	1) 교육·훈련
	교육·훈련 실적		2) 여성경제 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노력도
중상위	취업지원 실적		
상위	창업지원 실적		
중위	여성기업 지원		3) 취·창업

〈그림 V-19〉 ‘여성경제(활동) 능력 향상’ 영역의 평가항목 설정

#### ④ 양성평등문화 확산

‘양성평등문화 확산’영역은 기존의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에 존재하던 평가영역으로 전문가 및 자치구 담당자 심층조사를 통한 적합성 검토 결과를 다음 〈표 V-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가와 자치구 담당자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Ⅱ 표 V-7 Ⅱ ‘양성평등문화 확산’ 영역 평가항목의 적합성 검토 결과

설문대상 구분	전문가		자치구 담당자	
	내용	근거	내용	근거
상위	공무원 양성평등 사업	2.58	양성평등교육 운영	100%
			공무원 양성평등 사업	88.6%
			시민 양성평등 사업	
			여성주간 사업 추진	86.4%
			여성친화적 문화조성	
중위	성희롱 교육추진 실적	2.48	성희롱 교육추진 실적	81.8%
	시민 양성평등 사업	2.45	여성학 강좌 운영	77.3%
	양성평등교육 운영	2.35		
	여성친화적 문화조성	2.26		
	남녀차별신고센터 운영	2.03		

전문가 및 자치구 담당자들의 적합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다음 <그림 V-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은 등위 순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렇게 제시된 결과에 대해 연구진들의 회의를 거쳐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최종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기 위해 평가항목을 유지·통합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의 연구진 회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항목 가운데 전문가 및 자치구 담당자 심층조사와 연구진의 검토회의 결과 적합성이 높다고 판단된 평가항목은 유지되었다. 기존의 '여성주간 사업 추진'은 '여성주간 사업 운영'항목으로 이름이 수정되어 유지되었다.

둘째, 중복되는 평가항목들은 가장 적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1개의 평가항목으로 통합하였다. 기존의 '양성평등교육 운영', '시민 양성평등 사업', '여성친화적 문화조성', '성희롱 교육추진 실적'항목은 '시민 양성평등 증진 노력도'로 통합하였다. 또한 기존의 '공무원 양성평등 사업'항목은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으로 통합하여 '성 주류화의 확산'영역에 포함되었다.

최종적으로 '양성평등문화 확산' 영역에는 '시민 양성평등 증진 노력도', '여성주간 사업 운영'을 포함하여 총 2개의 평가항목으로 설정되었다.

	기존 평가항목		평가항목
모두 상위	공무원 양성평등 사업		
중상위	양성평등교육 운영	→	1) 시민 양성평등 증진 노력도
	시민 양성평등 사업		
	여성친화적 문화조성		
	성희롱 교육추진 실적		2) 여성주간 사업 운영
상위	여성주간 사업 추진		

<그림 V-20> '양성평등문화 확산' 영역의 평가항목 설정

### ⑤ 여성인권 및 복지향상

'여성인권 및 복지향상'영역은 기존의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에서는 '소외여성 및 일반여성 복지향상'이라는 영역으로 존재하던 것으로 전문가 및 자치구 담당자 심층조사를 통한 적합성 검토 결과를 다음 <표 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가와 자치구 담당자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 표 V-8 】 ‘여성인권 및 복지향상’ 영역 평가항목의 적합성 검토 결과

설문대상 구분	전문가		자치구 담당자	
	내 용	근거	내 용	근거
상위	한부모 가정, 저소득 여성, 장애인 등 소외여성 복지 향상	2.70	한부모 가정, 저소득 여성, 장애인 등 소외여성 복지 향상	100%
	성폭력·가정폭력	2.58	성폭력·가정폭력	93.2%
			가족복지 향상	90.9%
			모성보호 여성건강 지원	88.6%
			성매매 예방 및 방지	84.1%
			가족지원관련 인프라 구축	81.8%
중위	성매매 예방 및 방지	2.45		
	모성보호 여성건강 지원	2.23		
	가족지원 관련 인프라 구축	2.19		
	여성복지 상담소 운영	2.13		
	가족복지 향상			

전문가 및 자치구 담당자들의 적합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다음 <그림 V-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은 등위 순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렇게 제시된 결과에 대해 연구진들의 회의를 거쳐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최종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기 위해 평가항목을 유지·통합·삭제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의 연구진 회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항목 가운데 전문가 및 자치구 담당자 심층조사와 연구진의 검토회의 결과 적합성이 높다고 판단된 평가항목은 유지되었다. 특히 기존의 소외여성 복지 향상 부문은 계속 유지하되, 이를 정책 대상자에 따라 세부적으로 ‘한부모·저소득 여성 복지 노력도’와 ‘장애여성 복지향상 노력도’로 나누어 2개의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중복되는 평가항목들은 가장 적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1개의 평가항목으로 통합하였다. 기존의 ‘성폭력·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및 방지’항목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및 예방’으로 통합하여 ‘여성인권 및 복지향상’영역에 포함되었다.

셋째, 기존의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항목 가운데 전문가 및 자치구 담당자 심층조사와 연구진의 검토회의 결과 적합성도 낮다고 판단된 평가항목은 삭제되었다. 예를 들어 ‘모성보호 여성건강 지원’ 관련 사업은 주로 보건소 사업으로 별도의 평가 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반면 ‘가족복지 향상’과 ‘여성복지 상담소 운영’항목은 표면적으로 삭제가 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여성인권 및 복지향상’영역 내 모든 항목과 관련되어 있다.

넷째, 전문가 및 자치구 담당자 심층조사 결과 대부분 평가항목으로 추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설문응답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성결혼 이민자 복지향상 노력도’를 ‘여성인권 및 복

지향상'영역의 새로운 평가항목으로 추가하였다. 특히 자치구 담당자들의 심층조사 결과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이미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 '결혼 이주 여성 지원', '결혼 이민자 사회통합', '결혼이민자 사회적응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업'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평가항목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여성인권 및 복지향상' 영역에는 '한부모·저소득 여성 복지 노력도', '장애여성 복지향상 노력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및 예방', '여성결혼 이민자 복지향상 노력도' 를 포함하여 총 4개의 평가항목으로 설정되었다.

	기존 평가항목		평가항목
모두 상위	한부모 가정, 저소득 여성, 장애인 등 소외여성 복지 향상	➔	1) 한부모·저소득 여성 복지 노력도
	성폭력·가정폭력		2) 장애여성 복지향상 노력도
중상위	가족복지 향상		3)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및 예방
	모성보호 여성건강 지원		4) 여성결혼 이민자 복지향상 노력도
	성매매 예방 및 방지		
중위	가족지원 관련 인프라 구축		
	여성복지 상담소 운영		

〈그림 V-21〉 '여성인권 및 복지향상' 영역의 평가항목 설정

### ⑥ 일·가정 양립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영역은 기존의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에서는 '보육 및 아동서비스 향상'이라는 영역으로 존재하던 것으로 전문가 및 자치구 담당자 심층조사를 통한 적합성 검토

Ⅱ 표 V-9 Ⅱ '일·가정 양립 지원' 영역 평가항목의 적합성 검토 결과

설문대상 구분	전문가		자치구 담당자	
	내 용	근거	내 용	근거
상위	맞춤형 보육시설 확충	2,58	보육시설 지도 점검	90.9%
			안전사고 예방노력	
			보육업무 추진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86.4%
			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맞춤형 보육시설 확충	
중위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2,35	4대 보험 가입여부	81.8%
	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2,26		70.5%
	보육시설 지도·점검	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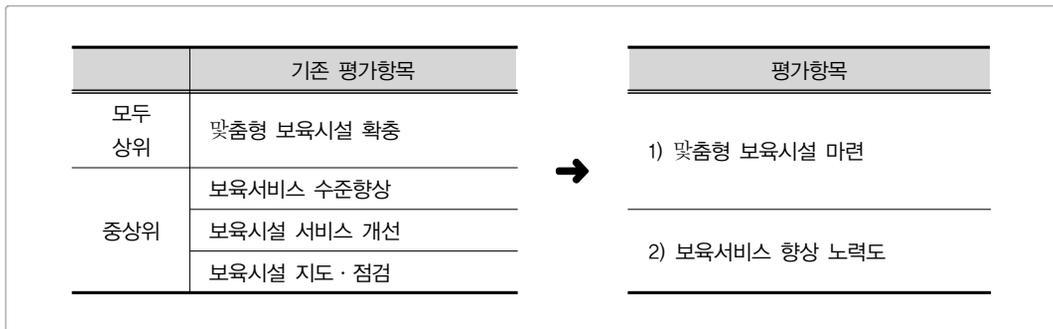
결과를 다음 <표 V-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가와 자치구 담당자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전문가 및 자치구 담당자들의 적합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다음 <그림 V-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은 등위 순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렇게 제시된 결과에 대해 연구진들의 회의를 거쳐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최종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기 위해 평가항목을 유지·통합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의 연구진 회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항목 가운데 전문가 및 자치구 담당자 심층조사와 연구진의 검토회의 결과 적합성이 높다고 판단된 평가항목은 유지되었다. 기존의 ‘맞춤형 보육시설 확충’은 ‘맞춤형 보육시설 마련’항목으로 이름이 수정되어 유지되었다.

둘째, 중복되는 평가항목들은 가장 적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1개의 평가항목으로 통합하였다. 기존의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보육시설 지도·점검’ 항목은 ‘보육서비스 향상 노력도’로 통합하였다.

최종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영역에는 ‘츄형 보육시설 마련’, ‘보육서비스 향상 노력도’를 포함하여 총 2개의 평가항목으로 설정되었다.



<그림 V-22> ‘일·가정 양립 지원’ 영역의 평가항목 설정

### (3) 여성정책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 ① 성 주류화의 확산

전문가들은 ‘여성정책 평가에 각 자치구의 성 주류화 추진실적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로 성 주류화 추진실적의 반영 방법을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응답한 것은 성별영향평가이다. 특히 성별영향평가 후 평가결과를 대한 정책에 반영하는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둘째, 성 인지 예산의 편성에 대한 것으로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정책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응답하였다. 현재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 않는 시점에서 자치구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에 대한 평가내용을 추가하여 이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자치구 여성정책을 평가하는 데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응답도 있었다.

셋째, 공무원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응답하였다. 성 주류화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위해 관리직 공무원들(5급 이하 6급 이상)의 성인지 교육 참여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넷째, 성별분리 통계의 작성에 대한 것이다. 지난 4월 성별분리 통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올해 10월부터 통계를 작성하는 모든 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흐름에 맞춰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에 포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성평등 정책에 대한 협의·조정 기구에 역할에 대한 것으로 여성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의 노력으로는 성 주류화를 추진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토대로 다음 <표 V-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 주류화의 확산' 영역의 평가 지표를 구성하였다. '성 주류화 확산' 영역은 크게 6개의 평가항목(성별영향평가,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성별분리 통계, 성인지 예산, 성평등 정책 조정기구 운영, 정책과정의 여성 대표성)으로 구성된다.

각 평가지표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전문가 및 자치구 담당자들에게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적합하다고 응답하였으나, 몇몇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합하다고 응답한 수가 적게 나타났다. 특히 '성별영향평가 과제수'에 대한 응답자 가운데 60.0%만이 평가지표로서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 표 V-10 ▣ '성 주류화의 확산' 영역 평가지표의 적합성 검토 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적합성(%)		기타 의견
			O	X	
1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과제수	60.0	40.0	·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예산 비중 · 외부 자문 활동 정도 (과제선정을 위한 자문 등) · 평가결과의 환류에 대한 관리자 지정
		성별영향평가의 내용평가	90.2	9.8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환류 여부	90.2	9.8	
2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이수자 비율	96.1	3.9	· 직급별/부서별 이수자 비율 · 관리직 공무원의 이수율 · 교육시간 반영(12시간 이상만: 2일)

평가항목	평가지표	적합성(%)		기타 의견	
		O	X		
3	성별분리 통계	보고 통계의 성별분리 정도	81.6	18.4	· 전 부서에서 행정보고통계로 성별불리해서 생산하는 정도 · 보고통계 뿐만 아니라 통계청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생산한 주요 지역 조사통계자료의 성별 분리 비율
4	성인지 예산	성인지 예산 추진 노력도	72.0	28.0	· 사업자 지정 수 · 예산 분석 사업 수 · 예산 반영 사업 수 · 여성발전기본조례에의 반영 여부 · 성인지 예산 편성 및 노력도 · 도입 전 단계로 시범실시
5	성평등 정책 조정기구 운영	부서간 협의 노력도	83.7	16.3	· 협의기구 설치 여부 및 운영 현황 · 협의·조정회의에 단체장 참석 여부 · 조정기구의 장/조정실적 · 법무서 안건을 다루는 기구 내에서 여성정책 안건 수 · NGO와의 여성정책 토론회 개최 수
		여성·시민·NGO 단체 참여 노력도	77.6	22.4	
6	정책 과정의 여성 대표성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87.8	12.2	· 관리직 비율(직급별: 4급, 5급, 6급) · 여성공무원 직급별 승진소요기간 ·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배치 실적은 7급 이상으로 조정 필요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	84.0	16.0	
		주요부서 여성 공무원 배치 실적	76.5	23.5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의 회의 결과 다음 <표 V-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가지표로서의 적합성이 낮게 나타난 ‘성별영향평가 과제수’, ‘여성시민NGO 단체 참여 노력도’, ‘주요부서 여성 공무원 배치 실적’의 평가지표를 ‘성 주류화 확산’ 영역에서 삭제하였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 추진 노력도’는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환경변화를 고려해 볼 때 필요한 평가지표

표 V-11 '성 주류화의 확산' 영역의 평가지표 설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 성 주류화의 확산	성별영향평가	· 내용평가
		· 평가 결과의 환류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 (직급별) 교육 이수 비율
	정책 과정의 여성 대표성	·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
	성평등 정책 조정기구 운영	· 부서간 협의 노력도
성별 분리 통계	· 보고 통계의 성별 분리 정도	
성인지 예산	· 성인지 예산 추진 노력도	

라고 판단하여 설문조사 결과 적합성이 낮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삭제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6개의 평가항목과 8개의 평가지표로 '성 주류화의 확산'영역을 설정하였다.

## ② 여성정책추진 역량 강화

'여성정책추진 역량 강화'영역은 다음 <표 V-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3개의 평가항목(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여성관련 예산 적절성, 여성관련 정보제공)으로 구성된다. 각 평가지표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전문가 및 자치구 담당자들에게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여부'에 대한 응답자 전원(100.0%)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관련 정보제공 항목의 '여성 홈페이지 관리 노력도'와 '여성 홈페이지 이용실적'에 대한 평가지표는 다른 평가지표에 비해 적합하다고 응답한 수가 적었다.

▮ 표 V-12 ▮ '여성정책추진 역량 강화' 영역 평가지표의 적합성 검토 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적합성(%)		기타 의견
			O	X	
1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여부	100.0	0	-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간 여성정책 사업계획의 적절성	91.8	8.2	
2	여성관련 예산 적절성	여성전담소속부서의 예산 비율	79.6	20.4	-
		여성정책전담팀의 예산 비율	80.9	19.1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88.5	11.5	
3	여성관련 정보제공	여성홈페이지 관리 노력도	68.8	31.3	· 여성 홈페이지 홍보 실적 추가 · 여성관련 다양한 홍보 사업도 함께 평가 · 여성 홈페이지 외에 홍보 노력 (이메일, 정보지 발송 등)
		여성홈페이지 이용실적	70.2	29.8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성정책 추진 역량 강화의 평가지표를 정리하면 다음 <표 V-13>과 같다.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계획수립과 계획내용의 적절성이 평가지표로 인정되었다. 여성관련 예산 적절성과 관련하여, 조사결과가 완벽하게 응답자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예산은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동인(動因)이라는 점에서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관련 정보제공'항목의 평가지표인 '여성홈페이지 관리 노력도', '여성홈페이지 이용실적'은 이미 자치구마다 여성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평가지표로 설정하기에는 변별력이 낮기 때문에 자치구 담당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적합성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두 개의 평가지표를 포함한 ‘여성관련 정보제공’항목은 ‘여성정책추진 역량 강화’영역에서 삭제하였다. 최종적으로 2개의 평가항목과 4개의 평가지표로 ‘여성정책추진 역량 강화’영역을 설정하였다.

표 V-13 | ‘여성정책추진 역량 강화’ 영역의 평가지표 설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2.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여부
		· 사업계획의 적절성
	여성관련 예산 적절성	· 여성정책 부서 및 팀의 예산 비율
		· 여성발전기금 목표달성도

### ③ 양성평등문화 확산

‘양성평등문화 확산’영역은 다음 <표 V-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2개의 평가항목(시민 양성평등 증진노력, 여성주간 사업 운영)으로 구성된다. 각 평가지표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전문가 및 자치구 담당자들에게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양성평등의식 교육 실적’에 대한 응답자 전원(100.0%)이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V-14 | ‘양성평등문화 확산’ 영역 평가지표의 적합성 검토 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적합성(%)		기타 의견
			O	X	
1	시민 양성평등 증진노력도	양성평등의식 교육 실적	100.0	0	· 교육강사에 대한 평가(업적, 경력 등) · 실적만이 아닌 내용평가 필요
		양성평등증진 사업 실적	92.3	7.7	
2	여성주간 사업 운영	내용평가	94.1	5.9	· 여성 참여도 및 만족도 평가 · 자발적으로 참여를 위한 홍보 실적 · 사업 종료 후 설문조사 등 차년에 개선여부 장치 등
		만족도 평가	80.9	19.1	

이러한 평가지표의 적합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의 회의 결과 다음 <표 V-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3개의 평가항목과 3개의 평가지표로 ‘양성평등문화 확산’영역을 설정하였다.

Ⅱ 표 V-15 Ⅱ '양성평등문화 확산' 영역의 평가지표 설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4.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주간 사업 운영	· 내용평가
		· 만족도 평가
	시민 양성평등 증진 노력도	· 양성평등의식 교육 실적
		· 양성평등증진 사업 실적

④ 여성경제(활동) 능력 향상

'여성경제(활동) 능력 향상'영역은 다음 <표 V-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3개의 평가항목(교육·훈련, 취·창업, 여성경제 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노력도)으로 구성된다. 각 평가지표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전문가 및 자치구 담당자들에게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합하다고 응답하였으나, 몇몇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합하다고 응답한 수가 적게 나타났다. 특히 '창업 실적(76.0%)'과 '취업 실적(80.0%)'에 대한 평가지표에서 적합하다고 응답한 수가 적게 나타났다.

Ⅱ 표 V-16 Ⅱ '여성경제(활동) 능력 향상' 영역 평가지표의 적합성 검토 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적합성(%)		기타 의견
			O	X	
1	교육·훈련	교육 실적	96.1	3.9	· 계획 대비 실적을 평가항목으로 해야함
		훈련 실적	93.9	6.1	
2	취·창업	취업 실적	80.0	20.0	· 취업형태 또는 임금에 따라 구분해서 측정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등의 구분 측정 필요) · 계획 대비 실적 · 창업자의 사업 지속성 측정
		창업 실적	76.0	24.0	
3	여성경제 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노력도	내용평가	93.8	6.3	·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이용도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마당 실적 파악 등

이러한 평가지표의 적합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의 회의 결과 다음 <표 V-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2개의 평가항목과 4개의 평가지표로 '여성경제(활동) 능력 향상'영역을 설정하였다.

표 V-17 '여성경제(활동) 능력 향상' 영역의 평가지표 설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3. 여성경제 (활동) 능력 향상	교육 · 훈련	· 교육 · 훈련 실적
	여성경제 활동 참여 · 확대를 위한 노력도	· 내용 평가
	취 · 창업	· 취 · 창업 실적

⑤ 여성인권 및 복지향상

'여성인권 및 복지향상'영역은 다음 <표 V-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4개의 평가항목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방지 및 예방, 한부모 · 저소득 여성 복지 노력도, 장애여성 복지 향상 노력도, 여성결혼 이민자 복지향상 노력도)으로 구성된다. 각 평가지표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전문가 및 자치구 담당자들에게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합하다고 응답하였으나, 몇몇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합하다고 응답한 수가 적게 나타났다.

표 V-18 '여성인권 및 복지향상' 영역 평가지표의 적합성 검토 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적합성(%)		기타 의견
			O	X	
1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방지 및 예방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관련시설 점검실적	78.4	21.6	· 여성폭력 네트워크 협의체 평가 · 담당자 교육 참석 및 소진예방 관련 평가 · 타기관 및 지역시설과의 연계성 노력 평가 · 점검횟수 및 점검 결과 개선 실적 · 관리시설 수의 증가율 · 시설운용예산 증가율/인력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예방 및 방지 효과성 평가	90.0	10.0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사후관리 효과성 평가	72.3	27.7	
2	한부모 · 저소득 여성 복지 노력도	사업추진 실적	94.0	6.0	· 대상 여성의 참여도
		효과성 평가	81.6	18.4	
3	장애여성 복지향상 노력도	사업추진 실적	83.7	16.3	· 사업내용을 평가해야 함 · 참여도 파악 · 사업추진실적 제고를 파악 · 참여자의 설문조사 실시로 만족도 조사
		효과성 평가	72.9	27.1	
4	여성결혼 이민자 복지향상 노력도	사업추진 실적	92.0	8.0	· 사업내용 평가 ·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실적 ·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실적
		효과성 평가	83.7	16.3	

특히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사후관리 효과성 평가(72.3%)’, ‘장애여성 복지향상에 대한 효과성 평가(72.9%)’,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시설 점검실적(78.4%)’에 대한 평가 지표에서 적합하다고 응답한 수가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지표의 적합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의 회의 결과 다음 <표 V-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4개의 평가항목과 8개의 평가지표로 ‘여성인권 및 복지향상’영역을 설정하였다.

Ⅱ 표 V-19 Ⅱ ‘여성인권 및 복지향상’ 영역의 평가지표 설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5. 여성인권 및 복지향상	한부모·저소득 여성 복지 노력도	· 사업추진 실적
		· 효과성 평가(목표 달성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및 예방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시설 점검·결과 개선 실적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및 방지 효과성 평가
	여성결혼 이민자 복지향상 노력도	· 사업추진 실적
		· 효과성 평가
	장애여성 복지향상 노력도	· 사업추진 실적
		· 효과성 평가(만족도)

### ⑥ 일·가정 양립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영역은 다음 <표 V-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2개의 평가항목(맞춤형 보육시설 마련, 보육서비스 향상 노력도)으로 구성된다. 각 평가지표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전문가 및 자치구 담당자들에게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평가지표의 적합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의 회의 결과 다음 <표 V-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2개의 평가항목과 4개의 평가지표로 ‘일·가정 양립 지원’영역을 설정하였다.

표 V-20 '일·가정 양립 지원' 영역 평가지표의 적합성 검토 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적합성(%)		기타 의견
			O	X	
1	맞춤형 보육시설 마련	공공보육시설 확충 실적	93.6	6.4	· 24시간 보육시설 비율 · 보육시설 종사자 수 · 복지지원 내용 점검
		24시간 운영 보육시설 이용률	81.8	18.2	
2	보육서비스 향상 노력도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적	85.4	14.6	· 방과후 학교 지원 실적 · 교사 1인당 담당아동의 수 · 보육서비스 만족도 조사 · 보육교사의 성인지 관련 교육 이수율 · 보육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 참여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나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실적 등
		평가인증기관 확대 실적	89.6	10.4	

표 V-21 '일·가정 양립 지원' 영역의 평가지표 설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6. 일·가정 양립 지원	보육서비스 향상 노력도	·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적
		· 평가인증기관 확대 실적
	맞춤형 보육시설 마련	· 공공보육시설 확충 실적
		· 24시간 운영 보육시설 증감율

### 3.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모형

#### 1) 평가모형 개발의 방향

##### ① 중앙 및 서울시 여성정책의 시정목표와의 부합

중앙정부는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을 완료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요구증대, 가족관계와 개인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가족기능의 변화, 국제결혼, 취업이민 등 이주민 증가에 따른 다양한 문화수용요구에 따라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사회적 수용력 증대, 노동시장과 여성의 직업여건 변화, 분권화와 개방화 등을 새로운 여성정책 환경변화 요소로 고려하여 여성의 역량강화, 일과 생활의 조화, 다양성과 차이존중의 3대 전략목표를 제시하였다. 5대 정책과제

로 국가 운영에 주도적 참여, 여성의 복지와 인권강화,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돌봄의 사회적 분담, 사회통합과 평등문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정운영 4개년 계획(2006~2010)에서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세계 10위권의 경쟁력있는 도시를 정량적 비전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5가지의 시정방향울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여성정책을 포함한 부문으로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는 2대 중점과제, 7개 시책, 47개 단위사업으로 구성하고 연도별 정책지표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아동 및 청소년, 보건 위생의료서비스 관련 정책과제를 제외한,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여성경제력 강화, 사회참여 확대 및 평등문화 확산, 사회적 보호 필요 여성의 복지향상을 여성정책의 범주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범위와 밀접하게 연계된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치구 여성정책의 내용과 범위는 정부의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내용, 서울시정 4개년 계획과 연계되어 있다. 다만, 시정4개년 계획에 포함된 시책 가운데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와 아동복지서비스의 증진은 여성정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부의 기본계획이나 자치구 여성정책의 내용과 연계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정부-서울시-자치구의 여성정책 연계성은 자치구 여성정책의 내용이 상급정부 정책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외에 서울시는 민선4기 여성정책 브랜드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2010'(일명 여행 프로젝트 2010)을 수립하고 2007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여성정책의 목표가 된 '양성평등'을 넘어 여성의 관점과 경험을 도시정책 전반에 반영하여 여성들이 생활속에서 느끼는 불안·불편요소를 없애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여성친화적인 사회·문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실천적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② 변화하는 여성정책 환경의 반영

전통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수행되는 여성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여성' 대상에 초점을 둔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여성교실운영, 여성주간사업추진, 새마을부녀회, 여성단체 등 여성지도자 연수 지원, 모자보건 및 미혼모, 성폭력 피해자 예방교육,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등이 주요 사업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은 대상으로서 '여성'에 초점을 둘 뿐 아니라 정책의 성주류화 달성을 목표로 모든 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정책의 대상 범위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뿐 아니라 정책의 성 인지적 관점 반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추진실적을 여성정책 평가의 대상 범위로 포함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정책과정에서의 대표성 제고

중앙정부 여성정책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서울시 여성정책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자치구 여성정책
1. 국가 운영에 주도적 참여 1) 국가정책의 성 주류화 2) 성인지 예산제도 기반 확대 3) 공무원 성인지 교육 체계화	1. 여성 경제력 강화 - 여성인력개발 인프라구축 및 취·창업 확대 - 지역사회지원형 일자리 창출 - 여성 취·창업기업 박람회	1. 여성정책추진기반조성 - 위원회 여성위촉 확대 - 여성위원회 운영 - 여성관리직 확대 및 다양한 직무순환 보직 - 여성정책 전문성 향상 - 여성정책 홍보활성화 - 여성발전기금 조성
2. 여성의 복지와 인권강화 1) 여성의 건강 및 복지강화 2)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 실효성 제고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자활 지원 내실화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평등문화 확산 - 성인지 지표설정 및 향상 - 전문분야여성자원봉사단 육성·운영 - 여성단체활동 지원 및 여성발전기금 조성확대 -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활동강화 등	2. 여성경제활동지원 - 여성직업전문교육 실시 - 취·창업 지원 - 지역특성화사업 등
3.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1) 여성일자리 확대 2) 여성의 평생직업능력 개발 3) 여성근로자 차별해소 및 보호	3.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향상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여성 자활지원 - 가정·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사업 확대 등	3. 양성평등문화확산 - 여성주간사업추진 - 양성평등문화조성 - 문화사업지원 - 여성학강좌 운영 등
4. 돌봄의 사회적 분담 1) 보육 및 교육서비스 강화 2)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3) 일-가정 양립	4. 공보육 기반강화 및 보육서비스 확대 - 공공보육시설 확충 - 공공기관 내 보육시설 설치 - 저소득시민의 육아부담 경감 등	4. 여성사회참여지원 - 여성단체활동 지원 -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5. 사회통합과 평등문화 정착 1) 평등문화 확산 2) 다양성 존중과 사회적 통합 3) 여성교류협력 강화	5.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및 저출산 대책 추진 - 저출산 문제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 아이돌보미 운영 등 6.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 - 청소년 전용공간 확충 등 7.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 보호필요아동 건전 육성 등	5. 소외여성복지향상 - 여성보호시설 지원 - 여성장애인 복지 지원 -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6. 보육 및 아동서비스 향상 - 보육서비스 개선 - 보육시설 확충 - 출산양육비 지원 - 아동시설 및 급식 지원 등

〈그림 V-23〉 중앙 및 서울시-자치구 여성정책의 연계

는 여성위원, 관리자급 여성공무원 비율 증대를 위한 정책을 포함한다. 이는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자치구의 인사담당 부서의 업무임에도 자치구 여성정책의 주요 실적으로 빠뜨릴 수 없는 지표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에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참여하는 부서간의 협조체계 구축 및 이의 성과 등을 여성정책의 성과로 반영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 성별분리통계,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한 양성평등교육 등이 여성정책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평가의 대상이 점차 넓혀지고 있는데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는 이와 같은 여성정책 지표의 확대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 ③ 일관된 평가체계의 마련

2004년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가 시행되어온 이래 매해 평가지표 체계는 수정되어 왔다. 이와 같은 잦은 변경은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평가체계의 잦은 변동으로 인하여 여성정책의 추진이 어떻게 향상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성정책의 평가모형은 향후의 지표체계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성과를 추적하여 파악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평가모형이라 할지라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평가지표 혹은 평가항목의 변경을 가능케 함으로써 융통성과 일관성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모형

### (1) 여성정책 평가 목적

#### ① 서울시 및 자치구 여성정책 사업추진 실적 제고

‘측정하지 않으면 성과도 없다’는 경구가 말해주듯이 평가는 현재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사업의 추진성과를 높이고자 한다. 자치구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는 국·내외적인 여성정책의 환경변화에 따라 여성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해 그 추진실적을 평가함으로써 여성정책의 목적달성, 즉 성 평등의 실현이나 성주류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합리적인 인센티브 지급기준 제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는 서울시가 각 자치구별로 여성정책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서울시정의 방향을 유도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정책추진을 독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실적 및 성과지표를 통한 평가결과는 합리적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 ③ 자치구 여성정책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이제까지 여성정책의 발전은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실적과 성과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다(신경아, 2006). 따라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여성정책의 실재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그것은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시민의 요구에 대응적이지 못한 정책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시민의 욕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정부단위에서의 정책추진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평가를 통해서 여성시민들이 실제로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느끼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여성정책의 실질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기도 하다.

### (2) 평가의 주체 및 참여자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는 시행 첫 해인 2004년을 제외하고 이후 재단법인 서울여성(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사업실시 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에 의한 외부평가의 한계는 실제 정책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잘 모른다는 것인데 매해 평가를 거듭함에 따라 이러한 한계는 극복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최근에는 평가과정에서 평가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를 충분히 참여토록하고 있다. 이는 평가의 목적이 단지 현재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 상태보다 발전하기위해서 다음 단계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평가과정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를 위해 참여자는 평가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평가주체는 제3의 기관으로써 전문기관이 담당하지만 평가의 전 과정에 피평가자가 적극 개입하여 참여한다. 다음, 평가단계별로 평가 설계 단계에서는 평가의 직접적 이해관계자로서 피평가자, 여성 및 NGO단체, 여성정책 및 평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 틀을 마련하여 평가의 적용성 및 실현가능성을 높인다. 평가단계에서는 평가기관 및 피평가자가 주체가 되어 평가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평가단계에서 주요 참여자는 정책의 수혜자 혹은 정책의 이해당사자로서 일반시민, 여성 및 NGO 단체가 평가과정에 참여하여 여성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평가 후 단계는 평가결과를 다시 정책과정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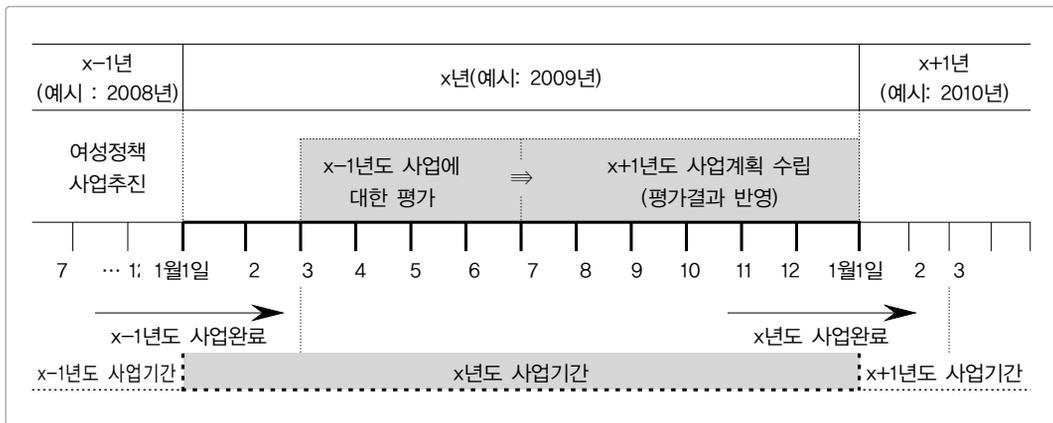
환류하는 단계로 주체는 피평가자이다.

표 V-22 평가주체와 평가단계에 따른 참여자

구 분	평가 설계	평가단계	평가 후 단계
주 체	평가기관	평가기관 피평가자	피 평가자
참여자	피평가자, 전문가, 여성 및 NGO 단체	일반시민, 여성 및 NGO 단체 등	관련부서, 전문가 등

### (3) 평가시기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는 연1회 실시한다. 평가의 시기에 대해서는 자치구 사업의 주기와 평가결과를 어떻게 환류 할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사업기간이 회계연도와 연동되어 있으므로 연1회 평가하는 경우, 사업이 종료된 이후 평가를 시작하면, 평가결과 도출과 그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통상 당해연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는 익년도 2월까지 회계정산이 이루어진 후인 3월부터 시작하여 7월까지 평가하고 그 결과는 7월 이후부터 진행되는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그림 V-24〉 평가시기 및 주기

### (4) 대상 및 내용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범위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 뿐 아니라, 자치구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을 얼마나, 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등 성 주류화 노력을 포함한다. 따라서

여성정책 평가의 대상범위가 광범위할 수 있다. 평가영역별로 사업의 담당부서와 관련부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V-23 자치구 여성정책 추진 관련 부서

구 분	주요 담당부서	관련부서
성 주류화의 확산	인사과, 총무과,	전부서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	총무, 기획·예산부서	가정복지과(여성정책팀)
여성경제능력 향상	가정복지과(여성정책팀)	지역경제 부서
양성평등문화 확산	가정복지과(여성정책팀)	문화체육 등 전부서
여성인권 및 복지향상	가정복지과(여성정책팀)	사회복지, 보건소
일-가정 양립지원	가정복지과	보육, 인사부서 등

### (5) 평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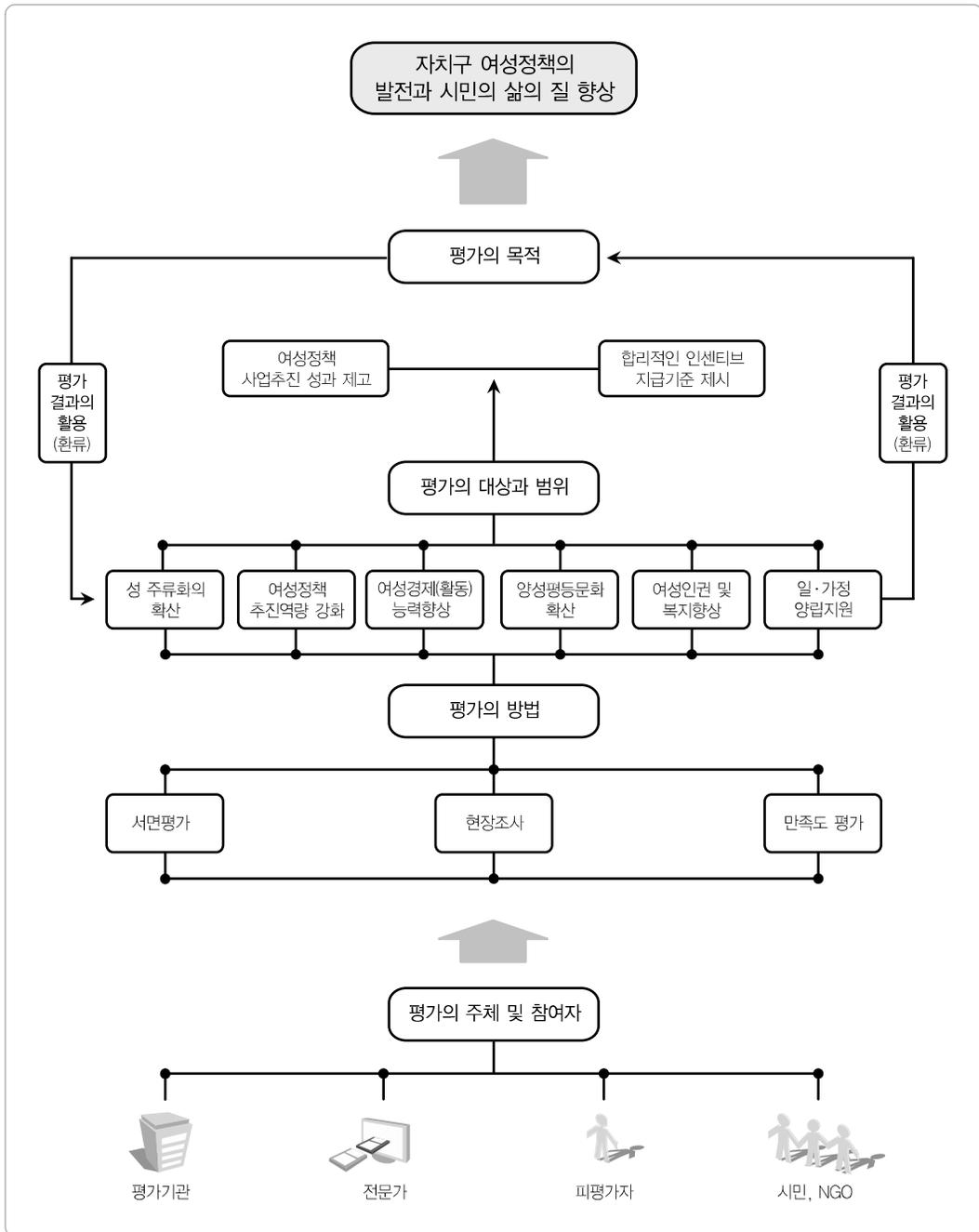
평가방법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7:3 혹은 8:2의 비율로 활용한다. 실적 및 증빙자료로 하는 서면평가는 정량평가와 전문가 내용평가인 정성평가를 포함한다. 여성주간사업 등과 같이 현장실사를 통해서 실시하는 참여자 만족도조사는 정성평가이다. 평가가 단편적이지 않고 입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며 이는 필수적으로 예산을 수반해야 한다.

표 V-24 평가유형에 따른 평가방법

평가유형	평가방법	자료 형태
서면평가	- 정량평가 - 정성평가	서면자료 증빙자료
현장평가	- 정성평가	관찰, 조사지
만족도 평가	- 정성평가	설문조사

### (6)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는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이다.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1차적으로 평가결과는 인센티브의 지급에 반영 된다. 다음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 자치구별 여성정책 사업을 개선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V-25〉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모형도

### 3) 평가지표 체계

#### (1) 평가영역

본 연구에서 자치구 여성정책의 평가영역으로 6개를 도출하였다. 성 주류화의 확산,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 여성경제활동 능력 향상, 양성평등 문화확산, 여성인권 및 복지향상, 일·가정 양립지원이다.

먼저, 성 주류화의 확산은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현재와 향후 여성정책의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여기에는 기존의 여성정책 추진역량에서 포함되고 있는 평가항목과 중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여성정책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성 주류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 영역을 확대해가는 방향설정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것은 '성 주류화'의 개념이다.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은 용어가 어렵고 일반시민이 보기에 이해가 어려운 한계가 있어 '주류 정책의 성 인지적 접근', '구정의 운영 및 정책의 양성평등 관점 통합' 등의 다양한 용어로 대체할 수 있겠으나 다양한 평가항목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 주류화의 확산'으로 쓰기로 하였다.

둘째,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 영역이다. 자치구 차원에서 여성정책 평가가 이루어진 이래로 추진역량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담당인력이나 예산의 확충 등 역량의 내실화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담당조직의 위상, 인력배분 및 전문성 등이 주요 평가항목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추진역량 강화영역의 평가내용이 '성 주류화의 확산' 영역과 중복될 소지가 있으나 역량영역에서는 주로 담당부서의 위상과 같은 조직과 인력측면에 초점을 두고, 여성정책의 지평을 확대하는 부서간 연계나 정책의 성 인지적 관점 반영을 위한 사업은 성주류화의 확산에 포함함으로써 중복은 최소화하였다.

셋째, 여성경제활동 능력 향상영역이다. 현재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이 미흡한 실정이다. 점차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관련 정책이나 시책이 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됨에 따라 향후 지역여성경제활동 관련 사업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넷째, 양성평등문화 확산 영역이다. 이 영역은 주로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에서 양성평등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사업과 그것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아니라 일반시민을 포함하여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사업을 포함한다.

다섯째, 여성인권 및 복지향상영역이다. 기존에는 소외계층이나 일반여성 혹은 가족복지향상으로 논의되었으나 우리나라의 사회환경도 결혼이민자 가족, 다문화 현상이 일반화됨에 따

라 이러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인권과 복지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방지뿐 아니라 다문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인권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미래지향적 목표를 담고 있다. 또한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복지대상으로 저소득·장애·노인 및 한부모가정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 가정 등 복지향상 사업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일·가정 양립지원 영역이다. 기존에는 보육서비스 향상영역에서 일·가정 양립지원으로 용어의 변화를 가져왔다. 여성정책에서 보육의 중요성은 여성이 출산·양육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참여 등 사회참여를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는데 있다. 따라서 보육의 사회화는 여성의 관점에서 일과 가정이 양립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다.

## (2) 영역별 평가항목

‘성주류화의 확산’영역에는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직·간접적 사업을 포함하였다.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성별분리통계, 성인지 예산, 성평등 정책 조정기구의 운영 등은 성 주류화를 위한 도구로서 평가항목에 포함하였다.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은 기존에 양성평등문화 확산영역에 포함한 것이었으나, 공무원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함에 따라 성 주류화 확산영역에서 평가하기로 하였다. 정책과정의 대표성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포함하였다.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영역에는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과 정책수행예산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담당조직의 위상이나 인력의 전문성 등은 성 주류화의 확산 영역에서 평가하기로 하였다. ‘여성경제활동능력 향상’영역에는 크게 교육·훈련과 이로 인한 성과로서 취·창업 실적, 노력도로 평가항목을 구분하였다.

‘양성평등문화 확산’영역에는 여성주간 사업운영, 시민양성 평등 증진 노력도로 항목을 구분하였다.

‘여성인권 및 복지향상’영역은 복지대상별로 한부모·저소득 여성, 여성결혼이민자 복지, 장애여성 복지로 구분하고 인권에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및 예방에 포함시켰다.

‘일·가정 양립지원’영역에는 맞춤형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도로 평가항목을 구분하고 있다.

영역별 평가항목 및 지표체계는 다음 표와 같다. 6개 평가영역, 19개 항목, 31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Ⅱ 표 V-25 Ⅱ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체계 설정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 성 주류화의 확산	성별영향평가	· 내용평가 · 평가 결과의 환류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 (직급별) 교육 이수 비율
	정책 과정의 여성 대표성	·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
	성평등 정책 조정기구 운영	· 부서간 협의 노력도
	성별 분리 통계	· 보고 통계의 성별 분리 정도
	성인지 예산	· 성인지 예산 추진 노력도
	2.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여성관련 예산 적절성		· 여성정책 전담팀의 예산 비율 · 여성발전기금 목표달성도
3. 여성경제 (활동) 능력 향상		교육 · 훈련
	여성경제 활동 참여 · 확대를 위한 노력도	· 내용 평가
	취 · 창업	· 취 · 창업 실적
4.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주관 사업 운영	· 내용평가 · 만족도 평가
	시민 양성평등 증진 노력도	· 양성평등의식 교육 실적
		· 양성평등증진 사업 실적
5. 여성인권 및 복지향상	한부모 · 저소득 여성 복지 노력도	· 사업추진 실적 · 효과성 평가(목표 달성도)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방지 및 예방	·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관련 시설 점검 · 결과 개선 실적 ·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예방 및 방지 효과성 평가
	여성결혼 이민자 복지향상 노력도	· 사업추진 실적 · 효과성 평가
	장애여성 복지향상 노력도	· 사업추진 실적 · 효과성 평가(만족도)
	6. 일·가정 양립 지원	보육서비스 향상 노력도
맞춤형 보육시설 마련		· 공공보육시설 확충 실적
		· 24시간 운영 보육시설 증감율
6개 평가영역	19개 평가항목	31개 평가지표

### (3) 영역별 배점

평가의 점수 배분과 관련하여 영역별 중요도의 정도를 전문가와 여성정책 실무자에게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영역별 비중이 가장 높은 영역은 역시 ‘성 주류화의 확산’ 영역으로 전문가와 담당자 모두 100점 만점의 약19%, 즉 19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여성정책추진역량 강화’로 평균 약 17%의 비중으로 나타났지만, 전문가의 경우 약 16%의 비중을, 담당자의 경우 약 19%의 비중을 두고 있어 전문가와 담당자의 의견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기반조성이나 추진역량의 비중은 낮추고 오히려 사업영역의 실질적인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영역으로 여성경제활동 향상, 양성평등문화확산, 여성인권 및 복지증진 영역은 전문가와 담당자 평균 약 16%의 비중으로 나타났으나 전문가와 담당자의 견해는 차이가 있다. 전문가들은 여성경제활동 능력 향상 영역의 비중을 다른 영역보다 낮게 여기고 있는 반면, 담당자들은 반대로 여성경제활동 능력향상 영역의 비중을 다른 평가 영역보다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치구 담당자들은 현실적으로 정부시책의 중요성이 여성경제활동 향상에 두고 있는 반면, 양성평등문화 확산이나 인권 및 복지 향상 영역은 의식개선 등 보다 추상적인 사업영역으로 인식하는 데서 오는 차이로 해석된다. 한편, 일·가정 양립지원 영역에서는 전문가 및 담당자 모두 약 15%의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영역이나 항목, 지표에 대한 배점은 평가 시점에서 평가영역의 중요도, 지표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있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표 V-26 ▣ 평가영역별 배점에 대한 전문가 및 담당자 조사결과

평가영역	설문응답자별 배점(점)			영역 내 평가항목 수
	전문가	담당자	전체	
1. 성 주류화의 확산	18,85	18,87	18,9	6
2.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	15,58	19,08	17,3	2
3. 여성경제(활동) 능력 향상	14,77	17,54	16,1	3
4. 양성평등 문화 확산	18,19	13,79	16,1	2
5. 여성인권 및 복지향상	17,31	14,62	16,0	4
6. 일·가정 양립 지원	15,70	15,50	15,6	2
합 계	100	100	100	19

☞ 설문 대상자 : 전문가(30명), 담당자(25명)



W

요약 및 결론



# VI 요약 및 결론

일반적으로 평가는 사후적 활동, 즉 사업이 추진되고 난 후에 사업의 계획과 추진, 그 결과 나타난 실적에 대한 가치판단을 회고적(retrospective)으로 살펴본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징은 평가의 단편만 설명해 줄 수 있을 뿐이다. 강조되어야 할 점은 평가는 사후적 활동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지침(guide-line)이 된다는 면에서 미래지향적, 전향적(prospective)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는 사후적이면서 동시에 시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미래지향적 활동이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평가체계가 일관성을 갖고 미리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모형 개발은 이와 같은 평가의 지속성을 전제로 자치구 여성정책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이루어진 여성정책 평가 연구 및 실제 사례를 분석·정리하고 특히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여성정책 업무 범위를 설정하여 이를 토대로 여성정책 평가의 체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활용된 방법은 선행연구의 검토 및 분석, 여성정책과 평가 관련 전문가, 그리고 실제 자치구 여성정책 실무자에 대한 심층조사를 활용하여 평가목적 설정과 평가체계를 구성하였다. 또한 평가요소-평가목적, 주체, 시기와 주기, 평가의 대상과 범위, 평가지표, 활용-에 대한 기존의 평가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목적은 궁극적으로 여성정책의 발전으로 인한 성 평등 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정책 평가를 통해서 정책의 성과를 높일 뿐 아니라 행정 운영상의 목적으로 합리적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제시하는데 있다.

둘째 평가의 대상과 범위로써 오늘날 변화하는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여성정책의 영역 설정에 있어서 '성 주류화의 확산'을 하나의 영역으로 도출하여 정책의 성 인지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 여성정책의 영역이 되어온 경제능력향상, 양성문화 확산, 여성인권 및 복지향상은 기존의 영역을 약간 수정·보완하였고, 보육은 일-가정 양립이라는 차원에서 수정·보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평가항목은 각 평가영역에 따라 핵심 항목을 구성하고 그에 따른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평가체계를 완성하였다.

성 주류화의 확산 영역의 평가항목은 크게 6개의 항목을 구성하였는데 성별영향평가, 공무

원의 성인지 교육, 정책과정의 여성대표성, 정책조정기구 운영, 성별분리통계, 성인지 예산을 포함한다. 여성정책추진역량에는 여성정책기본계획수립 및 여성관련 예산을 포함한다. 여성경제능력향상과 관련하여 교육·훈련실적, 취·창업 실적 및 노력도가 항목으로 포함되었다. 양성평등문화의 확산과 관련하여 여성주간사업 운영, 시민양성평등증진 노력도를, 여성인권 및 복지향상에는 한부모·저소득 여성복지 노력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방지 및 예방, 여성결혼이민자 복지향상 노력도, 장애여성 복지향상 노력도가 항목으로 포함되었다. 일·가정양립지원과 관련하여, 보육서비스 향상 노력도, 맞춤형보육시설 마련이 항목으로 포함되어 총 19개의 항목에 31개 평가지표로 평가체계를 설정하였다.

셋째, 평가의 방법과 관련하여 기존의 방식대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것이 제안되었는데 서면평가를 기본으로 하지만, 현장조사와 만족도 평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성과가 일반시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도록 하였다.

넷째, 평가의 주체 및 참여자와 관련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기관이 아닌 제3의 전문가 기관에서 수행하지만 실제 정책과정의 참여자를 다양하게 포함함으로써 전문가 평가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평가결과의 활용은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과 각 자치구의 향후 사업수립 및 추진의 개선을 위한 작업이다. 이는 다시 평가지표에 반영되어 전년대비 실적 증감율을 평가함으로써 자치구 여성정책의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4년 혹은 5년 동안 추진된 여성정책 평가의 성과가 자치구별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25개 자치구 모두 여성정책 평가에 참여하고 있지만, 몇몇 자치구는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는 곳도 있었다. 평가결과가 반드시 차년도 여성정책의 내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지급방식을 고안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자치구 여성정책의 평가모형은 그동안의 평가체계를 정리·보완한데 그쳤다.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의 한계를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정책 평가는 ‘여성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영역의 평가로써 정책평가의 평가 틀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책의 형성→집행→정책성과 도출 등 정책단계에 따른 평가지표 설정 및 평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의 형성단계에서는 주로 계획수립이나 목표 설정의 적절성이, 집행단계에서는 대상 선정이나 집행의 효율성에 초점이 두어질 수 있다. 또한 성과도출 단계에서는 목표달성도 측정으로 정책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정책 평가모형의 개발에서 이와 같은 정책평가 모형을 그대로 따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다른 정책과 달리 여성정책은 ‘여성’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모든 정책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복지, 노동, 평생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 보육 및 아동 등 다양한 정책영역을 걸쳐 있다. 따라서 여성정책

평가영역을 정책단계가 아닌 여성정책이 목표로 하는 성 평등 달성을 위한 하위 목표 영역을 모두 포함하였다. 또한 평가주기에 있어서 연1회 평가는 장기적인 성과지표 적용에 한계가 있고, 각 자치단체의 사업주기와 일치함으로써 연간 사업 추진실적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수행실적을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여성정책의 장기적 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정책영역별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도출하여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평가모형은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하여 이해하기가 용이한 장점이 있음에도 복잡한 현실을 구체적이고 특징적있게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모형 역시 이와 같은 일반적인 모형의 한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5개 자치구와 타 시·도 기초자치단체가 갖는 역량이나 지역적 특징, 또한 지역주민의 수요와 욕구는 다양하고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가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여성정책 평가체계와 모형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일정한 지침을 제시하였음에도 실제 활용과 관련해서는 모형을 보다 구체화하고 현실화 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적용 대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를 추가한다든지, 평가항목이나 지표에 해당 기관이나 지역의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항목을 제외하는 등의 현실화 혹은 구체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활동 자체보다는 평가결과의 지속적인 환류를 통해서 여성정책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의 활용에 좀 더 비중을 두어서 평가활동의 의미를 보다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앞의 문제점과 연계되는 것으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지표의 개발과 적용이 미흡한 점을 들 수 있다. 본 모형은 정부 및 서울시 여성정책과 자치구 여성정책 연계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는 평가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친 평가사업을 정리·분석하고 일관성있는 평가체계를 적용하기 위해서 전문가 및 자치구 여성정책 담당자가 공통적으로 중시하는 평가요소를 도출하여 평가지표 체계에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과 적용성을 높였으며, 일관된 지표체계를 제시하여 피평가자로 하여금 평가지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미리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은 이 연구의 의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경남여성회(1998), 경상남도 여성정책 평가, 경상남도
- 김경희(2005), 여성정책 관점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여성학, 21(2) : 255~287.
- 김경희(2006), 지방정부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서울시 여성정책 발전전략 세미나」  
Proceeding Paper(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여성) : 43~61.
- 김양희외(1998), 현정부의 '98년도 여성정책 평가, '새 정부의 여성정책' 공개대토론회 자료집,  
서울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 김양희·민무숙·장영아(2001),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여성부
- 김정자(1998), 사회정책분석모델에 관한 연구 - 여성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 이화여자대  
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재인·김성정·권미숙(2000), 여성정책 평가모형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김재인·정해숙·김원홍·김영옥·김영희·장혜경·김이선(1998), 현정부의 여성정책 평가 및  
새정부의 단기 여성정책 추진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재인·조연숙(2002), 여성정책 수행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재인·민무숙·윤덕경·조연숙·박경숙(2002), 경기도 여성정책 평가 및 정책과제 개발연구, 경기도.
- 박의경(2007), 참여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 정당의 공약에서 정책으로, 「여성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3(2): 159-187.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2008), 자치구 여성정책 및 기관의 평가사례를 통해 본 평가의 성과와  
과제, 여성정책기획세미나 「평가를 통한 여성정책 업그레이드(up-grade)」
- 손봉숙(1993), 제6공화국의 여성정책 평가, '6공의 여성정책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한국  
여성정치연구소) : 3-29
- 이은아·최성일·박지혜·정명희·김수희(2007), 경기도 시·군 여성정책 평가지표 개발, (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이은아·최성일·박지혜·백경재(2008), 경기도 시·군 여성정책 평가점검 및 보완책 연구,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이왕재(2006), 우리나라 여성정책 평가모형의 규범적 접근-여성정책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사회과학연구, (상명대 사회과학연구소), 22권: 1~20.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여성(2006), 2005서울특별시 자치구 여성정책종합평가 결과보고서
- 조연숙·고선주·조영미·이종환(2007), 2006서울특별시 자치구 여성정책평가결과보고서, 서  
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조연숙·고선주·조영미·윤혜준(2007), 2007서울특별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결과 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조우철·이왕재·박숙자·김선엽·김혜영·임영제(2004), 여성정책기본계획점검, 여성부.
- 정정길외(2004),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 정주택·김종래·김종호·문영세·이대희·이성우·조연숙·최영훈(2007), 정책평가론, 파주 : 법문사
- 한국여성단체연합(2002), 16개 광역 시도 여성정책 평가,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발전센터
- 한승준·주재현(2003),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업무의 표준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7(1): 119~141.
- 행정자치부(200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 행정자치부(2005),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종합평가를 통한 '05여성이 행복한 고을 선정사업 세부계획
- Nachmias, David(1979), Public Policy Evaluation: Approaches and Methods, New York: St. Martin's Press
- Vedung, Evert(1997), Public Policy and Program Evaluation, Transaction Publishers



# 부 록 I

〈 부 록 I 〉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지

〈부록 I-1〉 1차 설문지(담당자용, 전문가용)

〈부록 I-2〉 2차 설문지(통합)

<부록 1-1> 1차 설문지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설문지(담당자용)

?

가 「 가 」

가 .

가 , 가

가

2 (1 : 6/30~7/7, 2 : 7/14-7/21)

7 7 (月) 가

가 (\*

).

2008. 6. 30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본 조사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 연구평가팀장 조연숙(02-810-5021)
- 담당자 : 연구평가팀 정상기(02-810-5027, azraelizm@empal.com)
- 보내실 주소 : (156-808)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한숲길 22번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5층 연구평가팀

※ 다음 질문들은 기존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1. 선생님께서는 200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가 실제 여성정책의 목표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_\_\_ ②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기여한다    \_\_\_ ⑤ 크게 기여한다

1-1. 위의 질문을 좀 더 구체화 하여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는 다음 6개 여성정책 목표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영역의 목표	① 전혀 기여하지 못함	② 거의 기여하지 못함	③ 그저 그렇함	④ 약간 기여함	⑤ 크게 기여함
1)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					
2) 양성평등문화 확산					
3) 여성경제활동 지원					
4) 여성사회참여 지원					
5) 소외여성 및 일반여성 복지향상					
6)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 선생님께서는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평가지표 개발, 평가방법, 평가 시기 등 평가전반에 대해 제기한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_\_\_ ②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약간 반영되고 있다  
\_\_\_ ⑤ 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2-1. (위의 문항에서 '① 또는 ②'이라고 답한 경우),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

3. (평가내용)현재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는 선생님께서 담당하시는 여성정책 업무를 담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평가내용이 여성정책 업무를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
- \_\_\_ ② 평가내용이 여성정책 업무의 일부분을 담고 있지 못하다
- \_\_\_ ③ 평가내용이 여성정책 업무를 평가하는데 적절하다
- \_\_\_ ④ 평가내용이 여성정책 업무의 범위를 약간 초과하고 있다
- \_\_\_ ⑤ 평가내용이 여성정책 업무의 범위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

3-1. (위의 문항에서 '① 또는 ②'이라고 답한 경우)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가 여성정책 업무를 담고 있지 못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



---



---

3-2. (위의 문항에서 '④ 또는 ⑤'라고 답한 경우)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가 여성정책 업무를 초과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



---



---

4. (평가대상 기간) 2007년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경우, 평가대상 기간은 2006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평가대상 기간이 적절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 ①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_\_\_ ② 적절하지 못하다    \_\_\_ ③ 그저 그렇다
- \_\_\_ ④ 적절하다                    \_\_\_ ⑤ 매우 적절하다

4-1. (위의 문항에서 '① 또는 ②'이라고 답한 경우) 적절한 평가대상 기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시며, 또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대상 기간	
이유	

5. (평가결과의 활용) 귀 자치구의 '여성정책 평가' 결과는 차년도 여성정책 계획수립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습니까?

- \_\_\_ ①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_\_\_ ②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    \_\_\_ ⑤ 크게 반영되고 있다

5-1. (위의 문항에서 '① 또는 ②'이라고 답한 경우)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결과가 활용되고 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평가결과의 생산시기가 사업계획 수립을 마친 이후이기 때문에  
\_\_\_ ② 담당자의 잦은 이동 때문에  
\_\_\_ ③ 평가결과가 여성정책 사업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_\_\_ ④ 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유인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_\_\_ ⑤ 기타(구체적으로 )

5-2. (위의 문항에서 '④ 또는 ⑤'이라고 답한 경우)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 \_\_\_ ① 여성정책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_\_\_ ② 자치구 조례·규칙 제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  
\_\_\_ ③ 평가지표에 따른 여성정책 추진목표 설정시 활용  
\_\_\_ ④ 인센티브나 인사고과에 반영  
\_\_\_ ⑤ 기타(구체적으로 )

※ 다음 질문은 자치구 여성정책 담당팀 업무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을 읽으시고 해당되는 곳에 √표 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6. 다음 각 사업은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업무 중 법적 구속력 혹은 업무수행율이 높은 사업 목록입니다. 다음 사업목록 중 최근 2~3년간(2008년도 포함) 수행한 여부를 'O' 혹은 'X'로 표시하고, 구체적인 사업명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 사업목록	사업추진여부	사 업 명
1) 여성주간실시		
2)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3) 직장내 평등한 근로환경조성		
4)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5) 가정폭력문제 시책강구		
6) 여성자원봉사활동		
7) 편부모가정 지원시책 마련		
8) 영유아보육시설의 확대 등		
9)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및 운영지도 감독		
10) 여성정책관련조례규칙 정비		
11) 여성공직참여확대		
12) 남녀차별적 법령발굴개선		
13) 여성인력발전센터지도감독		
14) 여성직업능력개발		
15) 여성기업물품 우선구매		
16) 여성모성보호 확대		
17) 여성건강증진		
18) 일본위안부 생활안정지원		
19) 여성복지법인 운영		
20) 여성회관 등 설치, 운영		
21) 여성보호시설 설치, 운영		
22) 여성상담소설치, 운영		
23) 요보호여성을 위한 복지시설 설치 운영		
24) 여성복지상담소 설치, 운영		
25) 여성1366지원		
26) 여성취업정보센터 운영		
27) 직장, 가정양립지원체제 확립		
28) 방과후 아동지도사업확산		
29) 아동보호시설설치, 운영지도		
30) 보육정보센터 운영		

6-1. 위 사업목록 이외에 여성정책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으시면 사업명과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적어 주십시오.

그 밖에 사업명	사업내용

6-2.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따라 여성정책 사업목록에 추가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나는 대로 적어주십시오.

7. 여성정책의 영역은 다음과 같이 크게 6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이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② 거의 적절하지 못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적절하다   
  ⑤ 매우 적절하다

- |                     |                  |
|---------------------|------------------|
| 1)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     | 2) 양성평등문화 확산     |
| 3) 여성경제활동 지원        | 4) 여성사회참여 지원     |
| 5) 소외여성 및 일반여성 복지향상 | 6) 보육 및 아동서비스 향상 |

7-1. 만약 7번 문항에서 '①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또는 '② 거의 적절하지 못하다' 라고 응답한 경우, 삭제되거나 기존 6개 영역 외에 추가되어야 할 영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되어야 할 영역 : \_\_\_\_\_
- \_\_\_\_\_
- 삭제되어야 할 영역 : \_\_\_\_\_
- \_\_\_\_\_

※ 다음은 6개 영역의 '평가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으시고 해당하는 곳에 'O' 또는 'X'로 기입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평가내용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다음은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 영역의 평가내용을 나열한 것입니다. 평가내용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시어 'O' 또는 'X'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적합, ×-부적합)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

기존의 평가내용	적합성 여부	기존의 평가내용	적합성 여부
1) 각종위원회여성참여율 제고		11) 여성발전기본조례제정여부	
2) 협력체계 구축		12) 여성위원회운영	
3) 성별영향평가의 활성화		13)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여부	
4) 여성관련 정보제공		14) 여성관련예산 적절성	
5) 여성정책추진참여		15) 기관장 관심도	
6)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16) 여성정책발전연구	
7) 여성관리직공무원확대		17) 조직의 위상	
8) 정책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18) 인력의 전문성	
9) 창의시정 및 여성 정책참여		19) 공무원의 성인지성 향상	
10) 제도정비 실적		20) 여성발전기금	

기타 포함되어야 할 평가내용:

9. 다음은 '양성평등문화 확산' 영역의 평가내용을 나열한 것입니다. 평가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시어 'O' 또는 'X'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

기존의 평가내용	적합성 여부	기존의 평가내용	적합성 여부
1) 여성주간사업추진		5) 공무원양성평등사업	
2) 여성학강좌운영		6) 시민양성평등사업	
3) 성희롱교육추진실적		7) 여성친화적문화조성	
4) 남녀차별신고센터운영		8) 양성평등교육운영	

기타 포함되어야 할 평가내용:

10. 다음은 '여성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평가내용을 나열한 것입니다. 평가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시어 'O' 또는 'X'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경제활동 지원**

기존의 평가내용	적합성 여부	기존의 평가내용	적합성 여부
1) 여성기업제품구매실적		4) 여성인적자원개발실적	
2) 여성기업지원		5) 교육·훈련실적	
3) 취업지원실적		6) 창업지원실적	

기타 포함되어야 할 평가내용:

11. 다음은 '여성사회참여 지원 영역'의 평가내용을 나열한 것입니다. 평가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시어 'O' 또는 'X'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사회참여 지원**

기존의 평가내용	적합성 여부	기존의 평가내용	적합성 여부
1) 지역여성단체 관리 및 지원		3) 지역여성사회참여 활성화	
2) 자원봉사활동 지원		4) 지역여성 육성·발굴	

기타 포함되어야 할 평가내용:

12. 다음은 '소외여성 및 일반여성의 복지향상' 영역의 평가내용을 나열한 것입니다. 평가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시어 'O' 또는 'X'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외여성 및 일반여성의 복지향상**

기존의 평가내용	적합성 여부	기존의 평가내용	적합성 여부
1) 여성복지상담소 운영		5) 성폭력 · 가정폭력	
2) 모성보호여성건강 지원		6) 성매매예방 및 방지	
3) 한부모가정, 저소득여성, 장애인등 소외여성복지 향상		7) 가족복지향상	
4) 가족지원관련 인프라 구축		8) 출산 지원	

기타 포함되어야 할 평가내용:

13. 다음은 '보육 및 아동서비스 향상' 영역의 평가내용을 나열한 것입니다. 평가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시어 'O' 또는 'X'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 및 아동서비스 향상**

기존의 평가내용	적합성 여부	기존의 평가내용	적합성 여부
1) 보육시설지도 · 점검		5) 보육시설 서비스개선	
2) 안전사고예방노력		6)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3) 4대 보험 가입여부		7) 맞춤형보육시설 확충	
4) 보육업무 추진			

기타 포함되어야 할 평가내용:

※ 다음은 설문 작성자(여성정책 평가업무 담당 팀장 및 담당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14. 선생님께서는 현재 업무를 담당하게 된 기간은?

\_\_\_① 6개월 미만

\_\_\_② 6개월-1년 미만

\_\_\_③ 1-2년 미만

\_\_\_④ 2년 이상

15. 선생님께서는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를 몇 번 받아보셨습니까?

\_\_\_① 전혀 없음

\_\_\_② 1번

\_\_\_③ 2번

\_\_\_④ 3번 이상

16. 선생님의 직급은? ( 급)

\*\*\*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설문지(전문가용)

?

가 「 가 」

가 .

‘ 가 ’

가

가

2 (1 : 6/30~7/7, 2 : 7/14~7/21)

7 7 (月) 가

가

(\*)

).

2008. 6. 30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본 조사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 연구평가팀장 조연숙(02-810-5021)
- 담당자 : 연구평가팀 정상기(02-810-5027, azraelizm@empal.com)
- 보내실 주소 : (156-808)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한숲길 22번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5층 연구평가팀

※ 다음 물음은 여성정책 평가의 목적을 확인하고 평가의 방향설정을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을 읽으시고 생각나는 대로 솔직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선생님께서는 여성정책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중요함                       ② 약간 중요함                       ③ 그저 그러함  
 ④ 거의 중요치 않음                       ⑤ 전혀 중요하지 않음

2. 정책평가는 그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여성정책 평가의 초점을 다음 평가유형 중 무엇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상대적으로 중요한 평가가 무엇인지 한 가지에 √표 해 주십시오)

- ① 목표달성도 평가                       ② 사업추진 실적 평가  
 ③ 사업수혜자 만족도 평가                       ④ 능률성 평가  
 ⑤ 광범위한 체계 구성요소 평가(목표설정, 정책과정, 정책결과 등 포괄적 평가)  
 ⑥ 기타(구체적으로 )

3. 여성정책 평가의 범위는 어디까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예시 가운데서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 하여 주십시오.

- ① 법 및 조례에서 정한 여성정책 사업  
 ②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사업  
 ③ 가족(보육, 아동, 청소년) 정책 담당부서의 사업  
 ④ 정책 전반의 성 주류화 사업  
 ⑤ 기타(구체적으로 )

3-1. 여성정책 평가에 각 자치구의 성 주류화 추진실적(예: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의 시행 등)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



---



---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성정책의 차별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여성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



---



---

5. (평가참여자)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참여자는 평가기관(평가자), 피평가자, 연구자 등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 여성단체 및 시민 등 다양합니다. 다음 평가과정에서 다음 참여자가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생님의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참여자	주요 역할	
	평가 설계 단계	평가실시 단계
1) 평가자(평가주체)	예시 : 평가 설계 기획	예시 : 평가실시 전반에 대한 관리
2) 피평가자		
3) 관련 전문가		
4) 여성단체 혹은 NGO		
5) 일반시민		

※ 다음 물음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여성정책 평가의 체계를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뿐 아니라 장래 여성정책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영역과 항목  
 설정에 관해 선생님의 고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6. 기존의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사업내용이나 목록을 그룹화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6개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구분이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매우 적절함                      \_\_\_ ② 약간 적절함                      \_\_\_ ③ 그저 그러함  
 \_\_\_ ④ 거의 적절하지 못함            \_\_\_ ⑤ 전혀 적절하지 못함

- |                     |                  |
|---------------------|------------------|
| 1)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     | 2) 양성평등문화 확산     |
| 3) 여성경제활동 지원        | 4) 여성사회참여 지원     |
| 5) 소외여성 및 일반여성 복지향상 | 6) 보육 및 아동서비스 향상 |

6-1. 만약 5번 문항에서 '④ 거의 적절하지 못함' 또는 '⑤ 전혀 적절하지 못함' 이라고 응답한 경우, 삭제되거나 기존 6개 영역 외에 추가되어야 할 영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되어야 할 영역 : \_\_\_\_\_  
 \_\_\_\_\_
- 삭제되어야 할 영역 : \_\_\_\_\_  
 \_\_\_\_\_

7. 이상과 같이 여성정책의 평가대상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평균 지표수는 74개 정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피평가자 평가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자치구 여성정책의 성과를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평가지표 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30개 미만                      \_\_\_ ② 30 ~ 39개                      \_\_\_ ③ 40 ~ 49개  
 \_\_\_ ④ 50 ~ 59개                      \_\_\_ ⑤ 60개 이상

※ 다음은 6개 영역의 '평가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으시고 해당하는 곳에 'O' 또는 'X'로 기입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평가내용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다음은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 영역의 평가내용을 나열한 것입니다. 평가내용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시어 'O' 또는 'X'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적합, ×-부적합)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

기존의 평가내용	적합성여부			기존의 평가내용	적합성여부		
	상	중	하		상	중	하
1) 각종위원회여성참여율 제고				11) 여성발전기본조례제정여부			
2) 협력체계 구축				12) 여성위원회운영			
3) 성별영향평가의 활성화				13)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여부			
4) 여성관련 정보제공				14) 여성관련예산 적절성			
5) 여성정책추진참여				15) 기관장 관심도			
6)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16) 여성정책발전연구			
7) 여성관리직공무원확대				17) 조직의 위상			
8) 정책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18) 인력의 전문성			
9) 창의시정 및 여성 정책참여				19) 공무원의 성인지성 향상			
10) 제도정비 실적				20) 여성발전기금			

기타 포함되어야 할 평가내용 :

9. 다음은 '양성평등문화 확산' 영역의 평가내용을 나열한 것입니다. 평가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시어 'O' 또는 'X'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

기존의 평가내용	적합성여부			기존의 평가내용	적합성여부		
	상	중	하		상	중	하
1) 여성주간사업추진				5) 공무원양성평등사업			
2) 여성학강좌운영				6) 시민양성평등사업			
3) 성희롱교육추진실적				7) 여성친화적문화조성			
4) 남녀차별신고센터운영				8) 양성평등교육운영			

기타 포함되어야 할 평가내용 :

10. 다음은 '여성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평가내용을 나열한 것입니다. 평가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시어 'O' 또는 'X'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

기존의 평가내용	적합성여부			기존의 평가내용	적합성여부		
	상	중	하		상	중	하
1) 여성기업제품구매실적				4) 여성인적자원개발실적			
2) 여성기업지원				5) 교육·훈련실적			
3) 취업지원실적				6) 창업지원실적			

기타 포함되어야 할 평가내용 :

11. 다음은 '여성사회참여 지원' 영역의 평가내용을 나열한 것입니다. 평가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시어 'O' 또는 'X'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사회참여 지원**

기존의 평가내용	적합성여부			기존의 평가내용	적합성여부		
	상	중	하		상	중	하
1) 지역여성단체 관리 및 지원				3) 지역여성사회참여 활성화			
2) 자원봉사활동 지원				4) 지역여성 육성·발굴			

기타 포함되어야 할 평가내용 :

12. 다음은 '소외여성 및 일반여성의 복지향상' 영역의 평가내용을 나열한 것입니다. 평가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시어 'O' 또는 'X'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외여성 및 일반여성의 복지향상**

기존의 평가내용	적합성여부			기존의 평가내용	적합성여부		
	상	중	하		상	중	하
1) 여성복지상담소 운영				5) 성폭력 · 가정폭력 ·			
2) 모성보호여성건강 지원				6) 성매매예방 및 방지			
3) 한부모가정, 저소득여성, 장애인등 소외여성복지 향상				7) 가족복지향상			
4) 가족지원관련 인프라 구축				8) 출산 지원			

기타 포함되어야 할 평가내용 :

13. 다음은 '보육 및 아동서비스 향상' 영역의 평가내용을 나열한 것입니다. 평가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시어 'O' 또는 'X'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외여성 및 일반여성의 복지향상**

기존의 평가내용	적합성여부			기존의 평가내용	적합성여부		
	상	중	하		상	중	하
1) 보육시설지도 · 점검				5) 보육시설 서비스개선			
2) 안전사고예방노력				6)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3) 4대 보험 가입여부				7) 맞춤형보육시설 확충			

기타 포함되어야 할 평가내용 :

14.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량평가의 경우 평가의 기준이 분명하여 객관성이 높은 반면 여성정책의 이념성이나 특성에 비추어 정량적으로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성평가를 통해 보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비중을 합이 100이 되도록 제시해 주십시오.

\_\_\_\_\_ : \_\_\_\_\_ = 100

(정량평가) : (정성평가)

14-1. 또 정성평가로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해 주십시오.

- \_\_\_ ① 여성정책 사업의 방향 설정
- \_\_\_ ② 여성정책 사업계획 수립 내용(추진체계, 사업내용 등)
- \_\_\_ ③ 여성정책 목표설정의 적절성 여부
- \_\_\_ ④ 자치구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
- \_\_\_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5. 자치구 여성정책의 평가결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16. 여성정책 평가모형의 구성요소는 평가목적, 평가주체, 평가내용, 평가시기, 평가방법 등입니다.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모형 설계를 위해 각 구성요소별로 꼭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1) 평가의 방향

---

2) 평가주체

---

3) 평가내용

---

4) 평가시기

---

5) 평가방법

---

※ 다음은 설문 작성자(전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17.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지표설정)에 대한 자문에 활용) 다양한 여성정책 분야 가운데 선생님의 주요 관심분야는 무엇입니까?

- |                 |                             |
|-----------------|-----------------------------|
| ___① 여성정책 일반    | ___② 성주류화(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등) |
| ___③ 여성의 경제활동   | ___④ 보육 및 아동서비스             |
| ___⑤ 여성의 사회참여   | ___⑥ 소외 여성 및 여성복지           |
| ___⑦ 기타(구체적으로 ) |                             |

\*\*\*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부록 1-2〉 2차 설문지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설문지

?

가 「 가 」

가

가

가

가

1

가 가

7 25(金) 가

가

가 (\*)

).

2008. 6. 30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본 조사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 연구평가팀장 조연숙(02-810-5021)
- 담당자 : 연구평가팀 정상기(02-810-5027, azraelizm@empal.com)
- 보내실 주소 : (156-808)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한숲길 22번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5층 연구평가팀

※ 다음은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모형'을 구성하기 위한 질문으로 평가의 구성요소에 따라 1차 설문조사를 정리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각 문항을 읽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1차 설문조사에서 '여성정책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5점 척도일 때, 평균 4.87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응답 내용	설문대상	전문가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0명
② 거의 중요치 않음		0명
③ 그저 그러함		0명
④ 약간 중요함		4명(12.9%)
⑤ 매우 중요함		27명(87.1%)
총 계		31명
평 균		4.87 *

\* '전혀 중요하지 않음'→1점, '거의 중요치 않음'→2점, '그저 그러함'→3점, '약간 중요함'→4점, '매우 중요함'→5점으로 계산하여 평균을 산출하였음.

1-1. 이와 같이 평가의 중요성을 전제하면서, 평가의 형식을 고려할 때 다음 중 어떠한 형태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현재와 같이 '여성정책 평가'만을 독자적으로 평가함
- \_\_\_ ② 여성정책 만을 별도로 떼어서 평가하기 보다는 자치구 평가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평가함
- \_\_\_ ③ 기타 의견(구체적으로 \_\_\_\_\_)

2. (평가참여자) 1차 조사결과로, 평가 설계단계와 평가 실시단계에서 제시된 다양한 참여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	평가설계 단계	평가실시 단계
일반시민	평가수요 제시	만족도조사 참여, 정책성과 확인
여성단체 및 NGO	지표타당성 및 공정성 검토, 이슈파악, 평가요소 도출 등	정책모니터링, 평가자로 참여, 만족도조사 참여, 정책성과 확인
관련 전문가	평가기획 설계, 평가지표 개발 및 선정, 타당성 검토	평가자로 참여, 정성평가, 결과해석과 개선방안 제시, 평가결과에 대한 컨설팅
피평가자	평가설계서 의견제시, 평가지표 점검, 평가가능성 사정, 설계의 타당성 점검 등	평가에 참여(자치구간 교차평가), 평가자료 제출

2-1. 이 가운데 특히 일반시민, 여성단체 및 NGO 등을 평가설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① 전혀 참여하지 말아야 함	② 거의 참여하지 말아야 함	③ 그저 그러함	④ 부분적으로 참여해야 함	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1) 일반시민					
2) 여성단체 및 NGO 등					

3. (평가지기) 여성정책 평가지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평가지기와 관련하여 그 밖에 고려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적어주십시오.

제안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대상기간은 1년으로 한다.</li> <li>- 평가지기는 사업이 완전히 끝나고 난 익년도(다음 해)4~5월이 좋다</li> <li>- 평가결과가 다음해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li> </ul>
그 밖에 고려사항	

4. (평가방법)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서면평가지 자치구 담당자간 교차평가 방식의 적절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②-----③-----④-----⑤  
 전혀 적절치 않음    적절치 않음    그저 그러함    약간 적절함    매우 적절함

※ 다음 물음은 여성정책 평가체계의 틀을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을 읽으시고 생각나는 대로 솔직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 다음은 1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영역(6개)을 수정한 초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6개영역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1), 각 영역의 정책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제시해 주십시오(2).

기 존 틀	수정(초안)	비고	타당성 여부(1)	정책목표(2)
1) 여성정책 추진 역량 강화	1) 성 주류화의 확산	신규		
2) 양성평등문화 확산	2) 여성정책추진 역량 강화	유지		
3) 여성경제활동 지원	3) 양성평등 문화 확산	유지		예시 : - 시민 평등교육 이수율 50%달성
4) 여성사회참여 지원	4)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수정		
5) 소외여성 및 일반여성 복지 향상	5) 여성인권 및 복지향상	수정		
6) 보육 및 아동 서비스 향상	6) 일·가정 양립 강화	수정		

\* '지역사회 여성참여 영역'은 '성 주류화'의 평가항목으로 통합함

6. 이들 각 영역의 중요도에 대한 배점을 차등하고자 할 때, 각 영역의 총합이 100%가 되도록 영역별 배점을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 존 틀	비 중
1) 성 주류화의 확산	
2)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	
3) 양성평등문화 확산	
4)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5) 여성인권 및 복지향상	
6) 일·가정 양립 강화	
총 계	100%

※ 다음은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지표'를 설정하기 위한 문항으로써, 1차 조사결과(전문가 및 담당자), 각 영역의 평가내용 가운데 중요하다고 응답한 항목을 다음의 분류 근거를 사용하여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질문을 읽으시고 생각나는 대로 솔직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Ⅱ 분류 근거 Ⅱ

##### • 전문가 설문조사

- 각 영역별 평가내용의 적합성 여부를 '상, 중, 하'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상(3점), 중(2점), 하(1점)로 점수를 부여하여 평균을 계산함. 즉 2.5점 이상은 '상위'로, 2.0-2.5점 사이는 '중위'로 정리함.

##### • 담당자 설문조사

- 각 영역별 평가내용의 적합성 여부를 'O' 또는 'X'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전체 설문 응답자 중 'O'라고 표기한 사람의 비율을 계산함. 즉 80% 이상은 '상위'로, 70-80% 사이는 '중위'로 정리함.

7. '성 주류화의 확산' 영역은 여성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별도의 영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각 항목을 평가지표화 하기 위한 지표 예시를 보시고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O' 또는 'X'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가지표 설정시 고려사항이나, 그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적합성 여부 (O, X)	기타 의견
1	성별영향 평가	성별영향평가 과제수		
		성별영향평가의 내용평가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환류 여부		
2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이수자 비율		
3	성별분리 통계	보고 통계의 성별분리 정도		
4	성인지 예산	성인지 예산 추진 노력도		
5	성평등정책 조정기구 운영	부서간 협의 노력도		
		여성·시민·NGO 단체 참여 노력도		
6	정책과정의 여성대표성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		
		주요부서 여성 공무원 배치 실적		
	기타 : 추가 항목에 대한 의견			

8.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 영역에 대한 1차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문대상 구분	전문가		자치구 담당자	
	내 용	근거	내 용	근거
상위	여성관련 예산 적절성	2.90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여부	100%
	공무원의 성인지성 향상 *	2.74	여성정책 추진 참여	97.7%
	성별영향평가의 활성화 *	2.71	여성관련 정보제공	93.2%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여부	2.65	정책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제고 *	88.6%
	기관장의 관심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여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 *	2.61	공무원의 성인지성 향상 *	86.4%
			여성위원회 운영	84.1%
			성별영향평가의 활성화 *	81.8%
			기관장의 관심도	
			협력체계 구축 *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창의시정 및 여성 정책참여		
중위	정책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제고 *	2.48	여성관리직 공무원 확대 * 인력의 전문성	79.5%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여부	2.39	여성정책발전 연구	77.3%
	여성관리직 공무원 확대 *	2.35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 *	75.0%
	여성발전기금		여성발전기금	72.7%
	여성위원회 운영	2.32	여성관련 예산 적절성	70.5%
	인력의 전문성			
	협력체계 구축 *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2.29		
	조직의 위상	2.19		
여성의 위상	2.16			
여성관련 정보제공	2.00			

\* '성별영향평가', '공무원의 성인지성 향상', '정책과정에 여성의 대표성'등 성 주류화 관련 항목은 '성 주류화의 확산' 영역에 모두 포함하였음

8-1. 전문가 조사 및 담당자 조사에서 비교적 점수가 높은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을 평가지표화 하기 위한 지표 예시를 보시고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O' 또는 'X'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가지표 설정시 고려사항이나,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적합성 여부 (O, X)	기타 의견
1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여부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간 여성정책 사업계획의 적절성		
2	여성관련 예산 적절성	여성전담소속부서의 예산 비율		
		여성정책전담팀의 예산 비율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3	여성관련 정보제공	여성홈페이지 관리 노력도		
		여성홈페이지 이용실적		
	기타 : 추가 항목에 대한 의견			

9. '양성평등문화 확산' 영역에 대한 1차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문대상 구분	전문가		자치구 담당자	
	내용	근거	내용	근거
상위	공무원 양성평등 사업 *	2.58	양성평등교육 운영	100%
			공무원 양성평등 사업 *	88.6%
			시민 양성평등 사업	
			여성주간 사업 추진	
			여성친화적 문화조성	86.4%
		성희롱 교육추진 실적 * *	81.8%	
중위	성희롱 교육추진 실적 * *	2.48	여성학 강좌 운영	77.3%
	시민 양성평등 사업	2.45		
	양성평등교육 운영	2.35		
	여성친화적 문화조성	2.26		
	남녀차별신고센터 운영	2.03		

\* '공무원 양성평등 사업'은 '성 주류화의 확산' 영역에 모두 포함하였음  
 \* \* '성희롱 교육추진 실적'은 '여성인권 및 복지향상' 영역에 모두 포함하였음

9-1. 전문가 조사 및 담당자 조사에서 비교적 점수가 높은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을 평가지표화 하기 위한 지표 예시를 보시고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O' 또는 'X'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가지표 설정시 고려사항이나,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적합성 여부 (O, X)	기타 의견
1	시민 양성평등 증진노력도	양성평등의식 교육 실적		
		양성평등증진 사업 실적		
2	여성주간 사업 운영	내용평가		
		만족도 평가		
	기타 : 추가 항목에 대한 의견			

10. '여성경제 활동 활성화' 영역에 대한 1차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문대상 구분	전문가		자치구 담당자	
	내용	근거	내용	근거
상위	여성 인적자원 개발 실적	2.74	교육·훈련 실적	95.5%
	취업지원 실적	2.68	여성 인적자원 개발 실적	84.1%
	교육·훈련 실적	2.65		
	창업지원 실적	2.55		
중위	여성기업 지원	2.45	취업지원 실적	75.0%

10-1. 전문가 조사 및 담당자 조사에서 비교적 점수가 높은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을 평가지표화 하기 위한 지표 예시를 보시고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O' 또는 'X'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가지표 설정시 고려사항이나,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적합성 여부 (O, X)	기타 의견
1	교육·훈련	교육 실적		
		훈련 실적		
2	취·창업	취업 실적		
		창업 실적		
3	여성경제 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노력도	내용평가		
		여성홈페이지 이용실적		
	기타 : 추가 항목에 대한 의견			

11. '여성인권 및 복지향상' 영역에 대한 1차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문대상 구분	전문가		자치구 담당자	
	내용	근거	내용	근거
상위	한부모 가정, 저소득 여성, 장애인 등 소외여성 복지 향상	2.70	한부모 가정, 저소득 여성, 장애인 등 소외여성 복지 향상	100%
	성폭력·가정폭력	2.58	성폭력·가정폭력	93.2%
			가족복지 향상	90.9%
			모성보호 여성건강 지원	88.6%
			성매매 예방 및 방지	84.1%
			가족지원관련 인프라 구축	81.8%
중위	성매매 예방 및 방지	2.45		
	모성보호 여성건강 지원	2.23		
	가족지원관련 인프라 구축	2.19		
	여성복지 상담소 운영	2.13		
	가족복지 향상			

11-1. 전문가 조사 및 담당자 조사에서 비교적 점수가 높은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을 평가지표화 하기 위한 지표 예시를 보시고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O' 또는 'X'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가지표 설정시 고려사항이나,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적합성 여부 (O, X)	기타 의견
1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방지 및 예방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관련시설 점검실적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예방 및 방지 효과성 평가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사후관리 효과성 평가		
2	한부모 · 저소득 여성 복지 노력도	사업추진 실적		
		효과성 평가		
3	장애여성 복지향상 노력도	사업추진 실적		
		효과성 평가		
4	여성결혼 이민자 복지향상 노력도	사업추진 실적		
		효과성 평가		
	기타 : 추가 항목에 대한 의견			

12. '일·가정 양립 강화' 영역에 대한 1차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문대상 구분	전문가		자치구 담당자	
	내용	근거	내용	근거
상위	맞춤형 보육시설 확충	2.58	보육시설 지도 점검	90.9%
			안전사고 예방노력	
			보육업무 추진	86.4%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맞춤형 보육시설 확충	81.8%	
중위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2.35	4대 보험 가입여부	70.5%
	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2.26		
	보육시설 지도·점검	2.06		

12-1. 전문가 조사 및 담당자 조사에서 비교적 점수가 높은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을 평가지표화 하기 위한 지표 예시를 보시고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O' 또는 'X'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적합성 여부 (O, X)	기타 의견
1	맞춤형 보육시설 마련	공공보육시설 확충 실적		
		24시간 운영 보육시설 이용률		
2	보육서비스 향상 노력도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적		
		평가인증기관 확대 실적		
기타 : 추가 항목에 대한 의견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다음은 설문대상자를 분류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_\_\_\_① 여성정책 전문가                      \_\_\_\_② 여성정책 담당자

\*\*\*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 부 록 II

### 〈부록 II〉 여성정책 평가를 위한 보고서 작성 매뉴얼

〈부록 II-1〉 성 주류화의 확산

〈부록 II-2〉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

〈부록 II-3〉 여성경제(활동) 능력 향상

〈부록 II-4〉 양성평등문화 확산

〈부록 II-5〉 여성인권 및 복지향상

〈부록 II-6〉 일·가정 양립 지원

## 〈부록 II-1〉 성 주류화의 확산

### Ⅱ 평가항목 1-1) 성별영향평가 Ⅱ

평가지표	1-1)-①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내용평가			
평가목표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해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일정한 지침과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하고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측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에서 실시한 성별영향평가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자치구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성별영향평가의 필요성, 성별영향평가의 방법,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기대효과 등)를 평가한다.</li> </ul> </li> <li>• 평가방법 : 정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성평가를 위한 지침(guide-lin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① 선정된 정책사업이 중요하며, 성별격차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서 성별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td> </tr> <tr> <td style="padding: 5px;">② 평가가 성별분리통계, 근거법령 및 지침분석, 수요분석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td> </tr> <tr> <td style="padding: 5px;">③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시한 정책대안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가?</td> </tr> </table> </li> </ul> </li> </ul>	① 선정된 정책사업이 중요하며, 성별격차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서 성별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② 평가가 성별분리통계, 근거법령 및 지침분석, 수요분석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③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시한 정책대안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가?
① 선정된 정책사업이 중요하며, 성별격차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서 성별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② 평가가 성별분리통계, 근거법령 및 지침분석, 수요분석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③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시한 정책대안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가?				
자료제출서식	※ 정성평가 지침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된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필요성</li> <li>– 성별영향평가의 방법(통계, 근거법령, 수요분석 등)</li> <li>– 평가지침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제시</li> <li>– 성별영향평가의 기대효과 및 정책제안</li> </ul>			
증빙자료	• 자치구에서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최종보고서 제출			

Ⅱ 평가항목 1-1) 성별영향평가

평가지표	1-1)-②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환류																				
평가목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성인지성을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실제 다음연도의 정책에 환류했는가를 평가한다.																				
측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에서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한 개선 실적에 대해 평가한다.</li> </ul> </li> <li>•평가방법 : 정량평가</li> <li>•산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환류 실적(개선 건수)</li> </ul> </li> </ul>																				
자료제출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제출 서식                             <p style="text-align: center;">〈표 1-1〉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환류 실적(개선 건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th> <th style="width: 30%;">성별영향평가</th> <th style="width: 30%;">성별영향평가 결과내용</th> <th style="width: 35%;">개선실적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총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환류 실적 : (         ) 건</td> </tr> </tbody> </table> </li> <li>•자료 작성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한 과제에서 몇 개의 개선 건 수가 도출될 수 있음</li> <li>－ 건 수는 일련의 개선사업 단위를 1건으로 인정함</li> </ul> </li> </ul>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내용	개선실적 내용	1				2				...				총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환류 실적 : (         ) 건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내용	개선실적 내용																		
1																					
2																					
...																					
총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환류 실적 : (         ) 건																					
증빙자료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한 개선 실적 자료 제출																				

Ⅱ 평가항목 1-2)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Ⅱ

평가지표	1-2)-①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이수 비율						
평가목표	공무원의 성인지 정책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인지 교육을 이수했는가를 평가한다.						
측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 전체 공무원 가운데 성인지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평가한다.</li> </ul> </li> <li>•평가방법 : 정량평가</li> <li>•산 식                     <math display="block">- \frac{\text{성인지 교육 이수 공무원 수}}{\text{자치구 전체 공무원 수}} \times 100</math> </li> </ul>						
자료제출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 식                     <p style="text-align: center;">〈표 1-2〉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이수 비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3%;">자치구 전체 공무원수 (a)</th> <th style="width: 33%;">성인지 교육 이수 공무원 수 (b)</th> <th style="width: 33%;">공무원 성인지 교육 이수 비율 (b/a) × 100</th> </tr> </thead> <tbody> <tr> <td>(        )명</td> <td>(        )명</td> <td>(        )%</td> </tr> </tbody> </table> </li> <li>•자료 작성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청 직원에 한함(동사무소 직원 제외)</li> <li>－ 교육은 공무원 교육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등 공무원 양성평등 전문기관에서 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실적에 한함</li> </ul> </li> </ul>	자치구 전체 공무원수 (a)	성인지 교육 이수 공무원 수 (b)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이수 비율 (b/a) × 100	(        )명	(        )명	(        )%
자치구 전체 공무원수 (a)	성인지 교육 이수 공무원 수 (b)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이수 비율 (b/a) × 100					
(        )명	(        )명	(        )%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지 관련 교육 이수자 통보 공문 사본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 공무원에게 성인지 교육을 이수했다고 확정·통보한 공문 사본 제출</li> </ul> </li> </ul>						

Ⅱ 평가항목 1-3) 정책 과정의 여성 대표성 Ⅱ

평가지표	1-3)-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						
평가목표	정책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비율 증감을 평가한다.						
측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 6급 이상 전체 공무원 가운데 여성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평가한다.</li> </ul> </li> <li>•평가방법 : 정량평가</li> <li>•산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th>\frac{\text{6급 이상 여성 공무원 수}}{\text{6급 이상 전체 공무원 수}} \times 100</math></li> </ul> </li> </ul>						
자료제출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 제출 서식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p>〈표 1-3〉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3%;">6급 이상 전체 공무원 수 (a)</th> <th style="width: 33%;">6급 이상 여성 공무원 수 (b)</th> <th style="width: 33%;">6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 (b/a) × 100</th> </tr> </thead> <tbody> <tr> <td style="height: 30px;">(    )명</td> <td style="height: 30px;">(    )명</td> <td style="height: 30px;">(    )%</td> </tr> </tbody> </table> </div> </li> <li>•자료작성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청 직원에 한함(동사무소 직원 제외)</li> <li>－ 일정시점일 기준 제시</li> </ul> </li> </ul>	6급 이상 전체 공무원 수 (a)	6급 이상 여성 공무원 수 (b)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 (b/a) × 100	(    )명	(    )명	(    )%
6급 이상 전체 공무원 수 (a)	6급 이상 여성 공무원 수 (b)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 (b/a) × 100					
(    )명	(    )명	(    )%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자치구의 직급별 여성공무원 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급 이상, 7급 이하 구분</li> </ul> </li> </ul>						

Ⅱ 평가항목 1-3) 정책 과정의 여성 대표성 Ⅱ

평가지표	1-3)-②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						
평가목표	성 주류화의 확산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를 통한 정책 과정의 여성 대표성을 확보했는가를 평가한다.						
측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의 각종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 가운데 여성 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평가한다.</li> </ul> </li> <li>•평가방법 : 정량평가</li> <li>•산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th>\frac{\text{여성 위촉직 위원 수}}{\text{전체 위촉직 위원 수}} \times 100</math></li> </ul> </li> </ul>						
자료제출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제출 서식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p>〈표 1-4〉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p>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80%;"> <thead> <tr> <th style="padding: 5px;">위촉직 위원 수 (a)</th> <th style="padding: 5px;">위촉직 여성 위원 수 (b)</th> <th style="padding: 5px;">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 (b/a) × 100</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td> </tr> </tbody> </table> </div> </li> <li>•자료작성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연직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에 한함</li> </ul> </li> </ul>	위촉직 위원 수 (a)	위촉직 여성 위원 수 (b)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 (b/a) × 100	(    )명	(    )명	(    )%
위촉직 위원 수 (a)	위촉직 여성 위원 수 (b)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 (b/a) × 100					
(    )명	(    )명	(    )%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구 내 각종 위원회별 위원 명단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 내 각종 위원회의 총 위원 중 여성위원(구분 표시)</li> </ul> </li> </ul>						

Ⅱ 평가항목 1-4) 성평등 정책 조정기구 운영 Ⅱ

평가지표	1-4)-① 부서간 협의 노력도																				
평가목표	성평등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부서간 협의·조정 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측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 내 부서 간 협의·조정 기구(협력추진 체계)를 구축 여부와 실적을 평가한다.</li> </ul> </li> <li>•평가방법 : 정성평가</li> <li>•산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조정 기구 구축 여부</li> <li>- 협의·조정 기구의 회의 실적(건수)</li> </ul> </li> </ul>																				
자료제출 서 식	<p style="text-align: center;">〈표 1-5〉 협의·조정 기구의 조직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100px; width: 100%;"></div> <p style="text-align: center;">〈표 1-6〉 협의·조정 기구의 회의 개최 건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th> <th style="width: 35%;">회의명</th> <th style="width: 20%;">회의일시</th> <th style="width: 40%;">참석자(소속)</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총 회의 개최 실적: (        ) 건</td> </tr> </tbody> </table>		회의명	회의일시	참석자(소속)	1				2				...				총 회의 개최 실적: (        ) 건			
	회의명	회의일시	참석자(소속)																		
1																					
2																					
...																					
총 회의 개최 실적: (        ) 건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의·조정 기구의 조직 구성 및 업무 분장 관련 자료 제출</li> <li>•협의·조정 기구에서 실시한 회의록(회의명, 회의일시, 참석자 명단 등) 제출</li> </ul>																				

Ⅱ 평가항목 1-5) 성별 분리 통계 Ⅱ

평가지표	1-5)-① 보고 통계의 성별 분리 정도																						
평가목표	성 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의 성별 분리 정도를 평가한다.																						
측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 홈페이지에 제시되는 성별분리 통계 실적을 평가한다.</li> <li>- 자치구의 여성 관련 통계집 발간 여부를 평가한다.</li> <li>- 자치구에서 발간되는 전체 통계자료 중 성별분리가 된 통계자료의 비율을 평가한다.</li> </ul> </li> <li>•평가방법 : 정량평가</li> <li>•산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를 통한 성별분리 통계 실적(건수)</li> <li>- 여성 관련 통계집 발간 여부 확인</li> </ul> <math display="block">\frac{\text{성별 분리된 통계자료 발간수}}{\text{전체 통계자료 발간수}} \times 100</math> </li> </ul>																						
자료제출서식	<p style="text-align: center;">〈표 1-7〉 성별분리통계 자료집 발간 여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th> <th style="width: 45%;">성별분리통계 자료집 명</th> <th style="width: 20%;">발간일자</th> <th style="width: 30%;">작성자 명(소속)</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표 1-8〉 성별분리 통계자료 발간 비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전체 통계지표 수(a)</th> <th style="width: 33%;">성별분리 통계지표 수 (b)</th> <th style="width: 34%;">성별분리 통계지표 비율 (b/a) × 100</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 )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body> </table>		성별분리통계 자료집 명	발간일자	작성자 명(소속)	1				2				....				전체 통계지표 수(a)	성별분리 통계지표 수 (b)	성별분리 통계지표 비율 (b/a) × 100	( )건	( )건	( )%
	성별분리통계 자료집 명	발간일자	작성자 명(소속)																				
1																							
2																							
....																							
전체 통계지표 수(a)	성별분리 통계지표 수 (b)	성별분리 통계지표 비율 (b/a) × 100																					
( )건	( )건	( )%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성별분리 통계 캡처 화면 파일 출력·제출</li> <li>•여성과 관련하여 발간된 통계집 제출</li> <li>•발간된 전체 통계자료 목록 및 성별분리 통계자료 제출</li> </ul>																						

Ⅱ 평가항목 1-6) 성인지 예산 추진 노력도 Ⅱ

평가지표	1-6)-① 성인지 예산 추진 노력도
평가목표	정책의 성별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자원 배분을 통해 재정 운용 효율성이 높이기 위한 성인지 예산 추진에 대한 노력도를 평가한다.
측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에서 성인지 예산을 추진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li> </ul> </li> <li>•평가방법: 정성평가</li> <li>•산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의 성인지 예산 추진에 대한 내용분석</li> </ul> </li> </ul>
자료제출 서 식	※ 구체적인 서식은 추후 고안
증빙자료	•성인지 예산 관련 자료 제출

〈부록 II-2〉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

Ⅰ 평가항목 2-1)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Ⅱ

평가지표	2-1)-①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여부										
평가목표	성 평등과 성 주류화 등 여성정책의 궁극적 목표달성을 위해서 자치구 차원에서 실천적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측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 차원에서의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평가한다.</li> </ul> </li> <li>•평가방법 : 정성평가</li> <li>•산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분석</li> </ul> </li> </ul>										
자료제출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제출 서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구 분</th> <th>해당여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사업방향과 목표</td> <td>목표설정 유무: 있음(    ), 없음(    )</td> </tr> <tr> <td>목표의 구체성 여부: 구체적(    ), 추상적(    )</td> </tr> <tr> <td>사업내용의 적절성</td> <td>매우적절(    ), 보통(    ), 매우부적절(    )</td> </tr> <tr> <td rowspan="2">전년도 사업결과의 반영여부</td> <td>목표의 상향조정 여부 : 그대로(    ), 상향(    ), 하향(    )</td> </tr> <tr> <td>신규사업 발굴 : 있음(    ), 없음(    )</td> </tr> </tbody> </table> </li> <li>•자료작성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연도 업무계획의 내용을 분석함</li> <li>－ 사업방향과 목표를 계량화하여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가?</li> <li>－ 사업내용이 성 평등을 달성하고 정책의 성 주류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가?</li> <li>－ 전년도 사업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는가를 평가함. 이와 같은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작성함</li> </ul> </li> </ul>	구 분	해당여부	사업방향과 목표	목표설정 유무: 있음(    ), 없음(    )	목표의 구체성 여부: 구체적(    ), 추상적(    )	사업내용의 적절성	매우적절(    ), 보통(    ), 매우부적절(    )	전년도 사업결과의 반영여부	목표의 상향조정 여부 : 그대로(    ), 상향(    ), 하향(    )	신규사업 발굴 : 있음(    ), 없음(    )
구 분	해당여부										
사업방향과 목표	목표설정 유무: 있음(    ), 없음(    )										
	목표의 구체성 여부: 구체적(    ), 추상적(    )										
사업내용의 적절성	매우적절(    ), 보통(    ), 매우부적절(    )										
전년도 사업결과의 반영여부	목표의 상향조정 여부 : 그대로(    ), 상향(    ), 하향(    )										
	신규사업 발굴 : 있음(    ), 없음(    )										
증빙자료	•자치구 여성정책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업무계획) 제출										

Ⅱ 평가항목 2-1)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Ⅱ

평가지표	2-1)-② 사업계획의 적절성
평가목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사업이 양성평등과 성 주류화의 달성을 위해 적절한지, 자치구 여성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 등 세부실천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측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의 연간 사업계획(목표설정이 적절한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적절한지 등)을 평가한다.</li> </ul> </li> <li>•평가방법 : 정성평가</li> <li>•산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분석</li> </ul> </li> </ul>
자료제출 서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성평가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정책 기본계획 및 서울시 중기계획과의 연계성</li> <li>－ 자치구별 여성정책 특성화 계획의 적절성</li> </ul> </li> <li>※ 사업방향과 목표 내용분석 작성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정책 사업 방향이 성 평등과 성 주류화를 지향하고 있는가?</li> <li>－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li> <li>－ 사업계획이 목표실현에 대한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있는가?</li> </ul> </li> </ul>
증빙자료	•자치구의 연간 사업계획서 제출

Ⅱ 평가항목 2-2) 여성관련 예산 적절성 Ⅱ

평가지표	2-2)-① 여성정책 전담팀의 예산 비율												
평가목표	여성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의지로서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가를 평가한다.												
측정지표	<p>•평가내용                      - 자치구의 총 예산 가운데 여성정책팀이 포함된 부서의 예산 및 전담팀의 예산액을 파악하고 그 비율을 평가한다.</p> <p>•평가방법 : 정량평가</p> <p>① <math>\frac{\text{여성정책 부서 예산}}{\text{자치구 총 예산}} \times 100</math></p> <p>② <math>\frac{\text{여성정책 전담팀 예산}}{\text{여성정책 부서 예산}} \times 100</math></p>												
자료제출 서식	<p>•자료제출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표 II-1〉 여성정책 전담팀의 예산 비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자치구 총 예산 (a)</th> <th style="width: 25%;">여성정책 부서 예산 (b)</th> <th style="width: 25%;">여성정책 전담팀의 예산 (c)</th> <th style="width: 25%;">예산 비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천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 )천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 )천원</td> <td>①총예산대비 여성정책부서 예산 비율( )%</td> </tr> <tr> <td></td> <td></td> <td></td> <td>②여성정책 전담팀예산 비율 ( )%</td> </tr> </tbody> </table>	자치구 총 예산 (a)	여성정책 부서 예산 (b)	여성정책 전담팀의 예산 (c)	예산 비율	( )천원	( )천원	( )천원	①총예산대비 여성정책부서 예산 비율( )%				②여성정책 전담팀예산 비율 ( )%
자치구 총 예산 (a)	여성정책 부서 예산 (b)	여성정책 전담팀의 예산 (c)	예산 비율										
( )천원	( )천원	( )천원	①총예산대비 여성정책부서 예산 비율( )%										
			②여성정책 전담팀예산 비율 ( )%										
증빙자료	<p>•당해연도 자치구 예산서 중 자치구 예산서 총괄표(추정예산 포함), 전담부서 및 여성전담팀의 예산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제출</p>												

Ⅱ 평가항목 2-2) 여성관련 예산 적절성 Ⅱ

평가지표	2-2)-② 여성발전기금 목표달성도						
평가목표	여성정책 예산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을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평가한다.						
측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에 대한 달성도로써 당해연도의 목표액 대비 달성 금액의 비율을 평가한다.</li> </ul> </li> <li>•평가방법 : 정량평가</li> <li>•산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th display="block">\frac{\text{당해연도 달성 금액}}{\text{당해연도 목표액}} \times 100</math></li> </ul> </li> </ul>						
자료제출 서 식	<p style="text-align: center;">〈표 II-2〉 여성발전기금 목표달성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당해연도 목표액 (a)</th> <th style="width: 33%;">당해연도 달성 금액 (b)</th> <th style="width: 33%;">여성발전기금 목표달성도 (b/a) × 100</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천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        )천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body> </table>	당해연도 목표액 (a)	당해연도 달성 금액 (b)	여성발전기금 목표달성도 (b/a) × 100	(        )천원	(        )천원	(        )%
당해연도 목표액 (a)	당해연도 달성 금액 (b)	여성발전기금 목표달성도 (b/a) × 100					
(        )천원	(        )천원	(        )%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발전기금 통장사본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융자기금에 적립하는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li> </ul> </li> </ul>						

〈부록 II-3〉 여성경제(활동) 능력 향상

Ⅲ-1) 교육·훈련 Ⅰ

평가지표	3-1)-① 교육·훈련 실적																																		
평가목표	여성의 경제(활동) 능력 향상 및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여성 교육훈련기관을 지원하여 교육·훈련한 실적을 평가한다.																																		
측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의 여성 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 참여 실적 및 수료 실적을 평가한다.</li> </ul> </li> <li>•평가방법 : 정량평가</li> <li>•산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 참여 실적</li> <li>－ 여성 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 수료 실적</li> </ul> </li> </ul>																																		
자료제출 서 식	<p>〈표 III-1〉 여성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 실적</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연번</th> <th style="width: 15%;">교육기관</th> <th style="width: 15%;">교육 프로그램</th> <th style="width: 15%;">교육기간</th> <th style="width: 15%;">참여자 수</th> <th style="width: 15%;">수료자 수</th> <th style="width: 15%;">지원액 (천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연번	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교육기간	참여자 수	수료자 수	지원액 (천원)	1							2							...						
연번	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교육기간	참여자 수	수료자 수	지원액 (천원)																													
1																																			
2																																			
...																																			
증빙자료	•교육기관별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위탁계약 공문																																		

Ⅱ 평가항목 3-2) 여성경제 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노력도 Ⅱ

평가지표	3-2)-① 여성경제 활동 참여·확대에 대한 내용평가																			
평가목표	여성의 경제(활동) 능력 향상 및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자치구의 노력도를 평가한다.																			
측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능력 향상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li> </ul> </li> <li>•평가방법 : 정성평가</li> <li>•산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경제(활동)능력 향상 및 경제활동 참여 노력에 대한 내용분석</li> </ul> </li> </ul>																			
자료제출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제출 서식</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5%;">사업명</th> <th style="width: 25%;">내용</th> <th style="width: 25%;">추진부서</th> <th style="width: 25%;">예산(천원)</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작성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경제활동참여를 높이기 위해 자치구에서 추진한 사업명을 기입함</li> <li>－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함</li> <li>－ 사업의 추진부서 및 예산을 천원단위로 기입함</li> </ul> </li> </ul>				사업명	내용	추진부서	예산(천원)												
사업명	내용	추진부서	예산(천원)																	
증빙자료	•각 사업별 결과보고서 제출																			

Ⅱ 평가항목 3-3) 취·창업 Ⅱ

평가지표	3-3)-① 취·창업 실적																												
평가목표	여성의 경제(활동)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취·창업 사업 참여자가 얼마나 취·창업했는가를 평가한다.																												
측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창업 사업에 참여한 사람 수 대비 취·창업한 사람 수를 평가한다.</li> </ul> </li> <li>•평가방법 : 정량평가</li> <li>•산 식                             <math display="block">\frac{\text{취·창업한 사람 수}}{\text{취·창업 사업에 참여한 사람 수}} \times 100</math> </li> </ul>																												
자료제출 서 식	<p style="text-align: center;">〈표 Ⅲ-〉 취·창업 비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사 업 명</th> <th colspan="4">실적</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참가자수 (a)</th> <th>취업자수 (b)</th> <th>창업자수 (c)</th> <th>계 (b+c)/(a)</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계</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사 업 명	실적				비 고	참가자수 (a)	취업자수 (b)	창업자수 (c)	계 (b+c)/(a)													계					
사 업 명	실적				비 고																								
	참가자수 (a)	취업자수 (b)	창업자수 (c)	계 (b+c)/(a)																									
계																													
증빙자료	•사업별 결과보고서 및 취·창업자 명부(성명, 전화번호 등)																												

〈부록 II-4〉 양성평등문화 확산

Ⅰ 평가항목 4-1) 여성주간 사업 운영 Ⅱ

평가지표	4-1)-① 여성주간 사업에 대한 내용평가								
평가목표	여성주간 사업이 여성의 연대의식과 자아의식을 향상하기 위한 적절한 사업이었던지를 평가한다.								
측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에서 실시한 여성주간 사업이 지역사회 양성평등문화를 확산시키고, 여성발전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평가한다.</li> </ul> </li> <li>•평가방법 : 정성평가</li> <li>•산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 여성주간 사업에 대한 내용분석</li> </ul> </li> </ul>								
자료제출서식	<p>※ 정성평가 지침 예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평가지침</th> </tr> </thead> <tbody> <tr> <td>사업구성의 적절성</td> <td>－다양한 여성의 요구 파악 후 사업계획 여부 －사업의 내용이 여성의 연대의식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td> </tr> <tr> <td>계획의 충실성</td> <td>－사업의 목표, 예산,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함</td> </tr> <tr> <td>사업결과 제시</td> <td>－사업 추진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참여인원, 예산집행내역, 사업추진결과 등)</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작성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대상은 매년 7월 ‘여성주간’과 관련하여 기획한 사업 및 그 추진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함</li> </ul> </li> </ul>	구 분	평가지침	사업구성의 적절성	－다양한 여성의 요구 파악 후 사업계획 여부 －사업의 내용이 여성의 연대의식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계획의 충실성	－사업의 목표, 예산,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사업결과 제시	－사업 추진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참여인원, 예산집행내역, 사업추진결과 등)
구 분	평가지침								
사업구성의 적절성	－다양한 여성의 요구 파악 후 사업계획 여부 －사업의 내용이 여성의 연대의식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계획의 충실성	－사업의 목표, 예산,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사업결과 제시	－사업 추진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참여인원, 예산집행내역, 사업추진결과 등)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구에서 실시한 여성주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li> <li>•그 외 여성주간 사업 관련 자료 제출</li> </ul>								

Ⅱ 평가항목 4-1) 여성주간 사업 운영 Ⅱ

평가지표	4-1)-② 여성주간 사업에 대한 만족도 평가
평가목표	시민들이 여성주간 사업을 통해 여성의 연대의식과 자아의식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를 참여자에게 직접 평가한다.
측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주간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만족도를 평가한다.</li> </ul> </li> <li>•평가방법 : 정성평가</li> <li>•산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 여성주간 사업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li> </ul> </li> </ul>
자료제출 서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족도 조사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내용</li> <li>- 사업의 진행</li> <li>- 사업의 성 평등 달성 정도 등</li> </ul> </li> </ul>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문조사 자료</li> </ul>

Ⅱ 평가항목 4-2) 시민 양성평등 증진 노력도 Ⅱ

평가지표	4-2)-① 양성평등의식 교육 실적												
평가목표	시민들의 양성평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한 사업과 시민의 호응도 등을 평가한다.												
측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 양성평등 의식 개선을 위한 사업과 시민의 호응도 평가</li> </ul> </li> <li>•평가방법 : 정량평가</li> </ul>												
자료제출 서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식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p>〈표 IV-1〉 시민 양성평등의식 사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사업명</th> <th style="width: 33%;">사업내용</th> <th style="width: 33%;">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총 사업건수</td> </tr> <tr> <td></td> <td></td> <td>총 참가자수</td> </tr> <tr> <td></td> <td></td> <td>총 예산</td> </tr> </tbody> </table> </div> </li> <li>•자료작성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시민, 어린이, 청소년 등 시민 전체의 성 평등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사업을 포함</li> <li>－ 자체예산 사업 및 기금사업을 포함함</li> </ul> </li> </ul>	사업명	사업내용	비 고			총 사업건수			총 참가자수			총 예산
사업명	사업내용	비 고											
		총 사업건수											
		총 참가자수											
		총 예산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 양성평등의식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li> <li>•사업참여자 등 관련 자료 제출</li> </ul>												

Ⅱ 평가항목 4-2) 시민 양성평등 증진 노력도 Ⅱ

평가지표	4-2)-② 양성평등증진 사업 실적												
평가목표	시민들의 양성평등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이 얼마나 수행되었는가를 평가한다.												
측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증진을 위해 수행된 사업을 평가한다.</li> </ul> </li> <li>•평가방법 : 정량평가</li> <li>•산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성평등증진 사업 실적</li> </ul> </li> </ul>												
자료제출 서 식	<p>〈표 IV-2〉 양성평등증진 사업 실적</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90%;">양성평등의식 관련 사업 명</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right;">총 사업 실적 : (         ) 건</td> </tr> </tbody> </table>		양성평등의식 관련 사업 명	1		2		3		...			총 사업 실적 : (         ) 건
	양성평등의식 관련 사업 명												
1													
2													
3													
...													
	총 사업 실적 : (         ) 건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 양성평등증진 관련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li> <li>•그 외 시민 양성평등증진 사업 관련 자료 제출</li> </ul>												

〈부록 II-5〉 여성인권 및 복지향상

Ⅰ 평가항목 5-1) 한부모·저소득 여성 복지 노력도 Ⅰ

평가지표	5-1)-① 한부모·저소득 여성 복지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																														
평가목표	자치구의 가족복지 향상을 위한 한부모·저소득 여성의 지원사업 실적을 평가한다.																														
측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 예산으로 추진한 한부모·저소득 가정지원사업 건수를 평가</li> </ul> </li> <li>•평가방법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li> <li>•산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저소득 가정지원 사업 실적(건수)</li> </ul> </li> </ul>																														
자료제출 서 식	<p style="text-align: center;">〈표 V-1〉 한부모·저소득 가정지원사업 실적</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th> <th style="width: 35%;">지원 사업 명</th> <th style="width: 20%;">주관부서</th> <th style="width: 20%;">사업기간</th> <th style="width: 20%;">예산(천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총 사업 실적 : (            ) 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비고</td> <td colspan="4">                     - 저소득 한부모 가족 가구수 : _____가구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예산 : _____천원                      - 가구당 지원예산액 : _____천원                 </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작성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은 정부보조사업 외에 자치구 자체예산으로 수행된 한부모가족 자체 지원사업을 의미함(단, 자치구 각종 기금사업은 포함함)</li> </ul> </li> </ul>		지원 사업 명	주관부서	사업기간	예산(천원)	1					2					...					총 사업 실적 : (            ) 건					비고	- 저소득 한부모 가족 가구수 : _____가구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예산 : _____천원 - 가구당 지원예산액 : _____천원			
	지원 사업 명	주관부서	사업기간	예산(천원)																											
1																															
2																															
...																															
총 사업 실적 : (            ) 건																															
비고	- 저소득 한부모 가족 가구수 : _____가구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예산 : _____천원 - 가구당 지원예산액 : _____천원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부모·저소득 여성 복지 관련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li> <li>•그 외 한부모·저소득 여성 복지 사업 관련 자료 제출</li> </ul>																														

Ⅱ 평가항목 5-1) 한부모·저소득 여성 복지 노력도 Ⅱ

평가지표	5-1)-② 한부모·저소득 여성 복지에 대한 효과성 평가
평가목표	한부모·저소득 가정의 여성에게 제공되고 있는 복지서비스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한다.
측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 연초 계획에 제시된 한부모·저소득 가정의 여성에 대한 지원서비스 대비 연간 제공한 서비스 실적으로 평가한다.</li> </ul> </li> <li>•평가방법 : 정성평가</li> <li>•산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저소득 여성 복지사업에 대한 내용분석</li> </ul> </li> </ul>
자료제출서식	<p>※ 정성평가 지침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초 목표치 대비 실적 달성 비율</li> <li>① 한부모 관련 사업 지원-취업지원, 자녀양육 지원, 교육 지원 여부 및 내용 평가, 참여율 및 실적 환류</li> <li>② 한부모, 저소득 여성복지에 대한 예산 비율과 예산 실행 여부</li> <li>③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도 만족도 및 사업의 적절성 여부를 참여자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li> </ul>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초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한부모·저소득 여성 복지사업의 목표 제출</li> <li>•연간 한부모·저소득 여성 복지사업 실적 제출</li> </ul>

Ⅱ 평가항목 5-2)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및 방지 효과성 평가 Ⅱ

평가지표	5-2)-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시설 점검·결과 개선 실적						
평가목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시설의 점검 결과가 실제 시설운영 개선에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측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시설의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 가운데 개선된 비율을 평가한다.</li> </ul> </li> <li>•평가방법 : 정량평가</li> <li>•산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th display="block">\frac{\text{개선 실적 건수}}{\text{점검 결과 전체 지적 건수}} \times 100</math></li> </ul> </li> </ul>						
자료제출 서 식	<p>〈표 V-2〉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시설 점검·결과 개선 실적</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3%;">점검 결과 전체 지적 건수 (a)</th> <th style="width: 33%;">개선 실적 건수 (b)</th> <th style="width: 33%;">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시설 점검·결과 개선 비율 (b/a) × 100</th> </tr> </thead> <tbody> <tr> <td>(    )건</td> <td>(    )건</td> <td>(    )%</td> </tr> </tbody> </table>	점검 결과 전체 지적 건수 (a)	개선 실적 건수 (b)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시설 점검·결과 개선 비율 (b/a) × 100	(    )건	(    )건	(    )%
점검 결과 전체 지적 건수 (a)	개선 실적 건수 (b)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시설 점검·결과 개선 비율 (b/a) × 100					
(    )건	(    )건	(    )%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시설 점검·결과보고서 제출</li> <li>•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시설 점검·결과 후 개선실적에 관한 증빙 자료 제출</li> </ul>						

Ⅱ 평가항목 5-2)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및 방지 효과성 평가 Ⅱ

평가지표	5-2)-②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및 방지 효과성 평가
평가목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사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한다.
측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에서 실시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및 방지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한다.</li> </ul> </li> <li>•평가방법 : 정성평가</li> <li>•산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및 방지 효과성에 대한 내용 분석</li> </ul> </li> </ul>
자료제출 서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성평가 지침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에 대한 지원</li> <li>－ 가해자 교육 내용</li> <li>－ 대상별 교육 지원(초, 중, 고등학생 및 일반인)</li> </ul> </li> </ul>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구에서 실시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및 방지 사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li> <li>•그 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및 방지 사업 관련 자료 제출</li> </ul>

Ⅱ 평가항목 5-3) 여성결혼 이민자 복지향상 노력도 Ⅱ

평가지표	5-3)-① 여성결혼 이민자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																														
평가목표	지역사회 통합 및 여성결혼 이민자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관련 사업을 평가한다.																														
측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 내 여성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의 실적을 평가한다.</li> </ul> </li> <li>•평가방법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li> <li>•산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 사업 실적(건수)</li> </ul> </li> </ul>																														
자료제출 서 식	<p style="text-align: center;">〈표 V-3〉 여성결혼 이민자 관련 사업 실적</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th> <th style="width: 35%;">지원 사업 명</th> <th style="width: 20%;">주관부서</th> <th style="width: 15%;">사업기간</th> <th style="width: 25%;">예산(천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총 사업 실적 : (            ) 건</td> </tr> </tbody> </table>		지원 사업 명	주관부서	사업기간	예산(천원)	1					2					3					...					총 사업 실적 : (            ) 건				
	지원 사업 명	주관부서	사업기간	예산(천원)																											
1																															
2																															
3																															
...																															
총 사업 실적 : (            ) 건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구에서 실시한 여성결혼 이민자 관련 사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li> <li>•그 외 여성결혼 이민자 관련 사업 관련 자료 제출</li> </ul>																														

Ⅱ 평가항목 5-3) 여성결혼 이민자 복지향상 노력도 Ⅱ

평가지표	5-3)-② 여성결혼 이민자 관련 사업의 효과성 평가
평가목표	지역사회 통합 및 여성결혼 이민자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관련 교육 사업을 평가한다.
측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결혼 이민자들에게 자치구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교육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한다.</li> </ul> </li> <li>•평가방법 : 정성평가</li> <li>•산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 교육 사업에 대한 내용분석</li> </ul> </li> </ul>
자료제출 서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성평가 지침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 교육 사업의 적절성</li> <li>－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 교육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li> </ul> </li> </ul>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구에서 실시한 여성결혼 이민자 관련 교육 프로그램 목록 및 참여자 목록 제출</li> <li>•그 외 여성결혼 이민자 관련 교육 사업 관련 자료 제출</li> </ul>

Ⅱ 평가항목 5-4) 장애여성 복지향상 노력도 Ⅱ

평가지표	5-4)-① 장애여성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																														
평가목표	지역사회 통합 및 장애여성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한 관련 사업실적을 평가한다.																														
측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 내 장애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의 실적을 평가한다.</li> </ul> </li> <li>•평가방법 : 정량 및 정성평가</li> <li>•산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 여성 지원 사업 실적(건수)</li> </ul> </li> </ul>																														
자료제출 서 식	<p style="text-align: center;">〈표 V-4〉 장애 여성 관련 사업 실적</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th> <th style="width: 35%;">지원 사업 명</th> <th style="width: 20%;">주관부서</th> <th style="width: 15%;">사업기간</th> <th style="width: 25%;">예산(천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총 사업 실적 : (            ) 건</td> </tr> </tbody> </table>		지원 사업 명	주관부서	사업기간	예산(천원)	1					2					3					...					총 사업 실적 : (            ) 건				
	지원 사업 명	주관부서	사업기간	예산(천원)																											
1																															
2																															
3																															
...																															
총 사업 실적 : (            ) 건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구에서 실시한 장애 여성 관련 사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li> <li>•그 외 장애 여성 관련 사업 관련 자료 제출</li> </ul>																														

Ⅱ 평가항목 5-4) 장애여성 복지향상 노력도 Ⅱ

평가지표	5-4)-② 장애여성 관련 효과성 평가(만족도)
평가목표	실제 장애인 여성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은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를 평가한다.
측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여성복지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의 만족도를 평가한다.</li> </ul> </li> <li>•평가방법 : 정성평가</li> <li>•산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의 복지서비스를 받은 장애 여성들(클라이언트)에 대한 만족도 조사</li> </ul> </li> </ul>
자료제출 서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성평가 지침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여성 관련 사업의 예산확대 노력</li> <li>- 장애여성의 참여</li> <li>- 사업의 다양성</li> <li>- 고용과의 연계</li> <li>- 평생교육 관점에서의 교육사업 실시 여부</li> </ul> </li> </ul>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구에서 실시한 장애 여성 관련 사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li> <li>•그 외 장애 여성 관련 사업 관련 자료 제출</li> </ul>

〈부록 II-6〉 일·가정 양립 지원

Ⅰ 평가항목 6-1) 보육서비스 향상 노력도 Ⅰ

평가지표	6-1)-①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적						
평가목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보육시설의 지도·점검이 얼마나 수행되었는가를 평가한다.						
측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 내 등록된 총 보육시설 가운데 당해연도 지도·점검을 받은 시설의 비율을 평가한다.</li> </ul> </li> <li>•평가방법 : 정량 및 정성평가</li> <li>•산 식                             <math display="block">= \frac{\text{당해연도 지도·점검 시설 수}}{\text{등록된 총 보육시설 수}} \times 100</math> </li> </ul>						
자료제출서식	<p style="text-align: center;">〈표 VI-1〉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적</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3%;">등록된 총 보육시설 수 (a)</th> <th style="width: 33%;">당해연도 지도·점검 시설 수 (b)</th> <th style="width: 33%;">보육시설 지도·점검 비율 (b/a) × 100</th> </tr> </thead> <tbody> <tr> <td>(    )개</td> <td>(    )개</td> <td>(    )%</td> </tr> </tbody> </table>	등록된 총 보육시설 수 (a)	당해연도 지도·점검 시설 수 (b)	보육시설 지도·점검 비율 (b/a) × 100	(    )개	(    )개	(    )%
등록된 총 보육시설 수 (a)	당해연도 지도·점검 시설 수 (b)	보육시설 지도·점검 비율 (b/a) × 100					
(    )개	(    )개	(    )%					
증빙자료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Ⅱ 평가항목 6-1) 보육서비스 향상 노력도 Ⅱ

평가지표	6-1)-② 평가인증기관 확대 실적						
평가목표	보육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평가인증제 참여 보육시설이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평가한다.						
측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 내 등록된 총 보육시설 가운데 당해연도 평가인증제에 신규로 참여한 시설의 비율을 평가한다.</li> </ul> </li> <li>•평가방법 : 정량평가</li> <li>•산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th display="block">\frac{\text{평가인증제 신규참여 시설 수}}{\text{등록된 총 보육시설 수}} \times 100</math></li> </ul> </li> </ul>						
자료제출서식	<p>〈표 VI-2〉 평가인증기관 확대 실적</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등록된 총 보육시설 수 (a)</th> <th style="width: 33%;">당해연도 평가인증제 신규참여 보육시설 수 (b)</th> <th style="width: 33%;">평가인증기관 확대 비율 (b/a) × 100</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개</td> <td style="text-align: center;">(     )개</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body> </table>	등록된 총 보육시설 수 (a)	당해연도 평가인증제 신규참여 보육시설 수 (b)	평가인증기관 확대 비율 (b/a) × 100	(     )개	(     )개	(     )%
등록된 총 보육시설 수 (a)	당해연도 평가인증제 신규참여 보육시설 수 (b)	평가인증기관 확대 비율 (b/a) × 100					
(     )개	(     )개	(     )%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시설 평가인증원을 통해 평가기관에서 직접 확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하지 않음</li> </ul> </li> </ul>						

Ⅱ 평가항목 6-2) 맞춤형 보육시설 마련 Ⅱ

평가지표	6-2)-① 공공보육시설 확충 실적						
평가목표	보육주체를 다양화하여 사회적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공보육시설 확충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평가한다.						
측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연도의 공공보육시설 목표 대비 확충된 공공보육시설의 비율을 평가한다.</li> </ul> </li> <li>•평가방법 : 정량 및 정성평가</li> <li>•산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th display="block">\frac{\text{당해연도 확충 시설 수}}{\text{당해연도 목표 시설 수}} \times 100</math></li> </ul> </li> </ul>						
자료제출 서 식	<p>〈표 VI-3〉 공공보육시설 확충 실적</p>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당해연도 목표 시설 수 (a)</th> <th style="text-align: center;">당해연도 확충 시설 수 (b)</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공보육시설 확충 비율 (b/a) × 100</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개</td> <td style="text-align: center;">(     )개</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body> </table>	당해연도 목표 시설 수 (a)	당해연도 확충 시설 수 (b)	공공보육시설 확충 비율 (b/a) × 100	(     )개	(     )개	(     )%
당해연도 목표 시설 수 (a)	당해연도 확충 시설 수 (b)	공공보육시설 확충 비율 (b/a) × 100					
(     )개	(     )개	(     )%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구 내 공공보육시설 현황 자료 제출</li> <li>•당해연도 신설된 공공보육시설 현황 자료 제출</li> </ul>						

Ⅱ 평가항목 6-2) 맞춤형 보육시설 마련 Ⅱ

평가지표	6-2)-② 24시간 운영 보육시설 이용자의 증감율											
평가목표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24시간 운영 보육시설의 이용자가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평가한다.											
측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24시간 운영 보육시설 이용자 대비 당해연도 증가된 이용자 비율을 평가한다.</li> </ul> </li> <li>•평가방법 : 정량평가</li> <li>•산 식                             <math display="block">\frac{(\text{금년도 이용자 수} - \text{전년도 이용자 수})}{\text{전년도 24시간 운영 보육시설 이용자 수}} \times 100</math> </li> </ul>											
자료제출 서 식	<p>〈표 VI-4〉 24시간 운영 보육시설 증감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전년도 24시간 운영 보육시설 이용자 수 (a)</th> <th style="width: 25%;">금년도 24시간 운영 보육시설 이용자 수 (b)</th> <th style="width: 25%;">금년도 이용자 수 - 전년도 이용자 수 (c)=(b)-(a)</th> <th style="width: 25%;">24시간 운영 보육시설 증감율 (c/a) × 100</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    )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    )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body> </table>				전년도 24시간 운영 보육시설 이용자 수 (a)	금년도 24시간 운영 보육시설 이용자 수 (b)	금년도 이용자 수 - 전년도 이용자 수 (c)=(b)-(a)	24시간 운영 보육시설 증감율 (c/a) × 100	(    )명	(    )명	(    )명	(    )%
전년도 24시간 운영 보육시설 이용자 수 (a)	금년도 24시간 운영 보육시설 이용자 수 (b)	금년도 이용자 수 - 전년도 이용자 수 (c)=(b)-(a)	24시간 운영 보육시설 증감율 (c/a) × 100									
(    )명	(    )명	(    )명	(    )%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구 내 보육시설 현황 자료 제출</li> <li>•보육시설별 이용자 현황(월별 또는 분기별) 자료 제출</li> </ul>											



2008-정책개발-012

##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모형 개발 연구

**발행인** 박현경  
**연구자** 조연숙 문은영 정상기  
**발행일** 2008년 12월  
**발행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한숲길 22번지  
**전 화** 02. 810. 5000(代)  
[www.seoulwomen.or.kr](http://www.seoulwomen.or.kr)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